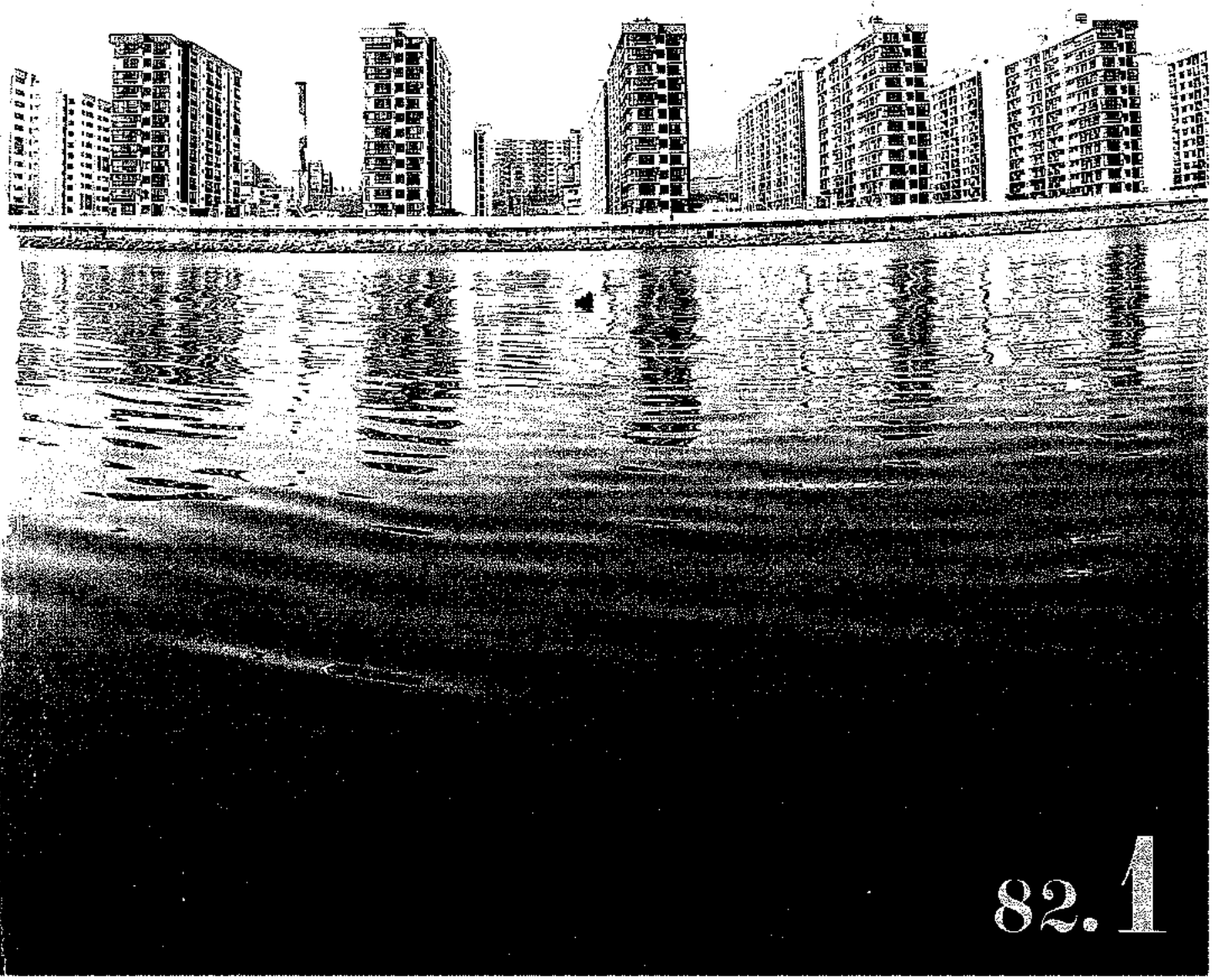

82.1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읍니다.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려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콤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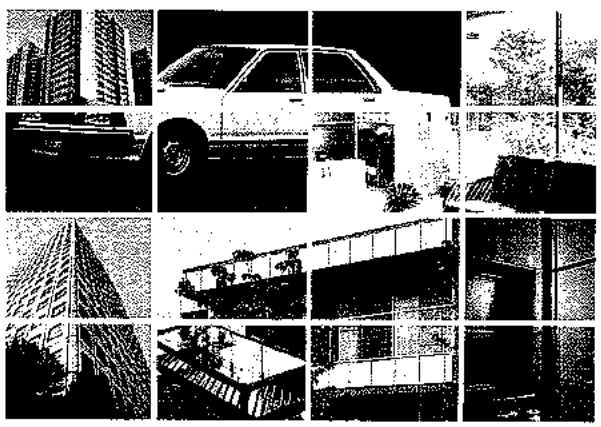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읍니다.
2. 모든 工程을 콤퓨터化 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製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읍니다.

제품특성

두 께 (㎜)	두 과 특 성					열관류율 Kcal m2hc
	가시광선		태양방사열			
	투과율 (%)	반사율 (%)	흡수율 (%)	직접투과율 (%)	반사율 (%)	
3	90.1	8.0	7.4	84.9	7.7	5.88
5	89.1	7.9	11.5	81.1	7.4	5.78
6	88.6	7.9	13.5	79.3	7.2	5.75
8	87.6	7.8	17.2	75.8	7.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9.6	6.6	5.46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 (m/m)	길이×폭 (m/m)	길이×폭 (inch)
3	2438×1220	96×48
5	3048×2134	120×84
6	3048×2438	120×96
8, 10	8380×3300	330×130
12, 15, 19	8380×3300	330×130

※ 15㎜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154
783 – 0311·0911·3711·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요.

月刊 建築士
January 1982. No.154
U. D. C. 69/72(054-2) : 0612(519)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89 / 郵便番号：110
光化門郵通局 私書函 第795番/電話 723-9491-2, 723-4287, 724-1045
発行人 兼 編輯人：具 玧 會 / 登録番号：第라-1251/登録：1967.3.23
発行：1982.1.1/非売品 / 印刷人：郭 得 龍 (三文印刷所 / 261-7676)

新年號
目次

82.1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54 호
구 년월일	19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신년사	"보람찬 한 해를 기대하며"	具玧會	2
간담회	신년 회원 간담회 개최		6
신년설계	82년도 본회 정책목표		16
	分科委員會위원 / 프로필		19
	✓우리 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I〉	金鴻植	21
	都市設計의 基本性格	李弼遠	28
	우리 나라 都市設計의 現況	崔璨煥	36
	✓우리 나라 집에 관한 민속(完)	김광언	45
	住宅行政 實態와 對策에 關한 研究(完)	秋永守	65
會員作品	●삼익 부산비치타운 (주·삼도건축)	金龍仁	56
	●종근당사옥 (예건사 합동건축)	姜信寬	58
	●삼익주택사옥 (삼익환경건축연구소)	李雄培	60
	●L씨 주택 (주·부림종합설계)	金 浩	62
	●원주 새마을 협동유아원 (박건축설계사무소)	朴世振	64
해외특선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五大이즘	Kenneth Frampton	41
	건축설계·견적·시공에서의 공사비 인하요령	朴商浩	52
새해칼럼	建築과 安全		40
한국의 전통건축	창 호(窓戶)		50
	건축행정 / 질의응답		71
	□ 協會消息 - 새해 건설시책 기본방향	3	□ 회원동정 94
	□ 건축계 뉴스	8	□ 도서신고 현황통계 74
	□ "흙의 건축연구 붐"	50	□ 각종 법 개정내용 75
淨化를 위한 提言	淨土 위에 우리의 建築을 세워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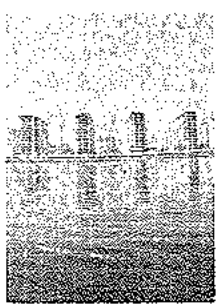

표지설명/삼익부산비치타운 설계·촬영/金龍仁(주·삼도건축)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 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보람찬 한 해를 기대하며"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具 玧 會

壬戌年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會員여러분의 無窮한 発展을 祈願합니다.

늘 새해가 그렇듯이 今年의 元旦도 希望과 새로운 覚悟속에서 한 해를 設計하고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祈求하는 자세로 임하며, 새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回顧컨데, 지난 한 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与件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웠던 時期였다고 생각합니다.

経済的으로는 비단 国内的인 与件외에도 世界的으로도 퍽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되는 해였으며, 특히 本會 會員業務와 直結되는 国内建築景気의 침체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던 한해였읍니다.

심각하기까지 했던 国内建築景気의 침체는 비단 建築分野에만 局限되지않고 그 여파는 경제 전반에 걸친 不況으로 번져 더욱 심화현상을 보이기까지 했읍니다.

이러한 与件속에서 業務量의 減少로 인해 會員事務所마저 正常運営이 어려웠던 점등, 적지않은 난관이 중첩되었던 지난 1年이었읍니다. 이러한 난관속에서도 建築文化의 創達이라는 至上召命意識을 저버리지않고 나름대로 많은 會員들은 研究하고 努力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은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將來를 위해 큰 多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本會에서는 會員諸位의 權益옹호와 地位向上에 초점을 두고 이의 効果的인 성취를 위해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5大政策事業을 展開해왔으며, 그 結果 部門別로 적지않은 成果를 얻을 수 있었읍니다.

특히 建築関係法規 및 建築行政制度改善의 유도, 또 곧 実施될 納税組合結成준비등 會員業務와 直結된 事業을 重点的으로 推進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5공화국의 至上목표인 福祉社會建設과 正義社會具現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汎国民的으로 확산실시 되고 있는 請託배격 및 淨化運動에 발맞춰 本會에서도 지난 下半期부터 본격적으로 동 運動의 自律的인 活性化에 힘을 기울였읍니다.

생각컨데, 社會悪으로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建築不條理에대한 責任은 建築人으로서 마땅히져야하며 이의 根源的인 抜本으로만 이 眞正한 意味의 참다운 建築文化 発展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所信과 政府의 強力한 意志에 힘입어 이 運動의 수행에 努力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쌓아올린 努力의 代價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해가 보다 기름지고 보다 보람찬 해가 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할줄 압니다.

따라서 本會는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事業을 展開해서 會員을 위한 會員의 協會로 発展해 나갈 수 있도록 任職員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努力할 것을 約束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會員 여러분께서는 本會를 求心点으로 힘을 합칠 때만이 協會의 지속적인 育成発展이 가능하며, 協會의 発展이 곧 會員各自의 発展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會員諸位의 家内에 변함없이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하며 이만 新年辞에 대합니다. 〈*〉

一九八二年 元旦

신임
金宗鎬건설부장관 취임

건축계…경기부양에 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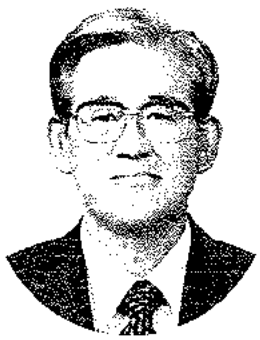

지난 4일 취임한 신임 김종호(金宗鎬)건설부장관은 앞서 전남지사를 역임한 육사 8기생으로 예비역 육군 소장.

육군대학과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단장, 국방대학원 부원장, 국방부 군수국장, 군수차관보, 금호산업사장 등 군·관·실업계를 두루 거친후 이번 개각에서 우리나라 건설행정을 주관하게 되었다.

전남도백으로 재임시 도내 28개 시·군을 평균 30회이상 순시할 정도로 확인 행정을 편 김장관은 침체한 국내 건축경기를 정상화 시킬 것으로 건축계는 기대에 차 있다.

일간지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는 주택공급저해 요인이 되는 주택경기침체를 활성화시켜야 할것같다"고 밝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또 김장관은 도시문제에 대해서도 현 실정이 체계없는 도시계획으로 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기존도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에 관한 법들이 대체로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고, 제반 건축관계법상의 비현실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모든 법들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해서, 관계 법규의 현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전반적인 체질개선과 나아가 경기 부양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건축계는 보고 있다.

새해 건설시책 기본방향

다음은 '82년도 건설부장관의 신년사 가운데 건설시책의 기본방향을 간추려 옮긴 것이다.

지난 81년이 「改革속의 安定」을 추구하는 시련의 고비였다면 올해는 「安定의 成長」을 추구하는 希望의 関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올해 건설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가운데 역점방향은 다음과 같고 공감과 협력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첫째, 80年代의 民主福祉社会에 대응하는 国土政策을 알차게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国土의 均衡開発을 주안으로 하는 제 2 차 国土綜合開発을 착수하여, ① 토지이용계획의 통합체계화를 통한 国土利用基本질서 再定立 ② 서울, 仁川, 京畿道全域을 대상으로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 확정, 개발지표부여 ③ 大邱등 3개 1차 성장거점도시와 원주등 12개 성장거점 도시의 自決, 自足力부여 ④ 도시계획의 장기성과 전문성보장 위해 전국 58개 시·읍급 도시에 대한 장기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년을 전망한 도시의 장기비전제시 ⑤ 전국 242개 도시에 대한 기존 도시계획의 전면 再整備作業 착수 ⑥ 国土의 均衡개발 차원에서 光州圏 2단계사업, 済州등 지역개발사업은 工程계획에 맞춰 계속추진 ⑦ 기준地価告示地域확대(地価의 現実情을 提高).

둘째, 国民生活과 직결되는 생활환경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먼저 住宅건설에 대해서는, ① 기본방향은 수요를 감안해서 住宅建設事業을 弾力的으로 추진, 서민능력에 알맞는 住宅을 건설공급하고 供給住宅의 분양가격을 융통성있게 조정해서 住宅景気의 活性化를 도모 ② 職場別 組合住宅의 중점 건설을 통한 수급균형유지 ③ 国民住宅融資制 改善(융자한도 확대, 상환조건 완화) ④ 住宅価格의 原価節減을 위한 資材의 規格化 新工法開発 강력추진 ⑤ 上水道사업은 금년에도 水系別 広域水道事業과 単位都市別 地方上水道사업병행추진(지방상수도사업지원 財政융자 210억원 計上해서 富川·三千浦등 5개 上水道施設 완공계획) ⑥ 下水道사업은 현재의 보급율 6%를 86年까지 25%까지 높히기 위해 공업단지와 대도시 하수처리장시설을 병행추진.

셋째, 経済建設을 위한 基盤構築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重化学基地 건설은 ① 7개 産業基地(포항·창원·온산·여천·북평·대덕·구미)지원사업 계속 추진 ② LNG導入에 따른 輸入基地 지원사업착

수 ③ 광주·논산·군산등 지방공업 개발장려지구도 정부지원사업 추진.

水資源개발사업은 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위한 多目的댐 건설사업, 治水事業병행(忠州댐 建設工事는 85年度에 완공) ② 경남합천에 합천댐 공사 착공 ③ 상습水害지역 근본 대책 수립 ④ 낙동강연안지역 사업과 일반하천 改修事業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추진.道路사업은 高速도로건설사업과 国道포장사업을 병행해서 ① 작년 10월에 착공한 大邱~光州間 175.2km의 88올림픽 고속도로는 84년도에 준공 ② 국도포장은 国道연장 12,190km중 금년말까지 累計7,291km를 포장해서 59.8% 포장율 달성.

넷째, 海外建設輸出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한다.

건설수출은 82年度에도 계속 해서 量的, 質的水準提高 ① 現地国의 発注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제반시책강구 ② 금년에는 業体別 比較 優位技術部門을 重点育成하고 海外建設用役部門의 진출 活性化 ③ 受注工種은 高級化·選別化하고 合作施工등을 통한 선진국 업체와의 연계강화(건설외교의 적극화).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建設風土를 확립해 나간다.

거국적으로 추진중인 社会淨化운동의 일환으로 맑고 깨끗한 건설풍토확립에 힘쓴다.

이상 기본방향은 全建設人이 합심하여 추진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새시대의 길잡이로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82年度 始務式거행

신년連席對談도 나눠

"会員위한 会員의 協会로"

본회의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82년도 시무식이 지난 4일 오전 具琉会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원단(元旦)의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수행을의욕적으로 할 것을 다짐한 이날 시무식에서 具琉会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새해에는 지난날을 거울삼아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한데이어 "비록 현실이 다소 여의치 못하다해도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회발전에 이바지해 줄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해에는 여러가지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때를슬기롭게 헤쳐나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산실로 협회를 육성해 나가는 역할을 임직원 각자가 맡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金枝泰지부장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협회발전이 어려우며 반드시 상호협력하는 공동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무의욕진작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리에 참석한 李奉魯 서울복지회 회장은 새해에는 지난해 보다 더 나아진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 하자는 내용의 간단한 신년인사를 했다.

시무식에이어 활기찬 새해를 기리는 간단한 다과회를 갖고 첫 출발을 기념했다.

한편 시무식을 마치고 具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 그리고 서울지부 임원과 각부장 등은 자리를 함께하고 새해 협회 운영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具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해에는 새 기원을 이룩하기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하며 이를위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朴商浩이사는 협회의 82년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부분별세부내용을 설명했다. 朴이사는 새해 협회사업 기본방향을 ① 각종 법규 제도 개선 ② 건축기술 인력양성 사업추진 ③회원복지증진 ④ 회원 강습회, 세미나, 국제교류 ⑤ 출판, 홍보, 전시사업 ⑥ 정화사업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그 밖에 세부사항등을 자세하게 제시했다.

이어서 담당업무에 관한 각 임원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새해 구상등을 들었으며 실무부서 책임자들로부터 소관부서의 당면과제와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19회 정기이사회 개최

81년도 마지막 이사회가 구랍 18일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19회 이사회에서는 대구 및 인천직할시지부 설립의 건을 비롯한 지부 임원 취임 승인 건등이 처리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지부 승인외에 김해분소 설치도 통과되었으며 그밖에 편찬위원회를 비롯한 윤리, 건축위원회 위원개선건 등이 논의되어 이를 각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개정과 제규정개정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첫 정기이사회 개최

금년도 정책목표 확정

올들어 첫 정기이사회가 지난 13일 오후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玧会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82년도 본회 정책목표 설정을 비롯해서 분과위원회의 다양한 운영등을 결의한데 이어 고문변호사 추대의 건등이 논의되었다.

그밖에 김해분소장 직무대리 승인을 비롯해서 건축상 후보자 추천건, 예산의 목간전용, 직원보직변경, 신규채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설계보수액 설정건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특히 82년도 정책목표의 주요 골격은 ① 합리적인 협회운영 ② 회원친목, 복지향상 ③ 건축기술 향상 및 개발 ④ 관계법규·제도개선 ⑤ 회지혁신 발간 ⑥ 회관이전 추진등으로 되어 있다.

송년 건축인의 밤 개최

건축인 및 관계인사 참석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 건축인의 모임이 구랍23일 저녁 6시에 시내 뉴 서울 호텔 귀빈홀에서 열렸다.

본회가 다사다난했던 지난 81년을 회고하고 건축인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마련한 이날 송년모임에는 40여명의 건축인들과 관계인사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모임을 주관한 본회 具玧会회장은 축하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해였다고 전제하고 "특히 국내건축경기의 침체로 건축인들의 어려움이 중첩되었던 시기였음"을 밝히고 이어서 "이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소명감을 저버리지 않고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기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해 이기도 했다" 고 회고했다.

특히 具회장은 제5공화국의 출범은 우리나라 건축계에도 커다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88 올림픽 준비 첫해인 82년도에는 건축인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민정당소속의 廉吉正의원(국회건설분과)은 인사말에서 건축인들의 단합된 힘만이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발전육성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의 효율적인 도모를 위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송년회에서는 참석 인사들의 대화가 꽃을 피웠으며 밤 10시가 되어서야 송년의 촛불이 빛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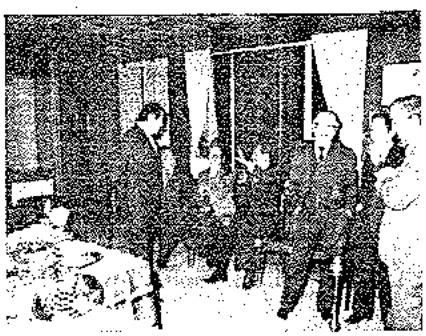

신년 회원 간담회 개최

"同參意識 높혀 협회 발전 도모할 때"

신년 회원간담회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본회가 새해를 맞아 협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종합해서 협회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具琉会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자세로 각오를 다질 때"라고 강조하고 새 질서 정립과 동참의식을 높혀 협회발전이 각 회원의 발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석회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주로 협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사업, 당면한업무, 각 위원회 운영방법, 보수요율 관계 등이 폭넓게 다루어 졌다.

특히 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3개 위원회외에 직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더 두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도 늘려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협회의 활동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는 회원중심만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관계는 물론 학계 유관인사들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포석을 통한 협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린회원은 후진양성과 보조인력수급을 위해서 자격시험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원은 해결방안으로 자격시험은

□ 職能別로 分科委 운영필요
□ 海外設計업무에 눈 돌려야
□ 올림픽 對備한 수용태세 점검
□ 汎建築界 연대의식 고취해야

졸업후에 곧 응시할 수있도록하고인턴과정을 둬 후진들이 설계사무소에 관심을 두고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항구적인 방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업무를 위한 활동방안을 지적한 강신관회원은 회원들이 해외 설계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를중심으로 방안모색이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시점에서 국내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눈을 밖으로 돌려 보다 넓은 해외설계 업무에 관심을 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충언회원은 서울개최가 결정된 88년도 올림픽에 대비해서 건축사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기대됨에 따라 나름대로 수용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멕시코에서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기존 도시의 일부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축물로 올림픽시가지를 건설하거도 한 예를들어 우리도 부끄럽지않은 한국의 건축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잦은 대화등을 가지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다음호인 2월호에 올림픽과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가지고 올림픽을 위한 건축사의 큰 역할을 조목별로 검검키로 했다.

그밖에 양상규회원등도 전반적인 협회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와 회지의 혁신발간을 위한 방안등을 말했다.

특히 회지의 제작방향을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바꿔 홍보지로서 역할을 나할 수 있도록 제고해 줄것을 바라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지으면서 具회장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회원들의 의견이 협회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우선 장소를 마련하기위해 회의실을 확충할 계획이며 또 자료실을 운영해서 각종도서 자료집등을 구비, 필요할 때 항상 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와 건축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위해 신문지상과 방송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금명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姜信寬(예건합동) △ 金大魯(한미종합) △ 金 麟(가전건축) △ 金春雄(삼송건축) △ 牟世鏞(삼흥건축) △ 閔中植(내외종합) △ 宋彧鎬(경신건축) △ 成河哲(명성건축) △ 楊尚奎(주·세대연합) △ 安将元 (신아건축) △ 李忠彦(원일) △ 李鍾寬(한국은성건축) △ 鄭正治(융건축) △ 片基奉(신동아건축)

고문변호사에 金斗鉉씨

본회 82년도 첫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협회고문 변호사로 추대된 김두현(金斗鉉)변호사(사진)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있는 우리 나라 법조계 중진이다.

충남 당진 출신으로 고려대 법과를 나온 김변호사는 고등법원부장판사를 역임한데 이어 서울시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 변호사회회장등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제7대 국회에서는 의원에 당선, 외정활동을 펼쳐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며 현재는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 위원과 법학원장, 국제법률가협회회장으로 활약 중이다.

사무소는 한국합동법률사무소(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13층)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김변호사는 본회의 대내외 법률문제에 자문을 맡게 되었다.

1회 편찬위 개최

올들어 첫번째 편찬위원회 (위원장 朴商浩)가 지난 7일 오후에 열렸다.

신임 위원으로 개편되고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신임위원들에게 위촉패 증정식이 있었다.

具玩金회장이 전달한 위촉패 증정

식에서 具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를 대변하는 대변지로서 보다 질적향상을 꾀하는데는 편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재임기간동안 회지 발간에 수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지 발간이 협회사업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보다 훌륭한 회지 발간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신년도 편집계획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새로운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표지 레이아웃을 바꾸기로 하고 준비토록 한데 이어, 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회원 작품의 엄정한 선정게재와 논문·해설원고의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키로 의결했다.

이와 병행해서 게재원고 심사기준 요강등을 마련해서 질 위주의 회지제작에 초점을 맞출 것을 합의했다.

건설부 사정회의 참석

82년도 사정업무계획

건설부가 주관한 82년도 국가사정업무계획에 관한 회의가 구랍24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81년도 사정활동 평가와 국가 사정업무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및 82년도 계획이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81년도 국가 사정활동추진 결과의 성과로는 ① 사회주요 핵심분야의 부조리개선 ② 국민의식 속에 정의사회실현 가능성을 확고히 제시 ③ 사정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부패예방활동 ④ 자율적 행정을 통한 부조리제거계기 마련 ⑤ 사회정화 국민운동 활성화의 토대 구축등이 성과로 나타났으며, 미비점으로는 ① 정화활동의 저변확대와 ② 타율적인 부조리제거로 일부 경직화 초래 ③ 의식개혁운동이 시동단계에 불과한것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82년도 계획(목표)은 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의 쇄신 ② 의식개혁운동의 기반확립이며 중점추진사항은 ① 국가청렴도의 종합 진단체제 구축 ② 부정·비리의 근원적요인 개선 ③ 자율적 공직 풍토쇄신 계기마련 ④ 정화운동을 통한 국민의식개혁 주력 ⑤ 국민생활과 직결된 비리폐습의 중점제거 등이다.

한편 본회는 국가사정업무 계획에 따라 82년도 사정 및 정화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는 이강식 본회감사를 비롯한 임인혁 사무처장, 이 상윤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화운동 적극전개

지부별로 활성화 촉진

81년도를 결산하는 지난 12월에도 각 시도 지부별로 정화 및 청탁 배격운동이 조직적이고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서울지부는 추진방향을 ① 정화 참여의 활발화 ② 생활주변의 수범자세 확립 ③ 잔존부조리 제거 ④ 질서 변화에 대한 자세확립 ⑤ 폐습 억제 등에 두고 자체교육(정신교육) 강화를 통한 보다 능동적인 정화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지부도 간담회 및 자체교육을 통한 정신자세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동운동의 심화에 노력했다. 실예로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 분수지키기, 근무기강 확립등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다.

특히 정화위원회를 개선, 부위원장에 李相夫위원, 핵심위원에 許泰위원을 선임했으며 연말 불우이웃 돕기로 2백46명의 회원이 낸 성금 1백23만원을 지난달 12일에 부산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23일에는 서라벌 호텔에서 정화추진 간담회 및 회원친목단합대회를 갖기도 했다.

경기도 지부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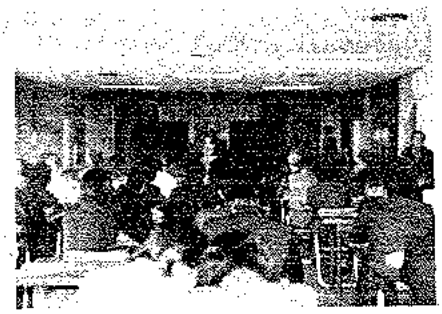

원으로부터 모금한 성금 70만원을 경기도에 기탁하는 한편 정화운동의 적극화에 심혈을 기울여 정화 추진위원회(12월16일), 토론회, 자체 교육실시, 결의대회등을 실시했다.

충남지부에서는 활동과제로서 ① 동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전개 ② 청탁근절 ③ 분수지키기에 두고 정신훈화와 자체교육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동운동의 활성화에 노력했다.

전북지부도 지난 11월27일 정화 촉진결의대회를 통한 정신자세 확립을 강화한데이어 허례허식 추방과 충실한 업무수행, 질서관념의 체질화를 위해 각종회의 개최와 순회 방문 등을 했다.

전남지부의 경우 활동과제의 주안점을 업무수행의 철저화에 두고 지난달 11일과 12일, 그리고 24일에 각각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총 47명이 이에 참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 대민계도활동을 병행해서 설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 척결에 힘썼다. 경북지부의 경우도 추진방향을 정신교육을 통한 정화업무에 적극참여 하는데에 두고 ① 질서관념의 체질화 ② 불우이웃돕기(대성보육원 이태숙양에게 매달 5천원씩 양육비 보조와 연말이웃돕기성금 90만원 전달) ③ 회원 정신교육등을 실시했다.

경남지부도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지부장훈화와 정신교육 (연말연시 분수지키기, 청탁배격운동의 필요성), 토론회개최, 자체교육 등을 통해 동운동의 실생활화에 박차를 가했다.

제주지부는 정화이념의 실제적인 활성화를 위해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교육을 연데이어 직원을 대상으로한 정신교육, 토론회, 거리 질서캠페인 등을 병행해서 실시했다. 특히 연말(12월 5일)에는 성금 20만원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제주신문사에 기탁하는등 복지사회 기반 구축에 솔선했다.

아르놀드 괴르테 교수 초청강연

본회 주최로 2월13일에

서독의 오펜바흐 암 마인 대학에서 설계 및 구성론등을 강의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아르놀드 괴르테 (Arnold körte)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본회와 주한 독일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는 오는 2월 13일 오후 3시 독일문화원에서 열 예정이다.

"독일건축계의 현 동향"과 "개발도상국의 기획과 건축"(다름쉬타트안에 의함)에 대해 강연하게 될 금년47 세인 아르놀드 괴르테교수는 이태리 로마에서 출생한 독일 국적의 건축가로 지난59년에 분헨공대를 졸업했다.

그후 61년 미국 캠브리지 하바드대학에서 M·A 학위를 받았으며 귀국후 발터 그로피우스와 그의 사무실에서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런던 피카딜리 써커스기획, 보스톤의 존·F 케네디관리건물 설계, 투니스의 튜넨지연대학의 기본계획등을 남기기도 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建築界뉴스

금년에 주택 20만호 건설

주택경기 부양책 발표확정

건설부는 지난 14일 주택경기 부양대책과 함께 올해 주택건설계획을 확정 ▲공공부문 8만호▲민간부문에서 12만호등 도합 20만호를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5차5개년계획중에는 올해 주택건설목표가 공공부문 10만호, 민간부문 17만호등 도합27만호로 책정되어있었는데 주택·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를 감안, 올해계획을 축소조정한 것이다.

올해지을 20만호중 공공부문의 8만호는 ▲지방 자치단체 2만 8천호 ▲주택공사 4만호 ▲기타 1만2천호씩 짓도록 배정했다.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3천호는 주택공사의 사업에 포함시켜 서울과 大邱등 지방도시에 지을 계획인데 규모는 호당 13평형, 입주보증금은 집값의 15%선, 매달 내는 임대료는 2만8천원 내외로 하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건설자금은 총3백27억원으로 잡고 ▲입주보증금 15% ▲국민주택 기금 65% ▲주택공사자금 20%등으로 충당토록 했으며 구체적인 분양대상 조건은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올해부터 집중보급키로한 조합주택 건설은 1만5천호를 책정, 20호이상으로 구성된 직장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는 한편 융자우선순위는 ① 직장조합 ② 국민주택선매청약 가입 조합순으로 정했다.

한편 주택·건축경기의 부양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의 담당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처리토록 하고 ▲건축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경우에 따라서는 건폐율·용적율의 적용을 1백%까지 허용(예컨대 공해방지 시설)키로 했으며 ▲건축과정에서 중간검사 등 불필요한제도는 모두 정비하고 아파트지구 개발절차도 간소화 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지역내의 토지형질 변경제한을 완화, 서울에서는 주거지역내 미개발지를 빠른시일내에 조사하여 각 지역을 ▲자동허가지역 ▲심사 허가지역 ▲규제지역등으로 구분, 일반시민에게 열람을 시키도록 했다.

자동 허가지역에서는 토지의 규모나 필지수에 관계없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심사 허가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심의를 하여 지반을 개량한 곳이나 집단주택을 지을경우 등에는 우선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大邱·光州·大田등 15개 성장거점도시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을 크게 완화해주고 주거지에 인접한 녹지의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등 25개市 43개지역, 8백40만평에 대한 개발을 적극추진, 올해에는 2백74만평(서울은 高德·開浦지구 72만평)을 개발하여 민간주택건설업체에도 공급토록 했다.

이밖에 서울지역에는 아파트지구로 지정할 대단위택지가 사실상 없으므로 소규모 토지라도 실수요자에게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현재는 50%감면)을 강구키로 했다.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건설부는 전국 58개市級지역에 대해 내년중으로 20년을 단위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또 2차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2백42개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마련된 개발계획에 맞추어 83년말까지 현행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토록했다.

구랍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20년단위의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도시는 현재 市로돼있는 50개도시와 2001년까지 인구가 10만이상으로 예상되는 利川, 平澤, 光陽, 長承浦등 4개邑, 水安堡, 道高, 白岩, 釜谷등 4개面단위 온천지역이며 재정비지역은 50개市 1백88개邑 4개온천지역등이다.

20년단위의 장기기본계획은 각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기능을 부여하고 연도별 계획인구를 설정, 이에 맞도록 토지이용 교통통신계획등 물리적인 계획뿐만아니라 경제사회 및 행정 재정등 모든 계획을 수립, 계획의 기본방향에 맞춰 매 5년단위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돼 있다.

재정비계획에서는 현행 住居 商業 工業 및 綠地지역등으로 돼 있는 用途지역을 기존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국토개발계획에 맞

도시규모별 주요시설기준

구분 \ 도시규모	연도	인구1백만이상	100만~50만	50만~20만	20만~10만	10만~5만	5만~2만
주택보급률(%)	1978	54.5	61.0	57.7	65.3	67.1	82.1
	1991	70.0	74.0	74.0	82.0	85.0	100.0
	2001	85.0	95.0	100.0	100.0	100.0	100.0
상수도 보급률(%)	1978	90.6	87.0	81.0	72.2	58.8	48.8
	1991	96.0	95.0	93.0	90.0	90.0	88.0
	2001	98.0	98.0	95.0	95.0	95.0	95.0
도로포장률(%)	1978	58.0	32.8	46.4	46.5	48.6	35.5
	1991	80.0	75.0	75.0	65.0	65.0	65.0
	2001	95.0	90.0	85.0	80.0	80.0	75.0
전화 가입댓수(인구1천명당)	1978	8.8	10.0	5.3	5.3	4.8	5.0
	1991	40.0	35.0	30.0	25.0	20.0	20.0
	2001	60.0	55.0	50.0	45.0	35.0	30.0
의사수(인구1만명당)	1978	6.2	5.8	3.6	3.2	2.2	2.3
	1991	9.0	8.5	8.0	7.5	7.0	6.5
	2001	12.0	11.0	10.0	9.5	9.0	8.5
종합병원(개소)	1978	4	3	1	—	—	—
	1991	10	6	3	1	—	—
	2001	15	10	4	2	—	—
실내체육관(개소)	1978	1	1	1	—	—	—
	1991	4	3	2	1	—	—
	2001	5	3	2	1	—	—
박물관(개소)	1978	3	—	—	—	—	—
	1991	4	2	1	1	—	—
	2001	5	3	1	1	—	—
도로율(%)	1978	12.6	15.0	9.9	8.3	3.7	3.5
	1991	18.0	20.0	18.0	18.0	13.0	12.0
	2001	22.0	25.0	23.0	22.0	20.0	20.0
근린공원(m^2 / 1인당)	1978	0.6	0.6	0.1	0.1	0.1	0.1
	1991	1.7	1.7	1.2	1.2	1.2	1.2
	2001	2.0	2.0	2.0	2.0	2.0	2.0
국민학교학급당 학생수	1975	76	66	61	62	59	53
	1991	55	50	48	45	43	42
	2001	45	42	40	40	38	38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1975	68	65	66	62	64	63
	1991	50	50	50	48	48	48
	2001	42	42	40	40	40	40
지체부자유아복지시설(개소)	1978	4	3	2	—	—	—
	1991	10	6	3	2	1	—
	2001	15	8	4	3	2	1

주요도시 인구전망과 기능

(단위 : 천명)

도 시	인 구 1980	1991	2001	도 시 기 능
서 울	8,518	9,600	9,900	서울대도시 생활권 중추도시
釜 山	3,217	4,200	4,800	釜山
大 邱	1,636	2,600	3,150	성장거점도시 大邱 龜尾 공업지대중심도시 생활권 중추도시
仁 川	1,104	1,550	1,860	서울대도시 생활권 副心도시 수도권의 해상관문 도시
水 原	316	460	570	수도권의 성장유도 도시
東豆川	61	70	80	수도권 북부 서비스 중심지
春 川	158	220	280	성장거점도시 관광도시 교육문화도시 지방생활권 중심지
東 海	106	200	290	東海~三陟공업지 중심도시
江 陵	119	200	280	성장거점도시 관광교육도시
淸 州	258	430	560	성장거점도시 지방생활권 중심도시 교육문화도시
大 田	663	1,240	1,650	성장거점도시 대도시생활권 중심도시 大田~淸州공업지대 중심도시
全 州	373	610	800	성장거점도시 문화예술도시 全州, 群山 공업지대 중심도시
南 原	58	95	160	성장거점도시 지방생활권 중심도시 관광예술도시
光 州	741	1,300	1,660	성장거점도시 光州, 木浦공업지대 중심도시 대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木 浦	226	350	450	성장거점도시 종합항만도시 낙도개발중심지
慶 州	124	155	195	국제관광도시
金 泉	74	100	145	교육도시 龜尾에 대한 일상서비스중심도시
安 東	104	180	260	성장거점도시 문화예술도시
馬 山	394	490	590	馬山, 昌原, 鎭海의 상업유통중심도시
晋 州	206	345	460	성장거점도시 교육문화도시 농수산물 집산 가공중개도시
昌 原	114	200	270	慶南의 행정중추도시공업도시
鎭 海	114	150	190	관광도시 전원도시
忠 武	77	105	160	수산 관광도시
金 海	71	120	160	釜山의 위성도시로 주거 및 공업 도시기능
濟 州	171	260	370	성장거점도시 국제관광도시
西歸浦	78	103	155	수산도시 관광도시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기준완화

서울시는 주차장 정비지구 내외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연면적 3백평이하 건축물의 경우 진입로폭이 종전 6m이상이어야만 건축이 가능했던것을 앞으로는 4m이상만 확보되면 건축을 허용키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내 시가화지역 전역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설정돼 있어 주거지역과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설치 기준이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관계규정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으며 법적뒷받침이 마련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주차장정비지구내 건축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45평이상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거지역내 75평이상 기타 건축물을 지으려면 폭 6m이상의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 했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 단독주택도 의무적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다가 진입로폭이 6m를 넘어야 하도록 되어 이로인해 건축허가시 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었다. 시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면적 300평 이하의 건축물은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폭 4m이상의 진입로만 확보하면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 상업용 건축물은 진입로 확보에 따라 건축제한이 크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취 융통성있게 재정비하되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는 공청회등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했다.

한편 장기기본계획에는 도시규모(인구)에 따라 목표연도의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등 도시생활환경을 위한 주요시설 기준도 설정,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수행토록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작년말 66.7% 이던 도시화율은 86년에가서는 72.9%, 91년엔 76.9%, 96년 79.6%, 다시2001년에는 81.6%로 높아져 급격한 도시화현상에 따른 효율적인 도시 계획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都市설계따라 개발키로 세종로 · 을지로 · 종로 등

세종로, 종로, 을지로등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3개 도심간선도로변이 가로의 전통성을 보존하면서 도시미관과 도시기능을 높이기위한 도시설계에 의해 개발된다.

서울시는 세종로등 3개 간선도로 양편 20만평을 도시설계에 의해 개발키로 확정하고,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와 1억5천만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설계는 개발 건축에서 빚어지는 도시개발의 불균형을 미리 막기위해 간선도로변을 블록단위로 세분하고, 블록에 들어설 건물의 구조와 외형, 건물군(群)의 형태, 공공시설물과 건축물과의 균형배치등을 설계, 이에 맞춰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뉴욕 파리등 선진도시에선 이미 20여년전부터 실시해온 도시개발 기법이다.

설계용역을 맡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내년 4월말까지 3개간선도로변의 도시개발설계를 마치고 각 지구별 주요 건축물의 투시도 및 모형제작을 끝내게 되며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친뒤 도시설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시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도심재개발 사업에 의해 세워진 3개 간선도로변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때까지 사업승인을 받지못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이 설계에 따라 개발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간선도로 양편 40~50m로, 세종로는 중앙청앞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구간, 종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동대문까지, 그리고 을지로의경우엔 을지로입구에서 서울운동장까지의 구간이다. 이들지역의 도시설계는 서울시가 지난5월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고도기준(스카이라인)에 따라 작성된다.

서울시의 구상은 도로폭은 더 넓히지 않지만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선을 후퇴시켜 넓혀진 부분에 소상음식점등 도시인의 옥외생활공간을 확보, 가로기능을 높일계획이며 일단 이도시설계가 확정되면 해당도로변건물의 용도규제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기존건축물의 외관정비, 광고 및 게시물, 보행공간개선, 이면도로정비, 지하철과 건물간의 연계통로 확보 및 정비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들지역의 도시설계가 확정되는대로 시가지 정비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그리고 상-하수도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都心再開発公社 설립추진

서울시는 도심의 재개발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형태의 도심재개발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대비, 서울의 도시면모를 빠른 시일안에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것이다.

朴英秀서울시장은 『시가 지난 74년부터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재개발대상지역의 토지가 군소지주의 소유로 분산돼 있어 지주간의 매도매입이 원활하지못해 사업이 극히 부진하며 대지주가 땅을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토지매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지방공기업형태의 도심재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朴시장은 또 『도심재개발공사는 현재의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같이 시비출자에의한 지방공기업형태로 설립될 것이며 이공사가 재개발사업을 맡으면 토지매입에 따른 법적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금융지원도 가능해져 사업추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간선도로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무실,상가 아파트가 함께들어설 수 있는 복합건물을 많이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는 것.

현재의 도시재개발법에는 개인이나 지주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 지주의 땅에 대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구내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사업을 펴려면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구입해야 하는등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기업형태의 특수법인이 될때는 수용권발동이 용이해지는등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

국내 건설업 마이너스 성장

繼続 마이너스 성장권을 맴돌고 있는 국내건설업은 지난 3,4분기 중에도 2.6%가 감소,좀체로 불황의 터널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3,4분기중 산업별 성장추이에 의하면 농림·어업·광공업등 대부분의 산업이 분기중 정상적인 성장을 기록한것과는 対照的으로 建設業만 지난 1,4분기중 15.9% 감소에서 2. 4분기 중에도 12.2%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시 3,4분기중에는 2.6%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으로써 다른업종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만은 장기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韓銀은 이처럼 건설업이 타업계보다 長期的인 침체를 지속하는것은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政府建設은 期間중 多少 增加했으나 부동산 경기의 선제적인 침체를 반영 民間建設活動이 주거용 건물 건설부문에서 그리고 電力施設등 기타 건설활동이 크게부진한데 기인 한것으로 분석했다.

건축…작년실적에도 못미쳐

81년 건축면적은 경기침체를 반영, 75년이후 가장 부진했던 작년실적에도 밑돌고 있다. 특히 주거용과 상업용건축이 크게 준 반면, 불경기속에 투자가 위축됐음에도 공공부문의 투자확대와 지방 소규모공장의 건설이 활기를 띄어 공업용은 작년보다는 78.8%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건축허가 면적은 55만6천6백70평 (1백83만 7천㎡)으로서 지난 75년이후 가장 부진했던 작년 같은기간의 57만2천1백20평 (1백88만8천㎡)을 3% 밑돌고 있다.

특히 임대빌딩등 상업용은 9만4천2백평으로 작년실적의 80%, 주거용은 29만8천평으로 91%에 그쳤다. 그러나 공업용은 7만6천9백평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78.8%, 학교등 기타건축물도 8만7천2백평으로 3.2%가 늘었다.

주택수요자금 방출키로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급키로한 3천억원 규모의 주택수요자금융의 융자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이주택자금의 상환기간을 당초 2년거치 1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년분할상환으로 1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주택자금은 1월

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매달 1천억원씩 풀계획이었으나 공급기간도 6월까지 미늘리기로했다.

이주택자금의 금리는 일반대출금리와 똑같게잡아 年18%인데 융자금액은 50만원 단위로 끊어 가구당 1천만원까지 꾸어다준다는 것이다. 이주택자금은 희망자가 많을경우 무주택 家口主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당초 방침이었으나 굳이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꾸어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주택자금은 전용면적 30평 이하의 집을 새로짓거나 새로 사서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돈이모자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꾸어주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서 집을 새로사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서를 각각 첨부, 대출신청을 해야한다.

따라서 신축건물이나 입주예정주택이나 아파트가 바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담보는 필요가 없다.

이 주택자금은 지난 15일 또는 16일부터 국민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1월부터 공급된다.

이번 공급되는 주택자금은 국민은행자금인데 자금여력이 없는 주택은행도 이 국민은행자금을 활용,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5개노선 미관지역 공람

서울시는 서대문로터리~독립문로터리간 도로양쪽 폭25m 길이 8백60m를 제1종 미관지구로 신규 결정키로 하는등 모두 5개노선 13.1km 18만여평을 미관지구로 새로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14일까지 일반에게 공람을 시킨후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 확정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로 신설된 지역은 1종이 서대문로터리에서 독립문로터리 양쪽 25m씩 길이860m 1만3천7평 2종은 녹번동 3거리~갈현동4일대 폭 20m 길이3.6km 4만3천5백60평 문화촌 유진상가주변 길이 4백70m 5천4백45평 원남동103~길음동33의 양쪽 30m 길이 4천9백50m 8만9천2백37평이고 4종미관지구는 독립문로터리 은평국민학교 앞길이 3천2백80m 2만9천6백45평 미관지구 내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 각종건축물의 건축이 규제되는데 1종 미관지구의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병원 자동차부품 세차장 제재소 창고 철물점 공장 주유소등의 설치를 할수없다.

韓式木造建築設計原論 출간

趙勝元·趙英武씨 共著

韓式木造建築設計原論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趙勝元씨와 趙英武씨에 의해 출판되었다.

80고령의 저자 조승원옹이 한문사연구(四聯句)로 쓴 초고를 자제인 조영무씨가 펴낸 이 책은 大木출신이 직접 쓴 최초의 우리 나라 전통의 한옥건축기법을 소상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난 연말에 民音社에서 출간된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장차 우리의 건축역사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 자신이 평생동안 배우고 익힌 산기예들과 지식들을 직접 후진들에게 전하려고"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여태껏 나와 같이 대목수업을 거친 사람이 직접 서술하여 펴낸 건축책을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척 불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체계적인 건축기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民音社·15,000원

종묘앞에 녹지광장

서울 종묘앞에 1만2천8백90평규모의 주차-녹지광장이 내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업 1차년도인 내년에 우선 20억원을 들여 건물 및 토지보상등 정비공사를 시작하며, 오는 84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 종묘앞에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주차장 및 녹지광장을 만들기로 했다.

종로구 봉익 훈정 인의 종로3~4가 동일대에 걸친 이 광장대상지는 이미 지난 62년 광장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됐으나 예산부족등으로 그동안 사업시행을 미뤄온 곳이다.

그러나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서울시가 선정됨에 따라 이번에 서울시가 도심정비사업의 하나로 20년만에 사업착수에 나서게된 것이다.

서울시는 광장조성에 맞춰 종묘와 창경원간의 연결통로를 확상토록 관계당국에 요청, 창경원앞 관광인파의 분산도 꾀할 계획이다.

광장이 들어설 종묘 정문앞 진입로 양편에는 6.25동란 이후 무질서하게 건립된 낡은 건물들이 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쳐왔다.

종묘앞 광장은 정문에서 종로대로까지 연장돼 관광객의 출입과 주차편의뿐 아니라, 도심녹화의 효과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계획때 주민의견 반영

서울시는 1백84개 각급학교가 들어설 총4백 51개소의 토지수용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키로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당사자나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모든주민이 해당구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한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시는 이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이를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키로 했다. 한편 대상지역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공원 군사지역 이전계획이 없는 가동중인 공장및 도시계획이 중복된 지역등은 일단 보류했다. 또 결정규모가 방대한 지역은 분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며 이번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다시 단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계획이다. 이번

에 시가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한 184개학교는 국민학교 112 개 중학교44개 고등학교 28개소 계획부지는 총77만 5천백54평에 달한다.

구로정비지구 용도변경

서울시는 지난달 3일 구로지구 정비계획을 변경 10만여평의 용도지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시는 구로동 79일대 1만6천8백80평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구로동60일대 6만5천5백21평을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구로동20일대 2만4천9백32평을 준공업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했다. 시는 당초 공단으로 조성했던 구로지구에 주택가가 형성됨에 따라 그동안 용도지정에 묶여 제한을 받아오던 부대사설의 건축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용도지정을 변경한 것이다.

유리벽빌딩 건축억제

남산하이야트호텔이나 을지로입구 한양투자금융 건물처럼 벽면을 온통 유리로 덮거나 반사유리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은 앞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벽면을 유리창으로 할 경우 열손실이 높아 에너지절약시책에 어긋날뿐 아니라 특히 반사유리를 사용하게되면 운전자의 시야에 일시적인 장애를 주게 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벽면을 유리로 처리하는 신축건물은 건축주들에게 설계를 변경 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담장 나무울타리로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시멘트 벽돌담장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숲속울타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9백40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등 각급학교의 딱딱한 시멘트 벽돌담장을 헐고 이들 학교주변에 직경 6cm에서 7cm의 플라타너스 나무와 현사시등 키가 큰 활엽수를 3cm간격으로 두줄에서 세줄로 심어 1차숲속울타리를 치게 했다. 큰나무 밑에는 쥐똥나무와 개나리 측백나무등을 심어서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수도녹화계획에 맞추어 학교주변에는 입학이나 졸업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입학과 졸업기념 식수토록했다.

아파트단지 방앗간설치 허용

아파트 단지에도 떡방앗간을 설치할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그동안 신규허가가 규제돼오던 아파트단지의 떡방앗간 설치를 이달부터 완화키로 했다. 시는 모터동력 5마력 미만짜리를 사용하는 떡방앗간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한편 그 이상 규모는 계속 규제케 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은 철도변에 1천2백76동 공원 녹지지역에 3만8천6백19동 하천변 1만2천3백76동 구획정리지역에 3천3백76동 기타지역에 9만8천4백13동이 있으며 비주거용 장기미준공건물은 2만3천85동으로 밝혀졌다.

무주택시민 소형주택 원해

도시무주택자들이 사용하는 방은 1개가 전체의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를 쓰고 있는 가구는 30%에 지나지 않는다.

집세는 1백만원에서 5백만원 까지의 전세가 전체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보증금없이 월세나 삭월세로 사는 가구는 20%로 나타난다. 이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은 계 또는 가정저축이 30%를 넘고 있으며 주택은행이나 기타은행에 주택구입을 위한 별도의 저축을 하고있는 경우가 35%에 달한다. 이에따라 선매청약저축 재형저축등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 저축은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전체의 87%가 단독주택을 희망하고 있으며 아파트 8% 연립주택은 5%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아직까지 낮은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의 규모는 18~20평이 40% 21~25평 20%로 18~25평이 전체의 60%의 비중을 차지하여 방3개의 국민주택을 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택의 위치는 걸어서 30분 버스로 30분거리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이같은 주거환경 희망에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종래15평에서 20평으로 상향 조정하고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짜리 주택을 많이지어 공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강岩綿K·S획득

株式会社 金剛은 지난 12月25日 建築用과 産業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不燃保温断熱材인 岩綿製品의 K.S表示 사용허가를 획득하여 保温断熱材 수급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해마다 막대한 外貨를 들여 海外로부터 에너지 資源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가지 施策을 펴고 苦心하고 있는바 그 대책의 일환으로 建築物의 断熱材 사용의 義務化를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있다.

工業振興庁은 이미 지난해 4月11日에 국내 최초로 不燃断熱材인 岩綿의 K.S규정을 개편하여 종전에 1, 2, 3호로 되어 있던 것을 1호로 統一하였다.

이는 建築資材의 品質을 国際水準으로 끌어 올림과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株式会社 金剛은 岩綿을 海外에 수출 好評을 받고 있으며 '82년에도 수출을 더욱 늘릴 計劃이다.

단독주택 주문생산

주택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건설업체들이 단독주택의 주문건설에 적극나서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現代건설은 올들어 20가구의 주택을 주문받아 지은데 이어 최근 유니온기획과 합동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4천2백 여평을 확보, 주문주택 43가구를 착공중이라는 것이다.

유니온기획이 땅을 대고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이주택(대지 90평, 건평 68평)은 서구식주문주택의 일종으로 단독주택이면서 난방방식이 중앙집중식이다.

평당분양가격은 70만원선인데 現代측은 착공전에 주택조합을 구성, 모두 분양을 끝냈다고 한다. 또 光明주택도 서울종로구 旧서울문리대 뒤쪽 駱山莊터 2천3백평을 구입, 대지 83평, 건평 68평짜리 단독주택 (분양가격 1억5천만원) 27채를 짓고 있는데 이 가운데 16채는 이미 분양됐다.

이와함께 京南기업도 내년중 대전에 25평안팎의 단독주택 3백20가구를 지을예정이며 서울에서도 단독주택을 주문받아 건설할 예정이다.

漢陽 및 三煥기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문주택건설에 나설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주문주택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인데 건설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택양식을 미리 주문받는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사전에 3~4 종류의 양식을 미리 제시, 고객이 선정토록 하고 있다.

淨化를 위한 提言

淨土위에 우리의 建築을 세워야

世態의 변화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사회나 국가의 통치이념이 지도자의 의도에 따라, 또는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지식인의 의식구조에 따라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게 마련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흐름에 따라, 한 세대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그동안 정치적인 견지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였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른바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체질에는 합당치 않다는 결론도 한때는 내려졌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치체제가 구상되곤 했다.

문제는 본래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의회에 보내 自己들의 이익을 대변케하는 것이겠으나,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어 온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으며 따라서 정치가의 의도 대로 사회현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곤 했던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 공명정대한 민의가 제빛을 찾지 못했던 우울한 세태가 있었으며, 그러한 사회적 생리현상은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기업, 단체등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세태는 변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강이 발아되고, 그 줄기가 곧 단단해지고 미구에 우리는 그 그늘에서 또 다른 생리작용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울했던 기억처럼 어느 한 부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대다수의 뜻이 바르고 빨리 전달됨으로써 전체가 동화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세태가 된다는 자신감이 넘쳐있으며, 실제로 지금 가는 길이 그러한 탄탄대로라는 것이다.

때문에 방법이라면 몰라도 목적에 이견이 있을 수도 없으며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간의 여유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반을 다지고 기둥을 세워 하나의 훌륭한 집을 짓는 작업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결 조건은 서둘러 허술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세워야 겠다는 기본적인 정신자세, 의식의 개혁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되는대로, 시키는대로, 적당히 짓는 집이 풍파에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아무리 좋은 재목으로 꾸며 놓았다고 해도 하기싫고 생각은 다른곳에 가있는 목수가 지은 집이 제대로 될 수 없는것과 같이 —. 의식구조의 변화는 종래의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성향의 그것에서 벗어나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줄 안다.

새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불붙기시작한 정화·청탁배격 작업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스스로 찾자는 권리회복운동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관이 밝고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지대한 목표인 복지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결국 오지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축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건축계저간의 사정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었음은 사실이고, 바로 그 점을 파헤쳐 건강하게 재생시키자는 작업에 모두가 앞장서야 하며 그 방법중의 하나인 자율정화의 대열에 흔쾌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淨土위에 깨끗한 한국의 건축을 세우는 위업을 달성해야 한다.

82년도 본회 정책목표

1. 합리적인 협회 운영
   (1) 연합회 제도 추진 (독립예산)
   (2) 적극적인 사업 추진
   (3) 정화 운동의 활성화
   (4) 사무 능률의 향상
2. 회원 친목, 복지 향상
   (1) 납세조합 추진
   (2) 세율 인하 연구
   (3) 의료 보험 추진
   (4) 회원 후생 복지제도 연구
3. 건축 기술 향상 및 개발
   (1) 작품 전시
   (2) 세미나 개최
   (3) 연구 발표
4. 관계법규 및 제도 개선
   (1) 건축법·건축사법 미비점 보완
   (2) 건축 행정제도 개선
   (3) 특별전형 시행
5. 건축사지의 혁신 발간
   (1) 내용 기사의 혁신
   (2) 회원 참여 증진
   (3) 홍보활동 강화
   (4) 전 직원 기자화
6. 회관 이전 계획 추진
   (1) 회관 건립 위원회 발족
   (2) 구체적인 이전계획 수립

"새 기풍진작에 노력할 터"

서울지부 지부장 金 枝 泰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이제 임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에는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모든 여건이 퍽 어려웠던 시기로 특히 회원여러분들의 업무와 직결되는 국내건축경기의 침체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내려가 사무실 운영마저 힘겨웠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 하면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되며 이땅 위에 창조적인 건축문화가 계속 꽃 필것을 8백여 본지부 회원들과 함께 염원합니다.

당국에서도 새해에 들어 경기회복을 위한 갖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어 완만하지만 차츰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특히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우리 회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기대 되리라 보며 희망을 안겨다주는 새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지부는 회원 여러분들의 지성과 단결로서 새로운 기풍 진작을 위해 대화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새시대에 접어 들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화운동에 발맞춰 새 질서 정립을 위한 우리 주변의 부조리를 스스로 척결해서 지상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과 정의 사회 구현에 건축사의 힘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읍니다.

회원제위의 건승과 신년 소망이 꼭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구지부 지부장 金 在 佑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되면서 11월28일 본지부가 대구직할시지부로 출범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새로운 지부로 출발하는 본지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의 협회로서 회원 여러분의 복지향상과 권익 옹호는 물론 본지부의 발전을 기하고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유례 없는 건축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수난을 받은 해였읍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복지국가건설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지난해 착공을 보게된 대구 건축사복지회관도 금년 5월경에는 준공을 보게될 것입니다.

회관이 준공되면 우수자재상설전시장도 개설하여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이 다함께 회관준공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원지부장 李 國 男

새해를 맞이하며 늘 느끼는 것은 작품활동에 보다 충실해서 진정한 의미의"작품"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아쉬움이다.

물론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도 아쉬움을 갖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지만 보다는 우리 건축사들이 처한 현실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축사의 권익을 위한 법의 개념도 외면 당해 온 실정이며, 오히려 건축사 업무 규범속에 휘말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 예로 현장감리의 의미가 건축물의 질적인 면을 지키기 보다는 건축주의 일방적인 시공처사를 감시 하기에 급급한, 마치 위법 단속반 같은처우를 언제까지나 받아야 하는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이 건축활동으로 그 척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 방에서 아직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퍽 안타깝다.

이제 새해를 맞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지위향상에 회원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며 새 시대 새 역사에 부응하여 꼭 필요한 선구적인 단체로서 우리의 협회가 성장해 주기를 빕니다.

새해의 주역으로서…

충북지부장 吳 世 炯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때 경제불황으로 협회및 지부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회원들의 부(富)는 나 자신의 부요 나 자신의 부는 국가의 부이며 곧 성장발전인 것입니다.

신년에는 사업 계획가운데 하나인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으로 지역 간의 건축사 업무침해, 보수요율의 과다덤핑,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방지를 보다 철저히 강화 하여 우리 건축계의 불황을 헤쳐 나아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읍니다.

청탁배격, 사회 정화운동, 새마을 운동, 등을 활력화 하기 위하여 지난 한해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더욱노력 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 제위 께서는 협동정신자세로 복지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 보다 알차고 성실한 설계를 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충남지부 지부장 柳 根 洌

세대는 조물주의 섭리에 따라 또다시 1982년이란 새로운 시간의 공간을 펼쳐놓았다.

어제의 모든 즐거움, 괴로움, 뒤범벅된 결과들을 새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한줄기의 희망속에 오늘을 전개해보려 한다.

1.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우리 충남, 2년여란 어제속에 온갖 어지러움증으로 점철되었던 시련이란 두 글자를, 올해에는 최소한 벗어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우리들 만이라도 하루빨리 정립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책임만 지라는 식의 굴레에서 우선 보호부터 받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고.

2. 옛말에 주어진 밥도 못찾아 먹는다는 얘기가 있다.

올해부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밥을 기필코 찾아먹어야겠다. 밥이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3. 다된 밥에 재뿌린다는 말이 있다. 재뿌리고, 밥을 못찾아먹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들 주위에는, 독버섯(?)처럼 간혹 있다. 1년생 잡초 씨앗이 바람부는대로 날아다녀 온갖 정성을 들여 가꾸어 놓은 정원을 더럽히듯. 부디 나라를 알고, 사회를 알고, 우리들을 알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으로 하루속히 우리들의 정원으로 들어오게끔 노력하겠다.

4. 우리의 옛 선조들은 어려움을 낙으로 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고한 삶을 영위해 왔다.

어지러운 증세를 한봉지의 약으로 순간만을 넘기는 식의 자세는 있을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새마음 가짐, 우리들의 새로운 전진을 위해 우리 지부만이라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이룩해야겠다. 아기자기한.

부디 1982년에는 우리 모든 건축사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일꾼으로서의 각오로 뛰겠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토대로…"

전북지부장 文 尚 植

우리 모두 희망과 기대 속에 임술년 새해를 맞이 했읍니다. 우선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뜻 하시는 바가 성취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회원 여러분!

몇년째 계속되는 국제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난해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극심한 불황으로업무면의 위축등 생업마저 위협을 느껴온 고난의 연속이었읍니다.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굽힐줄 모르는 인내와 의지로 버티어 왔읍니다. 우리가 이와같은 역경을 헤쳐온 것은 2천여 회원이 합심 단결하여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온결과라 생각되며, 이와 같이 뭉치면 산다는 산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더 회원 총화 체제를 굳건히 하여 우리들의 공동 이익 바탕으로 공동 권익 옹호를 위한 배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읍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내를 토대로 내일의 전진을 위한 기회로 삼아 앞날을 설계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에 이룩할 희망에 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면서도 새해에 계획한 일들을 마무리 짓지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해를 넘기곤 합니다. 이러한 신례를 타파하여 새해에는 모든 계획이 기필코 이루어 지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하며 더욱 고결한 건축사로서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계의 진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실것을 바라지마 않읍니다.

끝으로 더욱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면서 신년사에 대 합니다.

"단결통한 지속적 발전을"

전남지부장 金 暎 植

임술년을 맞이하여 뜻 하시는 바가 성취 되시기를 축원 합니다.

어려웠던 지난한해를 보내고, 새해는 생동과 약진의 한해가 될것을 확신하며 정의사회구현의 역군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업무 신장을 도모하는 해가 되어야겠읍니다.

다행히 연초에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됨에 따라 건축경기의 호전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우리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오직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전체회원들의 단합이 반드시 선결되야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굳게 뭉쳐서 우리 스스로의 권익과 복리를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겠읍니다. 이에 본인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회원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새로운 각오와 새시대의 역군으로 올바른 건축사상 정립에 노력해야 하며, 둘째, 건축사업무상의 부조리한 일을 스스로 척결해서 깨끗한 주변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총화단결로 친목을 도모하며 넷째, 자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연구노력을 경주할것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건축사상 구현을

경북지부장 孫 在 守

새해를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 더구나 80년도부터 격변하는 국내 경제의 악순환과 그 여파로 인해 건축사계는 인내를 강요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층 더 감회롭다.

이제 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를 계기로 긴 안목에서 보다 훌륭하고 우리나라건축을 세계에 자랑해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 설계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업무수임상, 또는 건축행정상 적지않은 물의가 일어나 선후배간에 혹은 동료간에 불미스러운 현상이 없지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는 작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서로가 인격적인 차원에서 반성해보고 새로운 질서 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82년도에는 우리건축사계가 십기일전하는 해로 좀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내실적인 발전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건축사상 구현에 정성을 쏟기를 기원한다.

分科委員会위원/프로필

다음은 본회 3개 분과 위원회(윤리·편찬·건축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위원을 소개한것이다

윤리위원

□ 김두현(金斗鉉) 위원
고려대법대
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변호사회회장(현)
한국합동법률사무소

□ 안창수(安昌洙)위원
서울대 법대
건설부 법무관

□ 최창규(崔昌奎)위원
동경홍아고등 건축과
건축가협회 회장
신진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대표작품 : 육군회관

□ 안인모(安仁模)위원
경성소화공과학교 토목과
삼풍건축사사무소
삼미건축합동사무소 대표

□ 김인석(金仁錫)위원
서울대 공대 건축공학과
태한건축연구소
종합환경연구소 일건대표

□ 강태운(姜泰運)위원
한양대 공대 건축공학과
고려건축합동설계사무소 대표
대표작품 : 한국노총회관

편찬위원

□ 이명호(李明浩) 위원
서울대 공대 건축공학과
중앙대 공대교수 공학박사
태양열에너지학회 부회장

□ 강건희(姜健熙) 위원
홍익대 공대 건축공학과
홍대부설 환경개발연구원 실장
홍익대공대 교수
건축학회 교육분과위원장

□ 박용환(朴勇煥) 위원
한양대 공대 건축공학과
일본와세다대 석사
일본 동경대공학 박사
한양대공대 교수

□ 이영일(李榮一) 위원
한양대공대 건축공학과
대한주택공사
삼송건축연구소 대표
작품 : 대한교원공제회관

□ 김한근(金漢根) 위원
서울대환경대학원
국방부건설본부 건축담당
한·종합건축설계사무소 대표

□ 김기철(金基哲) 위원
홍익대 공대 건축공학과
홍익대대학원
홍익대강사
(주) 동양종합건축 대표

□ 강철구(姜哲求) 위원
연대이공대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설계사무소
동우건축설계사무소 대표

건축연구위원

□ 조동영(趙東榮) 위원
서울대 공대 건축공학과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대표
이화여대 강사
작품 : 보영빌딩 · 광명종합병원

□ 장기인(張起仁) 위원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삼성건축 대표
대표작품 : 한국의집

□ 한규봉(韓奎峯) 위원
부산대공대 건축공학과
건설부 기술지도과장
건설부건축관리관
건설연구소 건축부장

□ 신현식(辛鉉植) 위원
서울대 공대 건축공학과
중앙대 공대건축과 교수

□ 한정섭(韓鼎燮) 위원
서울대 공대 건축공학과
단국대 공과 대학장
대표작품 : 연동교회

□ 김진일(金真一) 위원
한양대공대 건축공학과
일본와세다대 대학원
한양대 공대교수

□ 이승우(李丞雨) 위원
서울대공대 건축공학과
육군사관학교 교수
연대이공대 강사
(주)종합건축설계사무소 대표

□ 박우하(朴瑀夏) 위원
한양대공대 건축공학과
경신건축공사 대표
대표작품 : 서울시 부녀복지회관

□ 한종언(韓鍾彦) 위원
전남대공대 건축공학과
(주)금성종합설계공사
금성건축연구소 대표

□ 유규성(劉圭成) 위원
한양대공대 건축공학과
유희증건축설계사무소
범양건축연구소 대표

□ 유경철(俞景哲) 위원
한양대공대건축공학과
삼육건축연구소자영
연대 · 이대강사
대표작품 : 불교회관

□ 장태수(張泰洙) 위원
조선대공대 건축공학과
건설부 주택도시국
건설연구소
(주)고려종합기술공사 대표

□ 윤봉원(尹鳳源) 위원
한양대 공대 건축공학과
원건사건축연구소 대표
대표작품 : 육군사관학교교회

□ 장석웅(張錫雄) 위원
한양대 공대 건축공학과
아도무건축연구소 대표
대표작품 : 충무공기념관

□ 김대식(金大植) 위원
한양대 공대건축공학과
김건축연구소 대표
대표작품 : 남광토건사옥

□ 정인협(鄭寅協) 위원
대전공전 건축과
대전시청
류근열 · 정인협건축연구소 대표

우리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I)

金 鴻 植 〈會員 · 금성종합설계공사〉

〈목 차〉

(1) 개 론
(2) 전(田)자집
(3) 6칸집
① 영동형
ㄱ. 마루집 ㄴ. 구들집
② 안동형
ㄱ. 마구간이 있는 마루집
ㄴ. 마구간이 없는 마루집
ㄷ. 마루가 없는 집
③ 중간형
ㄱ. 퇴 사랑방집 - 중부내륙
ㄴ. 정지방집 - 남부내륙
ㄷ. 근세형집
(4) 8칸집
① 칸수만 증가된 집
② 한쪽 부엌집
③ 가운데 부엌집
ㄱ. 외양간이 있는 집
ㄴ. 외양간이 없는 집
ㄷ. 살림방을 놓은 집
④ 정주간이 있는 집
(5) 살림방이 증가된 집
① 정주간이 없는 집
② 정주간이 있는 집
③ 근세형집
(6) ㄱ자 모양집
(7) 사방집
(8) 결 론

(1) 개 론

양통집이란 한 용마루 아래 방들이 2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동북부(함경도) 지방에서부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동해안 지방, 안동지역, 드물게는 서부경남 및 경기도 서해안까지 분포되어 있는 집이다. 또한 안(몸)채 안에 외양간, 방앗간, 고방 등의 경리(經理) 시설물이 부엌 옆에 시설되고, 함경도 지방의 양통집에는 정주간이 마련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양통집의 유형은 정주간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사방집=(세겹집)을 포함시키는 수도 있는데 크게는 사방집이 양통집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은 주로 함경남도와 강원도, 황해도의 광주산맥 주변, 경기도 일대 및 이남에서는 안동과 영동지방 즉, 태백산맥 동쪽지역 및 태백 · 소백산맥 중심의 산간 지대에도 가끔 분포한다. 반면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함경남북도에 분포하며 사방집은 광주산맥 및 태백산맥 줄기의 내륙산간 지대에 퍼져있다.

양통집에 있는 (봉당)마루는 그 형태가 곱은자집의 대청마루와 같고, 특히 사방집의 대청마루와는 더욱 유사하다. 즉 대청, 공청, 봉당마루 등의 각종 마루는 방의 배열에 따른 형태가 좀 다를 뿐이고 그 기능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들의 연원이 같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마루가 기후관계로 인해 발전한 남방형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실제로 마루는 상당히 추운 지방에서까지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루가 반드시 남방형의 집에만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양통집 가운데서도 외양간이 몸채 안에 있지 않고 부엌 앞의 처마 밑에 시설되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면의 모양이 마치 외통집의 ㄱ자집과 비슷하게 된다. 외양간을 따로 떼어 냈을 경우 양통집에는 그 자리에 〈딴방〉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방은 외통형 ㄱ자집에서의 딴방(건넌방)과 비슷한 구실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양통형 집에 있어서는 문의 배치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곱은자집은 곱은자 모양의 양통집에서부터 그 평면 형태가 출발하였으리라는 추측을 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이 그 칸수가 최소한도로 작아지는 경우 보통 외채 외통형집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집은 중부 산간지대에 널리 분포한다.

양통집은 다른 지방의 소농들의 집에 비해서 비교적 크므로 땅이 척박한 곳에서 자영농들이 이용하는 집이었음을 말해준다. 양통집을 이남에서는 겹집이라 부르는데 여기서는 삼남지방의 전후좌우 퇴집의 겹집과 구분하기 위해서 함경도에서 쓰이는 양통집이라는 말을 쓴다. 왜냐하면 삼남지방의 겹집은 여기 양통집의 평면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제글, 민속대관 주생활편 참조, 고대민속문화 연구소 1981.) 따라서 주택이란 사회경제적 및 신분적인 제약, 생산력 및 자연지리적인 조건에 적응하면서 형성 · 발전했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양통집은 주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이 절감되도록 설계된 집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대지향적인 집이라고 믿는다.

(2) 전(田)자집

이 집은 평면의 간살이가 밭 전(田)자 모양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구조방식은 겹집의 유형과 관계를 맺으며 다분히 2칸 막살이(겹)집과 공간구성, 이용, 분포 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분포지역은 남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가끔 볼 수 있으며 내륙이나 제주도 등지에도 극히 드물게 분포한다.

평면의 모양은(그림 1 : 전남 승주군 낙안면 동내리 최 선준. 79. 7월 조사) 거의 바른네모꼴로서 사방집, 똬리집, 뜰집과 함께 우리나라 집에 있어서의 특이한 형태이다. 간살이는 앞쪽으로 대청과 건넌방(남부지역에서는 아랫방이라 부름)을 배열하고 뒷쪽으로 마루 뒤에 안방과 그 옆에 부엌을 놓는다. 다시 말해서 구들과 부엌 및 대청이 각각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부엌에서 각 구들에 직접 불을 땔 수가 있으며 또한 각 방에서도 마루로 직접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마루로 직접 나가지 못하고 집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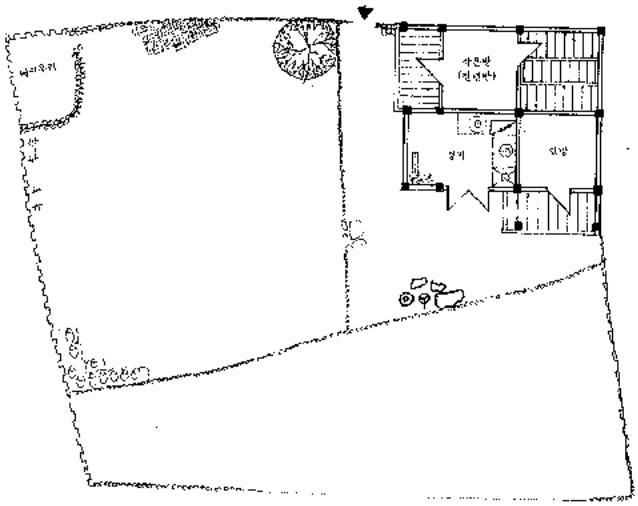

〈그림 1 : 전(田)자집〉

한 점이 있다.

이런 집들은 보통 퇴 없이 이용되나 최근에는 처마 밑을 이용하는 민가의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부엌과 안방 뒤의 처마 밑을 막아서 수장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부엌+안방 앞쪽과 부엌+건넌방 앞쪽에 퇴를 덧달기도 한다. 이런 것은 그 지방의 구조기법으로서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취사선택하는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집의 구조는 3평주 3량(三平柱三樑)집으로 양통집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벽체는 뼈대를 주축으로해서 흙담을 평벽처리하는 고식(古式)인 경우가 많으며 맞춤 또한 상두맞춤으로 고전적인 방법이 이용되는 수가 많다.

집의 구성은 보통 외채로 처리되지만 남부지방의 특성처럼 쌍채인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밭전(田)자집이 안채보다는 사랑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하는 계층은 소농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또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건물면적에 비해 경제적이다. 그러나 집의 전체규모가 작고 부엌에서 대청으로의 출입이 나쁘며 장차 증축 가능성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집의 공간이용이 가게 등으로 쓴다든가 하는 특이한 경우가 많으며 임시 가건물로 지었다가 그냥 눌러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집은 동북지방의 양통집이나 삼남지방의 겹집이 분포하는 곳에서 집의 규모가 6칸보다 작아질 때 쓰이는 평면구성이다.

(3) 6칸집

6칸 양통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6칸집으로서 평면의 모양, 구조 및 가구(架構)의 기법이 양통집의 표준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집에서는 소작겸 자작, 혹은 자작을 할 수 있는 소농(小農)이 산다. 분포상황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서 중부내륙의 산간지대와 태백산맥의 동쪽인 관동·영동지방 및 안동에 걸쳐 분포한다. 그리고 서해나 남해 해안지역에서도 아주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집이 분포하는 지역의 공통된 특색은 국가의 치안능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는 변방지역이고 땅이 비교적 척박한 지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치안의 편의상 집이 외부에 대해 폐쇄적으로 지어졌고 평면의 구성은 부리는 사람이 없어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부(主婦)의 동선(動線)이 짧게 고려되었다. 여기에 비해 서부지역에서 유행되었던 곱은자집은 처음부터 부리는 사람을 둘 생각으로 지어진 평면으로 생각된다.

① 영동형

이 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6칸집이기는 하나 3칸 일자집처럼 부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하 2칸을 차지하고, 나머지 간살이는 밭 전(田)자 모양으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기능에 맞도록 꾸며진 집을 말한다. 분포지역은 태백산맥 동쪽의 원산에서 울진에 이르는 영동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지역명을 따서 영동형이라 부른다.

ㄱ. 마루집

이 집은 가운데에 마루가 시설된 집을 말한다. 그 분포지역은 원산에서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이며 주로 오래된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평면의 형태는 긴네모꼴이며 긴 면(邊)을 전면으로 한다. 구조는 3평주 3량(三平柱三樑) 양통이고 지붕은 초가 이영에 합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초가지붕을 합각으로 처리하는 수법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남북으로 널리 분포하여 특히 이쪽 영동지방에서는 모두 이러한 방식이다. 이것은 모임지붕의 구조보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빗물처리가 쉽지 않지만 모임지붕의 구조상의 결함을 해결하고(제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편 주생활의 구조편 참조, 문화재 관리국 1977) 부엌의 연기가 빠질 수 있는 환기구멍을 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집을 까치구멍집이라 부른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2(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34 방재전, 80. 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前面)을 셋으로 나누고 측면을 둘로 나누어서, 왼쪽은 상하 두 칸을 부엌으로 쓰고 가운데는 앞쪽에(봉당)마루와 뒤쪽에 안방을 놓으며 오른쪽은 앞으로 사랑방과 뒤로 도장을 배치한다. 이 집이 다음에 설명하는 6칸 구들집과 다른 점은 마루의 유무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는 전자의 마루 위치에 구들(안방)이 놓이는 점이다. 또한 전자의 평면은 안동형과 상당히 유사하며 뒤의 6칸 구들집보다 이전에 발생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씨 집의 경우에는 외양간이 없는데 이는 이 집이 어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마당이 없다는 데서도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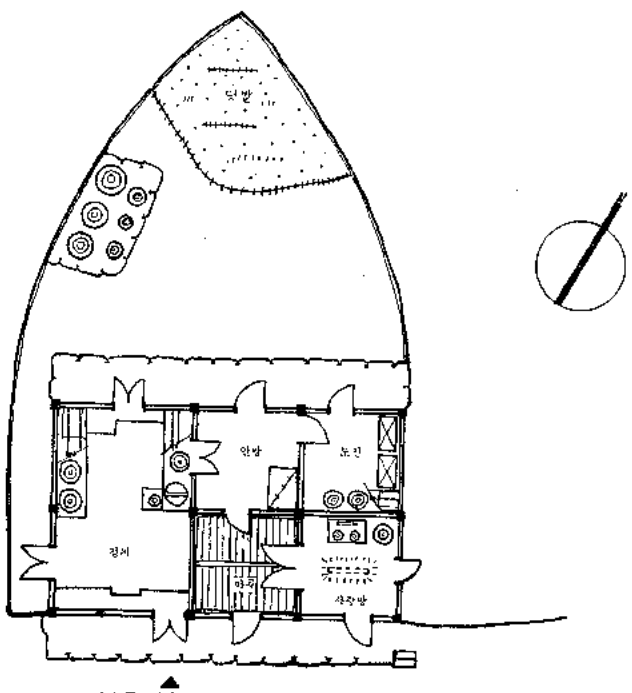

〈그림 2 : 영동형 마루집〉

부엌은 상하 두 칸을 통간으로 쓰고 있다. 부엌설비는 뒤 한 칸에만 설치되고 앞 한 칸은 실내작업을 위한 봉당공간으로 쓰인다. 봉당은 함경남북도에서부터 안동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된 집들에서 볼 수 있는 가내작업 공간이다. 부엌 바닥은 〈뜨렴〉(토방 또는 뜰땅)보다 낮아서 부엌 안에 부뚜막 같은 단을 만들며 서쪽 문에는 디딤돌을 놓았다.

마루는 부엌 쪽이 개방되었고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안방과 사랑방 및 도장은 한칸 크기의 바른네모꼴이다. 도장은 온돌이 시설되어 보통 때는 물건의 수장공간으로 이용되지만 식구가 많으면 신혼부부 또는 딸의 방으로 이용된다. 마치 3칸 집의 웃방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이런 류의 집 가운데 농가인 경우는 마구간을 몸채에 덧 다는데 부엌(정지) 앞으로 처마를 내달아서 만든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붕모양은 부섭지붕과 비슷하여 처마를 계속 이어 내리며 따로 지붕마루는 없다. 마구간 외벽은 이곳에서 바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려되었고, 옆쪽(側壁) 처마 밑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장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방들을 크게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류가 상하 6칸집인데도 불구하고 8칸으로 만들어서 안방을 좌우 2칸으로 하고 마루와 사랑방을 좌우 칸반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집에도 마구간이 부엌 앞에 시설되는 경우가 많다.

ㄴ. 구들집

이 집은 앞의 마루집의 마루에 구들을 설치한 집을 말한다. 동해안의 강릉에서 울진에 이르는 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집의 구조는 3평주 3량(三平柱三樑)이고 평면 형태는 특수하게 ㄱ자 모양이며 ㄱ자 모양의 안을 마당쪽(前面)으로 하고 있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3 에서(강원도 명주군 성산 면 보광리 최배집씨 73. 7월 조사) 보는 바와 같이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오른쪽 간살은 상하 두 칸을 부엌으로 쓰고 그 가운데는 앞으로 안방과 뒤쪽에 뒷방을 놓는다. 그 옆은 앞쪽에 사랑과 뒷쪽에 도장을 배치한다. 또한 부엌 앞에는 한칸 크기의 마구=(외양간)가 집과 ㄱ자 모양을 이루도록 만들어지고, 안방 앞 및 사랑 앞과 옆에는 조그만 쪽마루가 설치된다. 동해안 지방의 농가 평면은 대개 이와 같으며 도리간은 보통 한 칸이 8～9자(尺)이고 보 방향은 보통 8자(尺)인데 외통집인 경우에는 보간을 10자로 한다. 부엌은 상하 두 칸이며 다른 지방의 부엌과 마찬가지로 퇴칸을 덧달아서 공간을 크게 이용하고 있다. 부엌문은 마구간 쪽 세로벽에 내어 뜨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구간은 보통은 서까래를 계속 이어내려서 그 처마 아래를 이용하나 이 집은 정식으로 도리를 걸어서 맞걸이 3량구조의 집을 ㄱ자로 덧달아 내었다. 그러므로 이런 집은 정식 곱은자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외양간은 오래된 집의 경우 처마밑을 이용하고 최근에는 종도리를 거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대신 외양간 지붕은 모임으로 처리하지 않고 박공으로 만들어서 빗물을 양 옆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본채의 용마루에 맞추지 않고 본채의 처마도리에 걸쳐 댐으로써 지붕을 한 단 낮게 하여 곱은자집에 있는 회첨골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했다. 자연히 마구간은 천정높이가 낮아지는데 이 점은 뜨럭을 본채는 높게하고 마구간 부분은 낮게 처리함으로써 해결한다.

안방은 구들이라고 통상 부르며 뒷방은 남부지방의 정지방과 같은 용도로 이용되어 딸의 방이 된다. 구들 및 사랑의 앞과 사랑의 옆에는 쪽마루가 시설되는데 쪽마루는 동해안지역보다는 내륙지방에서만 가끔 볼 수 있으며 이것도 최근의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해안지방의 경우 비바람 때문에 빗물이 문앞까지 들이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젖어도 괜찮은 회마루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루를 설치하지 않는게 보통이다.

이런 류의 집에는 논농사가 없는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헛간채는 없다. 다만 변소간이 마당 건너에 만들어진다. 담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강원도에는 산간이라 돌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돌로 쌓았고 대문은 문 없이 시설된다. 마당에는 퇴비장과 짚가리가 만들어지고 나무 두어 그루가 집안 앞뒤에 있다.

기타 구조상의 큰 특색은 초가지붕이면서도 지붕이 합각으로 되는 점이며 평면의 이용은 강릉지역에 보편적인 1세대 주택이다. 요즘에는 뒷방과 도장의 너비가 작아짐으로써 중부지방의 골방과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충청도에서 골방이 점점 양통화 되어가는 현상과 대조를 이루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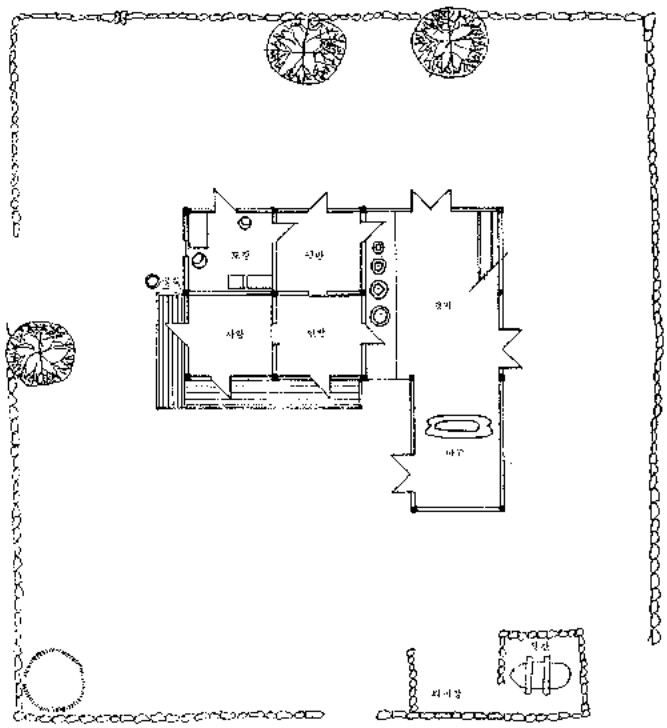

〈그림 3 : 영동형 구들집〉

② 안동형

안동형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안동을 주변으로 하는 안동 문화권에 속하는 지방에 분포하며 오래된 집들에 많고 그 남아 있는 숫자는 많지 않다. 이런 집을 이용하는 계층은 대부분 자영농들이다.

이 집은 역시 정면 3칸, 측면 2칸의 6칸집이기는 하나, 영동형과는 평면구성이 다르다. 중앙의 상하 2칸에는 앞으로 봉당과 뒤로 마루가 놓이며, 양측의 옆방이 상하 둘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기능에 맞는 살림방으로 된다. 영동형과 이 집이 다른 점은 앞의 경우, 살림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뒤의 경우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앞은 부엌=(정지)이 상하 2칸인 반면 이쪽은 한쪽 모퉁이의 한 칸을 쓰고 있다. 또한 집안에 외양간을 설치할 경우 앞의 경우 부엌쪽에 붙여 ㄱ자로 덧달아 내고 있지만 여기서는 건물내부에 한 칸을 차지하여 시설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안동형이 오히려 영동형보다 고식(古式)이라 믿어지는데 이런 근거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은 이런 형의 집이 함경도에 분포하는 집들이나 태백산맥의 산간지대에서 볼 수 있는 사방집(세마루 집)과 유사

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ㄱ. 마구간 있는 마루집

이 집은 6칸 양통집으로서 중앙 뒤쪽에 마루가 배치되고 집안에 마구간이 시설되는 특징을 가졌다. 평면은 긴 네모꼴로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들과 마찬가지로 긴 변을 정면으로 삼는다. 간살이는 그림 4 (경북 안동군 예안면 서양동 양정 김종철씨 1973. 11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앞으로 부엌, 뒤로 안방을 놓고 가운데는 앞쪽에 봉당, 뒤에 마루가 배치된다. 왼쪽에는 앞칸에 아궁이를 외양간(마구간)으로 하고 위는 다락을 만들며 뒤칸은 상방을 배치하고 있다.

안방은 크게 쓰기 위해 뒤와 처마 밑과 부엌쪽으로 내밀은 반면 부엌은 앞벽의 처마 밑을 이용하여 내쌓고 있다. 이렇게 내 밀은 공간은 수장공간(收藏空間)으로 이용하고 부뚜막 위에 벽장을 두었다. 봉당의 벽은 앞쪽에만 설치될 뿐 부엌과 마루쪽은 개방되어 있으며 마구간쪽은 구유로써 경계를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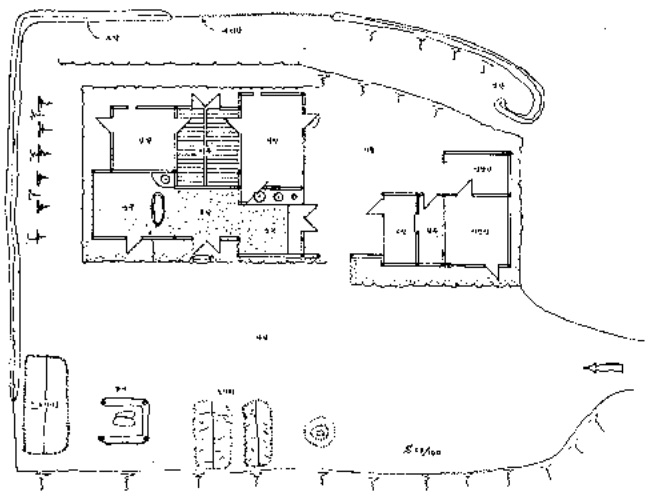

〈그림 4 : 안동형 마구간이 있는 마루집〉

마루는 이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며 2자(尺) 정도 봉당쪽으로 더 내달고 있다. 마구간은 봉당 쪽의 구유를 안으로 들여놓고 대신 옆벽 처마 밑은 내쌓았는데 마구간 부분만 내밀었기 때문에 그 위는 눈썹지붕을 해 덮었다. 다락은 마구간 위에 지름 10cm정도의 둥근 통나무를 가로 질러서 만들었다. 상방은 그 기능이 일자(외통)집의 사랑방과 웃방의 두 기능이 복합된 집이다.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안채 오른쪽에 두 칸의 사랑채가 안채(원채)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구조는 맞걸이 3량이며 오른쪽 간살에는 사랑방이 놓이고 왼쪽 간살은 고방, 뒤주로 이용되고 있다. 사랑방 뒤에는 처마를 내달아서 ㄱ자로 비가 들치지 않도록 벽을 만들고 디딜방아를 설치하여 방앗간으로 쓰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와의 사이는 건물의 벽과 같은 담장으로 연결하고 대문을 시설하여 뒤뜰을 앞마당과 구분하고 있다.

울담은 뒷쪽에만 시설하고 앞쪽에는 만들지 않았으며 대문 또한 가설하지 않았다. 잿간은 뒤안에 담을 둘러쳐 이용한다. 뒷간(통시)은 마당 앞에 설치했는데 이것 역시 ㄷ자로 벽을 쌓고 지붕을 덮은채 시선만 차단하여 쓰고 있다. 마당에는 짚가리가 여러 뭇 쌓여 있고 벼(나락)를 보관하는 〈장석〉도 시설된다. 이런 집은 안동지방에만 특수하게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서해안지방과 강원도의 태백산맥 줄기 근처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집을 간간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지방에서는 사랑채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채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 경우 이것이 두이(二)자나 ㄱ자 모양을 이루도록 배치되는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나란히 배치될 뿐 아니라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경우, 뒤안(뒤뜰)을 안으로 하는 ㄱ자 모양의 사랑채가 안채와 나란히 놓여진다는 점이다. 이 배치를 보면 뒤뜰의 공간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내부공간으로 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영동지방, 안동지역 그리고 제주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고전적 방식이다. 대신 이곳의 앞마당은 외부로부터 개방되었는데 이것은 영동문화권의 일반적인 현상과 일치한다.

최근에 지어지는 집은 안채가 ㄱ자로 되고 행랑채(모채)가 일(一)자 모양으로 사랑방 옆에 배치되는데 앞마당을 중심으로 놓여진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우 가족생활은 뒤안에서, 생산활동은 마당에서 한다는 생각이 깨지고 생산활동은 집 바깥에서 하고 가족생활은 집안에서 한다는 서쪽 지방의 공간개념이 섞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채의 가장 일반적인 평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ㄱ자집인 경우 안채 가까이에 마구간을 두고 다음에 대문간, 모퉁이에 사랑방을 상하로 두며 이곳에서 집이 안으로 꺾어져서 고방, 뒤주, 방앗간의 순으로 배열된다. 물론 마구간과 안방과의 사이는 담장으로 막아서 뒤안공간에 타인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대신 뒤주와 고방, 방앗간은 안채의 부엌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고려되었고 사랑방만 바깥 쪽으로 문들이나 있어서 앞마당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

행랑채가 한일자집인 경우는 안채와 ㄱ자모양으로 배치되고 앞에서부터 마구간, 〈쇠물정지〉, 행랑방, 뒤주, 방앗간의 순으로 배열된다. 물론 안채의 부엌과 행랑방 사이에 담장이 막아지며 여기에 대문이 시설되어서 뒤안으로의 출입은 제한된다.

ㄴ. 마구간 없는 마루집

농가생활에 있어서는 외양간(마구간)이 집안에 부엌과 가까이 있으면 대단히 편리하다. 그러나 위생상의 이유와 악취 등으로 근래에는 외양간을 딴 건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앞의 마구간 있는 마루집에서 외양간이 없어지고 대신 살림방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마구간 없는 마루집이라 한다. (그림 5: 안동군 서후면 저전동 73·11월 조사.) 외양간이 집안에 있는 경우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동부지역과 제주도인데 이런 지역에서 마구간이 딴 건물로 옮겨가는 현상은 남쪽의 경우 급속히 진행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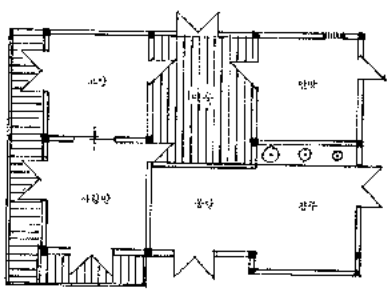

〈그림 5 : 안동형 마구간 없는 마루집〉

산간지대인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다.

평면의 구성을 보면 앞의 마구간 있는 마루집에서 외양간의 위치에 사랑방(상방)이 오고 상방의 위치에는 고방을 시

설한다. 일반적으로 고방에는 마루가 깔리는 것이 보통이나 여기서는 온돌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양간의 위치에 살림방이 증가되는 것만 다를 뿐 다른 방의 구성은 앞의 것과 똑같다. 사랑방 및 고방의 앞과 옆 벽에는 쪽마루가 놓이는데 이것 또한 최근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오래 된 집에서는 시설되지 않는게 보통이다.

ㄷ. 마루가 없는 집

이 집은 마루가 없이 구성되어서 공간의 구성이 약간 변형된 집이다. 평면구성은(그림 6 : 경북 안동군 서후면 저전동 73. 11월 조사) 가운데 앞쪽을 부엌으로, 뒷쪽을 봉당으로 이용하고, 오른쪽으로는 앞쪽에 마구간과 뒷쪽에 안방을 배치한다. 왼쪽은 앞쪽의 사랑방과 뒷쪽의 고방으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마루가 없는 대신에 이곳이 봉당이 되고 봉당의 위치에는 부엌이 시설되며 부엌의 위치에는 마구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집은 고방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뒷쪽의 뒤주와 앞쪽의 고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안동지방의 어떤 평면 형태에서나 자주 혼용되는 기법으로서 이 집에만 적용되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류의 집은 객점을 한다든가 하는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는 수가 많으며 앞의 집들보다 좀 더 가난한 계층의 살림집에 이용된다. 이러한 평면 유형은 극히 보기 드물어서 최근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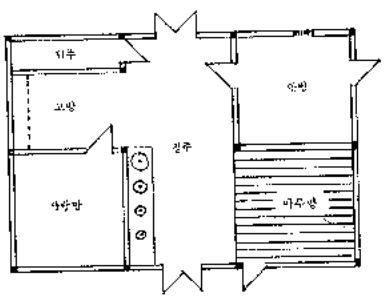

〈그림 6 : 안동형 마루가 없는 집〉

③중간형

ㄱ. 퇴사랑방집— 중부내륙

중부 내륙지방에서는 전형적인 3칸 일자퇴집과 양통집이 결합하여 새로운 평면구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해안의 집보다는 앞마당으로 개방되어 있고 이 지방의 다른 집보다는 집안 중심적인 공간 구성을 보인다.

이런 류의 집은 충북, 경북의 산간지대에 자주 분포하며 보통 3칸퇴집에 사랑방을 두는 경우와 연관지어서 평면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방이 겹으로 배치되면서 온전한 칸 수를 이룬것만을 다루었으며 방이 겹이나 그 크기가 반(半)칸 정도의 것은 (한)일자집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다.

안채는 긴네모꼴이며 긴 변을 전면(마당쪽)으로 삼는다. 구조는 1고주5량 퇴집(一高柱五樑槪)으로 전형적인 양통집과 달라서 한일자퇴집과 같은 유형을 이룬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7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1구 이 정안씨댁 74. 7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왼쪽 간살은 부엌, 가운데는 앞쪽에 (뜨럭)과 뒤쪽에 안방을 놓고 오른쪽은 앞쪽에 사랑방과 뒤쪽에 웃방을 배치하고 있다.

부엌은 상하칸을 다 쓰고 바깥벽을 내쌓아서 공간을 크게 쓴다. 전면에는 문이 없이 뜨럭 쪽으로 개방되었고 뒤에는 문 없이 개구부가 있어서 이용된다. 뜨럭은 토방과 마찬가지로 앞쪽이 개방되어 있으며 봉당과 같은 용도로 쓰인다.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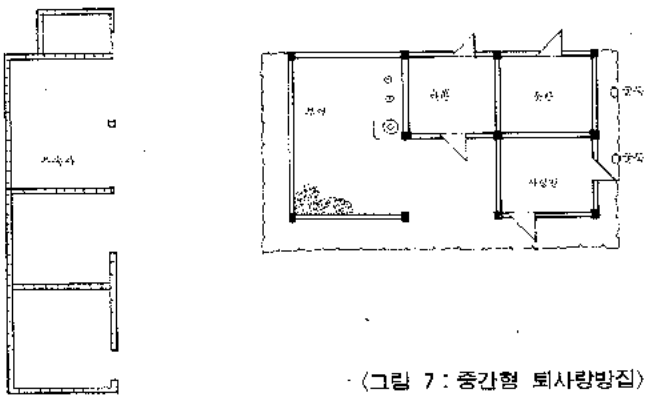

〈그림 7 : 중간형 퇴사랑방집〉

과 토방의 바닥은 흙바닥이다. 안방과 웃방은 크기가 같고 사랑방은 약간 적다.

이 집은 전면 퇴가 한 칸의 길이와 거의 같아서 양통과 같은 평면구성을 보이나 보통 이 지방에서 앞 부분은 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방은 수장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한일자 외통집의 (머리)끝방과 같은 역할임을 알 수 있고 웃방은 동해안의 도장과 중부지방의 웃방과의 중간의 가능을 갖는다.

이런 집에는 보통 헛간채가 딸리며 안채의 (왼쪽)모서리에 마당을 향해서 ㄱ자 모양으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두이자(二)로 놓인다. 헛간채의 평면 간살이는 3칸으로 홑집이며 구조는 맞걸이 3량이다. 이런 모양은 중부내륙의 일반적 특징과 일치한다.

안채와 헛간채 앞에는 마당이 있고 변소는 헛간채 옆에 곁달아 놓이나 부엌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변소가 부엌쪽으로 가까이 가도 꺼리지 않는 현상은 중부지방에 많으며 근래에 발생한 것이라 믿어진다. 울타리는 헛간채 반대쪽에만 생나무로 설치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인근 주택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옆집과 옆집들 사이는 모두 개방되어 있어서 경계가 일정치 않으며 어떻게 보면 도로에 면하는 셈인데 이것은 가난한 집의 일반적 특징이다. 장독대는 안채 뒤에 놓인다. 이런 집에는 극히 가난한 사람이 산다. 마당도 좁고 울타리도 서원치 않으며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ㄴ. 정지방집— 남부내륙

양통집이 중부 이남으로 내려가면 겹집이라고 불리워지며 외통집의 측면 칸이 넓어져서 구성된 겹집과 평면이 비슷하여 겹집인지 양통집인지 애매한 상태의 것도 있다. 그러나 양통집은 한 용마루 아래 방이 두 줄로 배치된다는 점과 겹집은 앞뒤 퇴집이라는 점으로 구분해 볼 때 남부 내륙지방에 양통집들은 다음과 같은 평면구성을 보인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78. 4월 조사)전면 3칸 측면 2칸으로서, 왼쪽에는 상하칸에 부엌을 놓고 가운데에는 뒷쪽에 안방을, 앞쪽에 마루(청)를 시설한다. 오른쪽에는 뒷쪽으로 웃방이 배치되고 앞에 작은 부엌이 만들어 진다. 부엌은 마루 쪽과 전면이 개방되어 있고 부뚜막과 토단을 사방 돌아가면서 시설한다. 뒷쪽에는 살강(붙박이 찬장)과 작은 항아리들이 놓인다. 마루에는 보통 판자가 깔리지만 흙(토단)을 약간 높게 해서 마루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웃방은 간혹 사랑방이라고도 불리우며 안방보다는 크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사랑방 앞의 작은 부엌에는 여물 솥이 놓여지고 부엌 바닥은 뜨럭보다 약 1.5자(尺) 가량 낮다. 마루는 전면과 양쪽 부엌 쪽이 다 개방되었다. 안방과 웃방에는 출입문과 통풍을 위한 봉창만이 있을 뿐이다.

헛간채는 두칸집으로 안채의 맞은 편에 나란히 배치된다. 담장은 동쪽으로 안채와 헛간채를 연결해서 만들고 서쪽은 안채의 부엌 끝에서부터 헛간채를 돌아서 헛간 뒤에 뒷마당을 만들고 헛간채 동쪽 끝에 와 닿는다. 주 출입구는 앞마당 동쪽에 대문 없이 시설되고 뒷마당 동쪽에도 따로 작업을 위한 출입구가 만들어진다.

이 집에는 안채 뒤에 뒤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독대가 앞마당에 놓이며 앞마당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점과 헛간채가 곁들인다는 점은 중부 이북지방의 양통집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변소간은 헛간채에 붙여서 뒷마당에 만든다. 이곳은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남부 내륙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 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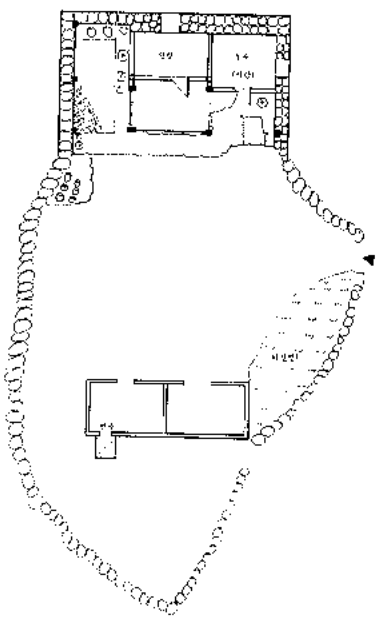

〈그림 8 : 중간형 정지방집〉

이런 집은 남부 내륙지방의 산간지대에 산재하며 역시 가난한 소작농의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에 살림방이 증가될 경우에는 — 영동지방의 경우 도장이 생기는 것과는 반대로 — 부엌(정지)에 〈정지방〉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큰방에 나란히 배치되거나 또는 마루(청)와 나란히 놓여지거나 한다. 이럴 경우 마루에는 나무널이 깔리는 것이 보통이며 전면과 작은 부엌 쪽만 개방된다.

이것보다 더욱 살림방이 증가되었을 경우 영동지방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나 정지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앞으로 부엌방과 뒤로 부엌이 놓이고 가운데는 앞으로 마루와 뒤로 안방이 시설된다. 오른쪽으로는 뒷쪽에 헛간과 앞으로 골방이 만들어진다. 이 집의 경우 (그림 9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판룡사 아랫마을 78. 4월 조사)는 사랑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구성을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헛간은 골방이 되고 골방은 사랑방이 된다. 여기의 헛간은 광의 용도와 같고 골방은 도장의 기능과 같다. 〈청〉에는 주 출입구가 전면에 있어서 영동지방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안방과 정지방, 골방에 각각 출입문이 있어서 이 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헛간은 기능상 뒷쪽으로 따로 문이 나 있으며 부엌에는 부엌방과의 사이의 샛문과 뒷쪽에 주 출입문이 있다. 칸의 크기는 가운데 칸이 큰 점이 다른 지방과 특히 다르고 보 방향은 전면부분이 약간 작다.

이러한 안채(몸채)에는 사랑채가 딸리기 마련이며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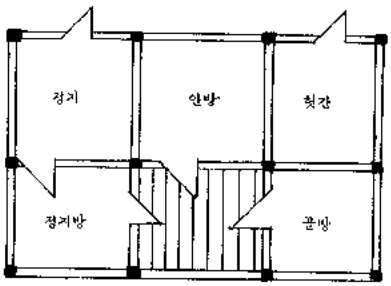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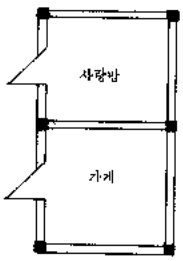

〈그림 9 : 정지방집〉

은 3칸이지만 산간지대에서는 2칸집도 있다. 헛간채는 보통 맞걸이 3량집이며 칸의 크기도 약간 작은 경우가 많다.

앞에서 설명한 집들을 이 지방에서는 3칸퇴집이라고 부르는데 영동이나 안동지방에서 양통집이 퇴화하여 이와 비슷한 모양을 이룬 것을(한일자〈一〉집 참조) 삼칸퇴집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하면 재미있다. 즉 양통집이 퇴화했으리라고 믿어지는 3칸퇴집과 홑집(외통집)이 발전했으리라고 믿어지는 3칸퇴집이 서로 그 연원이 다르면서도 평면의 구성은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원래 외통집은 양통집이 퇴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겠다.

이러한 평면들은 모두 오래된 집들에서만 볼 수 있고 산간지대에 산재한다. 이용하는 계층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며 살림방이 증가된 정도에 따라서 부의 축적에 정도차가 약간 있을 뿐이다.

ㄷ. 근세형집

최근에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지역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에 든 영동형집과 중간형집들이 모두 결합된 형태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 집의 한 예는 그림 10(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진리 1구 신철용씨댁 80. 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긴네모꼴 집이다. 구조는 불목조로 되어 있고 모임지붕에 기와를 얹었으며 1977년에 옛 집을 헐고 신축했다고 한다.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 칸의 가운데에 마루를 두고 왼쪽에 사랑방, 오른쪽에 건넌방을 배치한다. 뒷쪽 칸에는 왼쪽에 부엌이 놓이고 오른쪽에는 두 칸 크기의 안방이 배열된다. 최근에는 미서기문을 많이 이용하므로 마루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앞마당으로 연결되고 안방, 건넌방, 사랑방 등에도 출입할 수 있다. 사랑방과 건넌방에는 각각 전면으로 미서기문이 있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엌은 직접 마루로 문이 통할 수 있도록 사랑방보다 살이가 크게 설계되었고 주 출입구는 측벽에 나 있는데 모두 여닫이 문이다. 사방으로 부두막과 높이가 같은 토단을 돌려서 작업대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부엌 상부에는 다락이 시설되어서 안방에서 출입하도록 되었다.

측면 간살이의 크기는 앞뒤 모두 같고 전면의 경우 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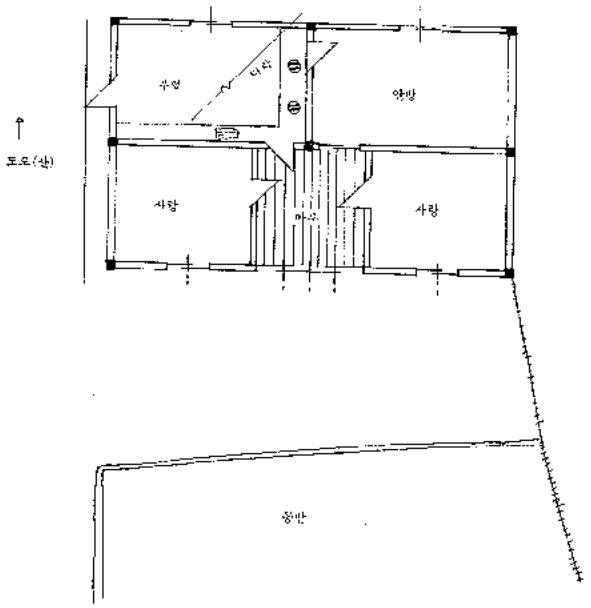

〈그림 10 : 중간형 근세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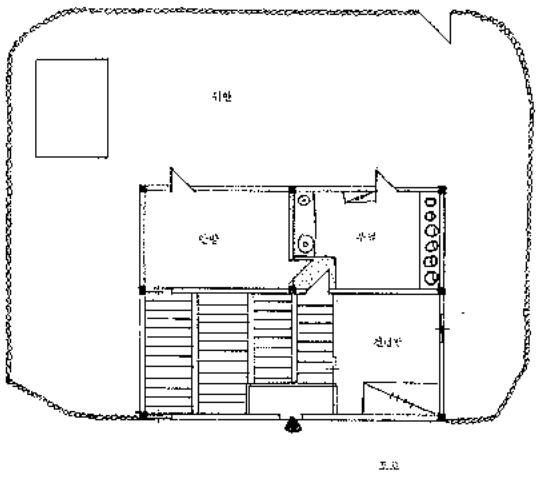

〈그림 11 : 중간형 근세형집〉

러 가운데 칸인 마루의 간살이를 적게해서 살림방들을 크게 이용한다. 이것은 전과 구분되는 최근의 신축 경향이다. 집에는 딸리는 결채(헛간채나 사랑채)가 없어 안채만 쓰여지고 뒷마당도 없이 앞마당만 시설되었다. 결채가 없는 것은 어촌과 도시화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뒷마당이 없는 점은 영동지방의 공간이용과는 다르며 최근의 현상이다. 이런 집은 가난한 계층에서 약간 부(富)를 축적했을 때 이용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널리 분포한다.

최근에는 공간을 크게 이용함으로 해서 이런 집의 평면구성에서 안방 앞의 사랑방을 헐어 버리고 이 공간을 마루공간으로 크게 쓰는 경우가 있다. 이 집은 그림 11(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포1리 박인수씨댁 77. 8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간살이로서 서해안에 있는 집이다. 이 점은 전국적으로 가난한 계층들이 최근에 지어지는 집에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도 드물다.

이 집의 마루는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연등천정이다. 외부와의 출입은 전면 가운데의 미닫이 문을 이용하고 마루 안쪽으로 신발을 벗는 토방 반 칸을 두는데 이것은 최근에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나, 건넌방은 마루로 출입할 수 있는 문만 있을 뿐 외부로 직접 출입하는 문은 없는게 또하나의 특징이다. 부뚜막 위에는 벽장이 시설되었고 토단은 부뚜막 반대쪽에만 만들어져서 항아리를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되었다.

구조는 3평주5량집이어서 영동지방의 3평주3량집과는 구분되고 지붕의 처리 역시 합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임으로 처리되는 것이 서쪽 지역의 특징이다. 전면은 직접 도로에 면해 있어서 앞마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앞의 뜨락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촌에 있어서의 일반적 현상이며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대신 집의 뒷쪽에 담장을 둘러쳐서 조그만 뒷뜰을 만들고 여기에 장독대와 물통 등이 놓여진다. 변소는 뒷쪽에 난 출입문을 이용하여 뒷뜰 바깥에 만들어서 이용한다.

이런 집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결채가 딸리기 마련이나 어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수장공간이 없고 부엌은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도시화되어 가는 근교 농촌에서도 볼 수 있다. 〈*〉

건설부 측량업 등록 제11호

대 한 측 량 설 계 공 사

1급건설기사 · 1급측량기사 · 지적기사

대표 김 충 일 서울 · 성동구 구의동 252－15 Tel. 446－6393

업무안내

측량
1. 현황 측량
2. 토목 측량
3. 지형 측량(고저 측량)
4. 종횡단 측량
5. 시공 측량
6. 지적 측량(상담)

측량·설계
1. 토목설계, 시공감리
2. 구조물설계
3. 토지형질변경(지목변경행위)허가수속
4. 일단의 택지조성사업허가 수속
5. 연립주택(아파트)건설입지측량, 설계

※ 측량, 토목설계 상담환영

都市設計의 基本性格

李 弼 遠

(건설부 기정)

Ⅰ. 緖論 : 都市設計에 대한 要請과 槪念上 混乱

近来 都市計劃 및 建築分野에서 都市設計(Urban design)에 대한 関心이 相当히 높아져 討論과 研究가 活発하여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制度的 研究까지 示図되고 있는 実情이다.

이렇게 都市設計가 要請되고 있는 背景을 잠시 살펴보면, ①우선 従来의 都市計劃 및 開発体制가 가진 限界—劃一的, 広域的, 平面的, 規制方式 및 計劃과 設計를 連結하는 中間段階 缺如—를 認識, ② 60~70年代 開発, 物量為主의 都市行政方向의 結果로 나타난 都市構造와 空間의 歪曲과 아울러 不良·低質化된 都市形態에 대한 批判과 反省에서 縁由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이와 아울러 70年代 后半부터의 半月等 新都市建設等과 一部 都市 및 建築界人士의 先駆的 研究와 自覚을 통한 基盤造成이 이루어져 왔는데다가, ④最近 先進国에서 同分野의 理論과 経験이 本格的으로 伝達되면서 어느 程度 実用化段階까지 진척되었다고 하겠다. ⑤한가지간과할수없는엄연한 事実은 우리의 各種 法令体系가 거의日本것을踏襲하다시피 하고 있고 日本은, 80年을 전후하여 都市設計에 대한 法的 制度化作業이 結実을 맺어 「地区計劃」으로 定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関係当局에서도 이에 대한 作業을 加速化하고 있는데도 影響을 받고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움직임이 不遠間 좋은 結実을 맺어 우리의 実情에 適合한 制度와 技法들이 創案되기를 期待하는 바 크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때늦은 感도 있으나 일단은 바람직한 方向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행스럽고 期待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중 염려스러운 것은 우선「都市設計」라는 手段이 都市를 살기 좋고, 意味있는 場所로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手段의 하나이지 都市問題를 治癒할 수 있는 万病通治薬이 아니라는 点에 대한 認識이 不足한 面과 또하나는「都市設計」의 本来의 槪念이 正確히, 充分히 理解되지 못한 채 相当히 断片的이거나, 一面만을 強調하여 主観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事実이다.

이러한 混乱의 根本理由는 外来文化에서 発生한 새로운 制度 또는 槪念을 導入,受容 할 때 흔히 犯하기 쉬운 잘못으로 '充分히 選択的으로, 批判的으로, 主体的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模倣이나 導入活用에 급급함'에서 由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都市設計」라는 外来的 制度가 그 一部 또는 全部가 地域間, 世帯間 隔差를보이면서 서로 融合되지 않고 混在되거나, 아니면 変質된 過去의 様式이 外来的 類型과 적당히 妥協하여 一時的으로 適応을 하게되는 過渡的 混合状態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結局에는 우리사회 및 文化에 있어서 適合性(relevance), 正体(identity)와 統合性(integration)에 대한 要求를 充足시키지 못하므로서 土着化하여 우리의 것으로 変容, 再創造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混乱과 試行錯誤를 불러 올 우려까지 있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都市設計라는 새로운 槪念을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선 이에 대한 槪念上의 混乱과 誤解를우선 바로하는 것이 첫걸음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現行의 価値規範및 慣行간의 一貫性과 体系性을 確立하는 文化적 統合性을 充足시키도록 하는 것이 制度·定着化의 다음 課題로 생각한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稿에서 都市設計(Urban design)에 관하여 現在 通用되고 있는 여러가지 見解를 整理·分類하고 各各이 지닌 限界와 問題点을 밝히고, 아울러 그 示唆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서 同 分野가 正確히 무엇이며, 또 基本性格이 무엇인가를 実際的(operational)인 面에 置重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提示되는 見解들은 国内外 関係雑誌와 書籍等 文献調査에서 나타난 것과 関係業務에 従事하는 実務者와의 対話를 通하여 나타난 것을 整理하여 分類한 것으로서 相互間 重複되거나 그 区分이 多少 애매한 点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本論 : 都市設計에 대한 諸見解와 内容分析

現在 通用되고 있는 都市設計라는 새로운 Design profession은 美国에서 1954年에 最初로 펜실베니아 大学에서 独立된 科単位로 創設되어 27年이 経過하여 그 方面에

相当한 理論的 硏究와 実際로 設計等의 実績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대한 定義에 대하여는 아직도 專門家 사이에서 合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바꾸어 말하면 1957年에 벌써 Olindo Grossi가 提起한 다음의 質問에 아직도 明快히 答辯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Urban design은 사람, 건물, 空間, 써어비스등에 대하여 人口稠密한 地域에서 人間環境의 体系를 세워 어떤 秩序를 부여함으로서 意味있고, 生命力있으며, 아름다운 経験을 할 수 있는 어떤 関係를 設定하는 生活의 예술이 아닙니까?"

最近에 와서는 Gonathan Barnett같은 사람은 빈정대기를 '都市設計는 免許없이 建築設計에 従事하는 行為' 라고 하고 있으며 Charles Brewer는 '都市設計는 建築이다' 그리고 David Wallace는 '都市設計는 假說과 検證을 反復하는 科学이다' 라고 말하는등 실로 多様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混乱은 Kevin Lynch와 같이 Urban Design대신 City Design이라는 用語를 쓰자는 提案과 Urban Design Programming이 더 適合한 用語라는 指摘까지 나오고 보면 極에 달한 느낌이다. 그중에서도 60年代 末을 전후하여 New York市에서 Urban Design을 実務担当한 Gonathan Barnett의 才気있는 表現과 같이 '建築物을 直接 設計하지 않고도 都市를 設計한다' (Design city without designing buildings), 核心을 찌른 定義는 없다고 보겠다.

이러한 多様한 見解들은 우리나라에서도 都市計劃中 物的計劃(physical planning)의 一部로 보거나, 建築(群) 또는 建築計劃으로 理解하려는 傾向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多種多様하게 通用되고 있는 見解들을 그 基本主張과 成長背景에 따라서 分類를 하여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系統을 세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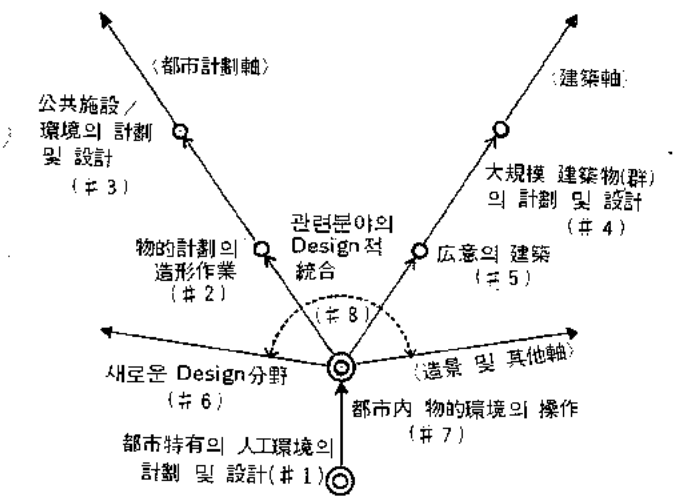

이러한 見解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說明을 함으로서 正確한 概念把握을 期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설계의 基本性格을 確実히 할 수 있는 몇가지 要素를 発見하고자 한다.

1. 見解#1 : 都市設計는 都市区域內에서 都市가 가지는 特有한 狀況에 適合하게 建築物等 人工環境을 計劃·設計하는 行為이다. (그림에서 #1)

이러한 見解는 建築家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都市設計에 대한 正義로서 이 観点에 의하면 어떤 建築物群이나 個別 建築物이 立地한 垈地 및 그 周囲가 都市내에서 서로 주고 받는 特有의 與件(Urban setting)이 있게 되며 이러한 것들을 分析하여 発見하고, 이에 機能的으로, 社会的으로, 文化的으로 또 美学的으로 適合하게 대처하는가에 都市設計의 焦点을 두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建築士紙 最近号에 보면 中東地域에 設計한 商街 및 駐車場 複合建物에 대한 設計概要에서 '본 project는urban design적 관점에 역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都市設計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果然 建築家가 자신이 設計하고 있는 建築物을 周囲환경과 잘 聯関을 시키려고 最善을 다하는 것만으로 都市全体로서의 形態와 空間의 質은 保障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否定的이다. 왜냐하면 우선 建築家는 자기가 의뢰받은 垈地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 보거나, 直接的인 影響力을 미친 方途와 재간이 없다는 사실과 또하나는 現代에 들어와서 建築家의 地位와 役割이 従来의 Master Builder에서부터 돈많은 건축주에 고용된 기술자며 利益의 代辯者로 低落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建築家가 지녀왔던 技芸가 이제는 都市計劃, 造景等으로 分化하여 나감으로서 無気力化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따라서 建築物이라는 部分의 集合이 都市라는 全体가 저절로 된다는 関係가 成立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個個의 建築物을 設計하는것 외에도 都市를 設計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都市設計의 対象地域을 「都市」로 限定시키는 경우, 実際로 郊外住宅団地, 新都市開発等 立地가 기존 都市区域이 아니더라도 都市로서의 機能, 構造, scale을 가지는 事業들을 除外시키게 된다. 또한 国土의 都市化추세에 의하여 都市와 農村의 区分이 모호하여 가는 실정이므로 設計対象의 立地로 都市設計를 定義하는것은 非実際的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 見解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点은 都市設計는 都市가 가지는 活動主体(人間), 特殊機能(人的, 物的交流와 消費)과 空間的 領域(주로 Built-up area로 人工的 環境)의 3大 構成要素가 形成하는 都市特有의 狀況에 우선 適合하게 하는 것을 目標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都市設計는 이러한 消極的인 適応(adapt)보다 変改(adjust)라는 積極的인 面이 強함은 다음에 說明하고자 한다.

2. 見解#2 : 都市設計는 都市計劃中 物的 計劃(ph-

ysical planning)중에서 都市空間의 造形과 視覚的 意味를 주로 다루는 技法이다.(그림에서 #2)

이러한 立場은 다음과 같이 都市設計를 說明하고 있는 존 크릭켄(John Kriken)을 引用해 보면 확실하다.

"都市設計는 都市計劃의 한 分科로서 주로 人間과 物的環境간의 機能的, 視覚的 關係를 取扱対象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手段과 方法에 대하여도 아울러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都市設計는 都市計劃分野가 다루고 있는 住居問題, 交通問題, 緑地 및 空地問題, 公共施設의 設置問題等과 直接 關聯을 맺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努力하게 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定義로 미루어 볼때 이 見解의 바탕은 종래의 「都市計劃」分野의 領域을 拡張·補強시키고자 하는 立場이라 하겠다. 近来 都市計劃分野의 趨勢가 計劃이 追求하고 있는 目標를 최종적으로 三次元的 物的인 形態로表現하는 從来의 Master plan的 立場에서 어떤 目標를 設定하고 이의 達成을 위한 政策과 行動의 樹立과 執行에 그 觀心이 옮아감에 따라, 都市計劃이 最終的으로 나타나는 都市形態와 空間의 造形的 側面과 視覚的 意味에 대한 考慮가 소홀하게 되고 있는 점에 대한 反省에서 要請되고있는 見解라고 보겠다. 바꾸어 말하면 종래의 都市計劃方式인 計劃家가 土地利用計劃(Land use plan)이라는 平面的이고 包括的이고 劃一的인 바탕만을 提示함으로서 建築家나 土木設計家가 特定한 建物이나 構造物을 設計함에 있어 都市計劃에서 얻어낼 수 있는 資料나 지켜야할 指針은 대부분이 道路線과 建築線과의 關係라든지, 容積率, 建蔽率등과 같이 극히 抽象的이며 平面的인 程度에 不過하게 되는 것이 現行의 都市計劃 및 開発制度의 性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都市計劃과 建築·土木·造景等 細部設計 사이에는 空隙이 생기게 되어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하여는 計劃家(planner)중에서 design에 關한 素養이나 経驗이 있는 사람이 나와 都市計劃中 物的 計劃을 三次元的으로 表現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近代的 都市計劃의 必要性과 役割을 認定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都市設計의 前提가 되는 都市機能과 構造의 分析과 設定등 計劃에 관한 일체의 事項은 計劃家에 맡기고 오로지同計劃을 視覚的으로 아름답게 処理하는 것만을 專担하므로서 計劃家가 設定한 틀위에서 装飾家的 役割을 하는 技術이나 技法으로 都市設計의 領域을 限定시키는 点이다. 이렇게 都市設計를 景観為主로 본것이 都市美化運動 (City beautiful movement)의 特徵이었던 것이다.

다만 実際에 있어서 都市設計의 執行을 保障하기 위하여 都市基本計劃(City comprehensive plan)에 包含시키거나 그의 一部로서 作成하여 施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物的計劃의 造形的 側面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見解에서 우리에게 示唆하여 주는 것은 都市設計는 物的計劃이든 非物的 計劃이든 都市計劃-都市라는 領域에서 土地, 人口, 活動의 三要素를 効率的으로 配分-의 바탕에서 출발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都市計劃이 가지는 公共作業의 性格(公益을 위한 民間開発活動의 規制와 指導)을 都市設計도 부여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点에서 都市設計는 주로 私的으로 営為되는 建築과 区分되기도 한다.

3. 見解#3 : 都市設計는 都市公共施設이나 公共環境(public environment)에 대한 計劃·設計行為이다. (그림에서 #3)

都市設計를 위와 같이 理解하는 사람들은 urban design보다는 civic design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都市의 街路網, 公共緑地와道路等 都市下部構造物(Infra-structure)로 構成되는 都市의 骨格을 어떻게 緊密하고, 統合되고, 調和되면서 또한 아름답게 設計하는가에 関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国의 著名한 建築家겸 都市計劃家인 데이빈 크레인(David Crane)은 「千사람이 設計하는 都市」라는 提案에서 현재 混乱스러운 都市景観에 視覚的 秩序를 부여하는 方法으로서 都市造形에 必須的인 要素인 主要 公共建物, 空地와 緑地, 交通과 動線, 供給処理施設등의 物的 存在를 미리 設計하고 建設하여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외의 余白을 民間部門이 設計·開発하여 채워나가는 手法을 設明하였는데 이 概念이 바로 公共施設이나 環境의 設計가 바로 都市設計라고 보는 立場을 代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都市라는 環境에서 公共環境에 대한 設計의 質(quality of design)이 都市形態와 空間造形에 決定的要素로서 民間部門의 개발에 先導的 役割과 指針을 提言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観点은 자칫하면 環境決定論의 立場에 빠져 都市의 物的 要素인 施設, 装置, 場이 市民의 行態를 나아가 生活의 質을 左右한다고 보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의 主体인 市民과 실제의 知覚과의 거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가능성이 큰것이며, 아울러 都市를 生長·変化하는 進化論的 立場에서 볼 때 都市構成要素인 主体, 機能, 空間을 어떻게 動的으로 結合시킬 수 있는 形態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疑問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点은 都市設計가 建築物, 構造物등을 個別的으로 設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떤 틀(frame-work)이나 構造(structure)를 設定하는 것이라면 어떤 公共領域—그것이 public space이건 semi public space이건—에 대하여 取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 見解#4 : 都市設計는 大規模 建築物 또는 建築物

群에 대한 計劃 및 設計行為에 不過하다. (그림에서 # 4)

캔딜리스(Georges Candilis)는 일찌기 「도시설계는큰 규모의 건물설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이 都市設計를 都市再開発이나 住居団地開発에서 나타나는 超大型建築物(mega structure)이나 群을 이루는 建築物에 대한 計劃이나 群造形問題를 다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建築家가 그 以上의 建築物 또는 超大型建築物을 設計하게 될 때에는 그가 하는 行為自体가 바로 「都市設計」라고 보는 것이며 그때 建築家는 바로 「都市設計家」의 役割을 遂行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觀点을 잘 살펴보면 「建築」界가 가지는 오만과 편견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첫째가 建築에있어 設計対象이 크건 적건 간에 또는 簡単하건 複雜하건 간에 設計方法이나 過程 또는 使用技法은 큰 差異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것은 비트루비우스 (Vitruvius) 가 建築家를 万能人 (universal) 으로 본 古典的 建築家観에다가 近代에 들어서 바우하우스의 理論家들이 主唱한 바와 같이 디자인 原理는 작게는 스푼하나에서 크게는 都市全体의 設計까지 同一하게 適用될 수 있다고 보고 「부엌을 설계하는 方法으로 우리는 都市設計를 배우며, 都市設計로 住宅設計를,극장설계로 환경계획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것처럼 建築의 正統·保守意識이다.

둘째는 建築家는 어떤 프로젝트를 設計할 때는 計劃부터 執行까지의 全般的인 過程을 直接 調整하고 統制하여야 한다는 master builder의 立場을 固守하는 態度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見解가 가지는 問題点은 무엇인가? 우선 스케일이 다르다 하는 것이 그자체는 量的인 面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 이외에 質的인 面에서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며 物理的인 面에서 다른것 이외에도 化学的인 面에서도 전혀 相異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차이의 実体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道具(tool)와 接近方法(approach)을 필요로 하는 것임은 顕微鏡과 望遠鏡의 用途의 차이를 비추어 보면 確実히 알 수 있다. 또한 通常都市開発에 있어 大規模 施設物의 建設이라고 하는 것은 그 自体로서 完成되어 끝나는 面보다는 隣接하고 있는 주위에 대하여 現在 및 将来에 대한 어떤 틀을 提供하게 되는 것임을 비추어 볼 때 都市에 있어서 어떤 施設을 그 하나만의 独立된 単位로 設計할 수 있다는 생각은 system的 接近方法에서 볼 때 온당치 못하다.

또한 見解 1을 批判할 때에는 이미 説明한 바와 같이 建築物이 비록 相当한 規模나 数로서 하나의 単位를 이루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個体로서의 主張과 利益을 主張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 現代의 자본주의적 状況이며 垈地라는 領域에서 最大限의 自由를 追求하게되는 属性이있는 것이 建築家와 建築主가 追求하는 共同目標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面에서 都市라는 거대한 有機体(비록 실제적인 面에서 地区나 地域을 하나의 空間単位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음)로서 보고 이의 秩序와 調和를 追求하게 됨으로서 全体로서의 立場과 意味를 다루게 되는 都市設計의 基本属性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立場에서 都市設計의 正確한 理解를 위하여 提示하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그것은 都市設計가 建築物群을 주로 取扱하게 되므로 建築物(群) 및 其他 構造物(群)을 相互간 調和되게 垈地(site)에 配置하는 芸術인 団地計劃(site planning)이야말로 都市設計分野에 基本的이며 必須的으로 使用되는 技法이라는 事実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말대로 団地計劃이라는 芸術은 「立地를 分析하고, 場과 行動을 組織하며, 交通과 動線系統, 審美的 形態를 다루며 規制와 統制와 아울러 垈地의 管理維持에 관한 問題를 다루는 綜合的인 分野」라고 説明하면서 都市計劃家, 建築家, 造景家, 그리고 土木技術者에게 모두 필요한 分野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都市設計에 있어서도 最終配置予想図라고 할 수 있는 Illusbative site plan이 最終結果物의 하나로서 作成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에 덧붙여서 또하나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一線 実務者간에는 所謂「建築計劃」을 都市 設計와 混同하고 있지 않나 하는 事実이다. 現行 法令上 都市再開発事業計劃을 樹立할 경우 作成하게 되어 있는「建築物의 位置, 容積率, 建築面積, 높이, 配列 및 用途……」等에 관한 計劃과 또하나는 特定街区整備区域内에서 「建築物의 높이·規模, 모양 및 壁面의 位置등을 表示한 建築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바로 都市設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都市設計의 結果로 同計劃을 作成하여야하는 필요조건을 말할지는 몰라도 同計劃이 작성 되었다고하여 도시 設計가 되었다고 하는 充分条件이 만족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即 同 建築計劃의 内容이 都市設計에서 作成하는 最終配置予想図와 表示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包含하고있다고 보는데서 混乱이 基因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兩者의 基本性格은 서로 判異한 것으로서 都市設計는 어떤 計劃 또는 空間単位를 対象으로 그것이 경우에 따라 地区, 地域規模이거나 혹은 都市全体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立地가 都市全体와 가지게 되는 特有의 状況 또는 脈落(Context)을 形成하고 있거나 앞으로하게 되어 있는 몇개의 物的 基本体系(system)인

① 成長発展体系(Growth pattern management)

② 土地利用体系(Land use)

③ 交通 및 動線体系(Trafic movement)

④ 緑地 및 空地体系(Opan space)

⑤ 公共施設 및 環境体系(Public facilities and environment)

⑥ 構造物의 形体 또는 量塊体系(massing)等에관한 外的으로는 틀(frame work)과 内的으로는 構造(structure)를 設定하거나 関係를 賦與하는 公共의 行為로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反面에 「建築計劃」의 性格은 그 内容과 樹

立過程에 있어 道路, 公園, 広場等 公共施設에 대한 位置, 規模에 대한 事項과 都市計劃과의 関係라는 事項을 包含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前述한 바 있는物的 基本体系중에서 ⑤번째인 建築物等 構造物의 形体에 대한 事項에 置重하고 있는 実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関係設定이라는 側面보다는 事業計劃의 立体的 表現의 性格으로 理解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都市設計라는 手段-즉從来의 劃一的이며 平面的인 地域地区制(Zoning)의 限界를 克服키 위하여 나온 것으로서 対象地域 또는 地区마다 土地利用, 交通等에 관한 基本틀을 設定하는 設計를 하고 이에 法的 拘束力을 붙여 施行하는 裝置 — 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인 것이다. 다만 現行 法令에 規程되고 있는 類似制度中에서는 住宅建設促進法과 建築法施行令에 의하여 作成하게 되어 있는「아파트地区開発基本計劃」의 性格이 都市計劃上 土地利用体系를 変更할 수 없다는 면을 除外하면 이미 説明한 都市設計의 趣旨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5. 見解＃5 : 都市設計는 広意의 建築일 뿐이다(그림에서 ＃5)

이러한 생각은 일찌기 1965年에 都市設計에 대한 최초의 教科書라고 할 수 있는 著書인「都市設計 : 都市와 邑落의 建築(Urban Design ;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의 제목에서 잘 表現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建築家들로서「建築」을 環境의 計劃 및 設計分野에 있어「母芸術」로 보고, 앞으로도 가능한한 建築의 領域을 固守하거나 또는 더욱 넓혀서 從来의 主導権을 Design Profession에서 계속 확보하고 싶어하는 希望과 欲求를 가지고 있다는 事実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建築家들이 具備하지 않으면 안되며, 앞으로 建築教育에서 必須的으로 要清되는 것은 從前과 다른 設計方法論 — 本質的으로 聯合学問的(Inter disciplinary)한 것이거나 또는 都市計劃分野나 造景分野等 関聯專門分野에서 使用하고 있는 計量的이며 分析的인 技法들 — 이라고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美国에서 20여년전 建築教育의 将来에 대하여 심각히 論議할 때 提起된 바 있는 "今後의 建築教育의 課題는 建築家들이 어떻게 都市에 대한 設計를 할 수 있도록 訓練시킬 수 있는가?"질문에서 이러한 希望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대체 実現可能한 것인가? 하는 매우 実際的인 질문이 제기되는데, 비록 都市設計가 三次元的인 問題를 주로 다루게 되므로 空間에 대한 感覚과 操作에 대한 素養이 不可避하게 要請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現代와 같이 專門化되어가고, 分業化되어가는 社会의 傾向에 비추어 볼 때 部分으로서의 自由와 個性追求라는 建築의 特性과 全体로서의 秩序와 調和라는 都市가 各各 追求하는 相互対立的인 目標를 同時에 滿足시키는데 필요한 諸般의 手段·地位를 오늘의 건축가가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多様한 技術과 知識과 経験을 同一人이 兼備하여 실제로 発揮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從来의 母芸術的인 建築分野가 都市計劃, 造景等이 19세기 初를 전후하여 学問的으로 分化하여 独立함으로서 建築이 가지고 있던 綜合的 機能이 喪失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앞서 말한 都市計劃, 造景, 基他 土木等 関聯分野와 建築分野를 함께 Design的으로 統合할 수 있는 分野가 要請되어 오고 있는 時代的 傾向 둘째는 建築家와 建築主 그리고 入住者와의 関係가 현대에 와서는 찰스·젱크스(Charles Jenck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체제가 独点資本主義化함으로서 建築家는 고용된 기술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러한 建築家는 入住者(user)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채 設計를 하고 있다. 세째는 建築理論의 関心分野가 前述한 바와 같은 外向的이며 包括的인 方面의 研究를 指向하는 것이 아니라 最近에 와서는 内向的이며 微視化하여 認識論(Perception), 味論(Semiotics) 그리고 行態論(Behavioralizm)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하는 事実이다.

이러한 事実을 미루어 볼 때 建築이 都市設計의 領域까지 包含할 수 있다는 主張은 時代錯誤的이며 실제로도 不可能한 虚勢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절실히 要求되는 것은 人間과 그가 만든 모든 人工物의 関係를 究明할 수 있는 人工科学(The Science of the Artificial) — 허버트 싸이몬(Herbert Simon)이 主唱한 分野로서 自然科学(Natural Science)과 対照됨 — 일 것이다.

다만 이렇게 都市環境의 設計를 統合할 수 있는 專門家나 專門分野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立場은 앞으로 都市設計成立의 基本性格을 理解하는데 큰 참고가 된다.

6. 見解＃6 : 都市設計는 建築分野나 都市計劃分野하고도 전혀 다른 새로운 Design 分野이다. (그림에서＃6)

이러한 主張은 이제까지의 5개의 見解가 어떻게든 既存의 都市計劃分野나 建築分野의 領域과 関聯시켜 보려는 것이었음에 비하면 対照的인 것이나 이에 대하여 즉각 根本的인 疑問이 提起된다. 그러면 무엇이 都市設計인가? 그리고 누가 都市設計家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지금 명쾌히 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모든 近代学問이 成立되고 発展되어 온 過程을 살펴보면 独自的 領域과 方法論을 開発하는 데에는 많은 時間이 必要한 것임이 認定되므로 언젠가는 都市設計分野자체로 学問的인 独立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現時点에서는 都市設計가 要請된 것은 從来에 建築이 担当 하였던 人工環境의 綜合的 計劃 및 設計機能이 造景, 都市計劃등으로 細分化됨에 따라 効率的이며 相互有機的으로 同機能을 遂行할 수 없게 되는 実情에 부딪침에 따라 이들 Desi-

gn 関聯分野를 統合하여야 할 必要에서 나온 것임을 미루어 볼 때 都市設計가 새로운 分野라고 할 수는 우선은 없다고 보겠다. 오히려 建築·都市計劃·造景과 아울러 土木分野의 一部까지를 統合하는 聯関学問的(Inter-disciplinary) 性格으로 把握하여야 옳겠다.

一般的으로 말하여 都市設計家는 政策決定過程과는 無関한 立場에서 最終的 完成品(end state final product)로서 都市設計案을 作成·提示하는 것이 아니라 時間과 空間의 흐름에 따라 変化하는 価値와 機能의 바탕에서 都市의 造形을 左右할 만한 重要決定을 어떻게 하여야하는가에 대한 指針이나 過程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면 그는 행하는 業務와 지니고 있는 技術에 따라서 建築家일 수도, 都市計劃家일 수도, 造景家일 수도 또한 土木技術者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都市의 造形이란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되는 意思決定의 過程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만큼 이러한 過程에 日常的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都市設計家라고 부를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都市設計家는 어떤 構想(Idea)에 대하여 創造的인 物的形態(physical form)을 賦與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야 하며 이점에서 都市形成過定에 参與하는 경제학자, 측량사, 설비기술자 또는 부동산개발업자등 餘他의 専門家와 区分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대한 우려의 또 하나는 物的 環境의 設計라는 Design profession分野가 기왕에 限定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한층 더 細分化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微弱함과 零細性을 면치 못하는 同 分野의 分裂과 弱化를 招来하게 된다는 事実로서 이로 말미암아 環境에 대한 設計의 추세가 total environment를 目標로 하고 있음에 反하여 여러갈래의 断片的이고 分化된 努力은 환경의 질을 低下시키는 逆機能을 招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7. 見解#7 : 都市設計는 物的 環境의 操作을 通해 環境의 質을 向上하는 公共의 作業이다. (黄 鏞周 博士 見解.그림에서 #7)

이제까지 나온 여러가지 見解중에서 가장 包括的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 内容속에 都市設計의 対象, 領域, 目標와 主体의 4大要素가 明確히 説明되고 있다. 이 見解에서 우선 注目되는 점은 都市設計의 役割에 대한 説明으로서 「都市의 物的 計劃(physical planning)과 建築· 土木等 細部設計사이에 있는 構造的 空隙을 메워주는 役割로서 両者를 연결하는 必須不可缺한 段階라고 提示하고있다.

또 하나는 都市設計의 目標를 従来에는 美的 機能的 形態 또는 景観等 造形的 側面을 주로 強調하여 왔으나 次元을 달리하여 「物的 環境의 操作을 통한 生活의 質向上」이라는 包括的인 目標를 提示한 점과, 이와 아울러 都市設計行為의 基本的 性格을 公益을 위한 民間活動의 規制와 指導를 目標로 하는 公共의 作業으로 規定하고 있는점은 正鵠을 찌르고 있다고 보겠다.

다만 이와 같이 包括的인 見解에서 한가지 소홀히 하는 점은 「都市의 物的 環境의 操作」이라는 都市設計의 対象과 行為의 具体的 内容에 대한 説明이 不充分하다는 것이다. 「土地와 施設이라는 2大 物的 要素를 가지고 立体的으로 都市空間의 質的·形態的 性格을 賦與하는 作業으로서 주로 外部空間의 性格을 規定하는 過程」이라는 説明만으로는 都市設計의 要素와 範囲가 확실치 못하다. 따라서 都市空間의 性格을 賦與하는 基本要素와 方法을 前述한바 있는 design structure, 関係, 体系(system) 또는 context等과 같이 具体的으로 提示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의 애매한 점을 보이고 있는 점은 都市設計가 중간에서 都市計劃(物的計劃)과 연결시켜 주는 「細部設計」의 具体的 分野속에는 建築·土木 외에도 造景도 포함됨을 확실히 하여 都市設計가 成立하게 된 時代的 背景에는 都市의 物的 環境에 대한 design的 統合을 期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都市計劃·土木·建築·造景·期他 関聯分野등으로 関聯된 聯関学問的(Interdisciplinary) 性格이 充分히 強調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에도 不拘하고 이 見解가 提示하고 있는 2가지 劃期的인 事実은 첫째, 環境의 計劃·設計행위는 근본적으로 連続的이고 総体的인 一連의 過程으로 보고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連続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指摘과 둘째는, 都市設計를 定義할 때는 都市의 物的環境을 計劃하고 設計하는 一連의 行為를 놓고 이 '스펙트럼' 처럼 연속적인 作業過程中에서 어느 特定한 段階를 指定하여야 한다는 接近方法을 提示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動的인 意味에서 볼 때, 物的環境의 計劃이나 設計行為의 結果가 施工用 図書로 表示되는 경우를 各各 建築·造景·Engineering 等 細部設計의 領域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단지 外的인 틀이나 内的인 構造등 概念的 内容을 表示하는 것에 한정되면 이를 바로 都市設計 영역이라고 区分하여 말할 수 있다.

8. 見解#8 : 都市設計는 都市의 物的 環境에 관한 design的 統合을 目的으로 한 綜合的 分野로서 都市空間이라는 多数의 主体와 存在의 場에서 그 들이 共存할 수 있는 相互関係를 design 하는 것이다. (康 炳基 教授見解, 그림에서 #8)

이 見解는 都市設計에 대한 이제까지의 見解가 대부분 抽象的인 面에 흐른 점과는 달리 具体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見解에 따르면 「都市設計가 하여야 할 일은 개개건축 相互関係와참가의 system이나 design structure를 주는 일」로 보고 있으며 이는 同 分野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 点이야말로 建築造景等과 都市計劃의 両分野

가 들어내고 있는 空隙을 메워주는 作業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最終狀態(end state)에 대한 設計를 하는 것이 아니고 代身에 主体와 存在의 関係를 設定하는데 必要한 要素를 -過程, 体系(system)와 構造(Design structure)에 대하여 設計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要素중 体系에 대하여는 金基浩 教授가 구체적으로 説明한 바와 같이 「基本設計単位(Design unit)」내에서 都市設計概念(concept)를 構成하고 있는 여러 요소중에서 「公共設計 領域」인 5가지 基本体系인 土地利用, 차량통행, 보행자통행, 「오픈 스페이스」와 「매싱(massing)」을 設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公共設計領域을 構成하는 것이 이러한 5가지에 限定될 수는 없으며 都市는 잠시도 변화의 과정을 멈추지 않는 作用과 反作用이 存在하는 動的 이며 生命力있는 存在로 보아야 하므로 成長発展의 方向과 패턴에 대한 体系가 前提되어야 하며 見解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都市公共施設 및 供給処理施設(utilities)에 관한 体系도 역시 都市設計에서 必須的으로 取扱하여야 할 것임은 결론부분에서 다시 説明하고자 한다.

아울러 都市設計에 대하여 그 成立의 理論的 背景을 正確히 提示하며 都市設計家의 実効的 位置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論文, 「都市設計의 定義와 範疇에 関한 小考」에서 내린 都市設計에 대한 見解中 評倫하여야 할 점은 「関係」라는 文化人類学的인 語彙를 빌어 都市設計의 対象을 提示하여 次元을 높이고 있는 점과 아울러 都市設計와 他関聯分野와의 構造를 이론적으로 確実히 하고 있는 점이다.

다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関係」「過程」, 「Design structure」란 말을 보다 더 実際的이며 具体的으로 提示하지 못한 점과 都市設計의 特性을 design的 統合으로説明하고는 있으면서 関聯分野와의 構造에 있어서 建築·造景 및 都市計劃分野 이외에 土木 및 都市工学分野와의 聯関性을 疏忽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Ⅲ. 結論 : 都市設計의 基本性格 10가지

이제까지 「都市設計」에 대하여 현재 国内外에서 通用되고 있는 —黙示的이든 明示的이든— 見解 8가지를 추려 그 内容, 基本立場, 問題点과 아울러 示唆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論議를 통하여 밝혀진 都市設計의 基本性格을 綜合·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都市設計의 基本性格을 파악할 때에는 都市의 物的 環境을 計劃하고 設計하는 一連의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행위로서의 作業過程에서 어느 特定한 段階를 지정하여 부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静的인 概念이 아닌 動的의 概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面에서 都市設計의 役割은 巨視的 '計劃'과 微視的 '設計' 사이를 이어주는 連結装置이며, 必須不可缺한 段階이다.

둘째, 都市設計行為의 또다른 基本性格은 도시설계가 都市計劃의 実践을 위한 三次元的인 解析이라는 点과 都市設計의 結果는 民間部門의 開発行為를 制約하게 되므로 公権力의 行使에 의한, 그리고 市民의 参與가 불가피한 公共의 作業이다.

세째, 都市設計의 業務範囲는 設計対象의 規模, 스케일 또는 複雑性이나 施設의 種類(예 公共 民間)에 左右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公共環境을 構成하는 諸施設 및 設備가 重要한 設計対象임은 틀림없다

네째, 都市設計分野는 環境의 計劃 및 設計를 既存의 여러 design分野와 다른 새로운 分野라기 보다는 都市計劃(특히 物的計劃)과 細部設計라고 부를 수 있는 建築, 造景, 土木, 都市工学등이 관련되는 聯関学問이다. 〈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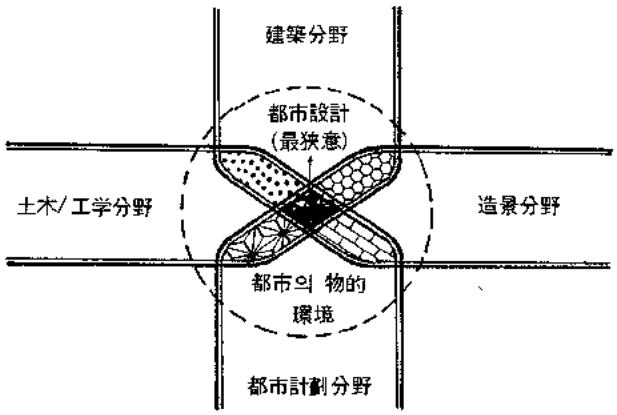

다만 비교적 大規模 団地内 그 以上의 建築物等 構造物群의 配置를 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団地計劃」(Site planning)이 基本手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都市設計에 의한 最終結果物은 形態(form)의 三次元的 計劃案이라는 End-state porduct이라기 보다는 主体와 物的 存在간의 相互関係를 設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関係를 형성하게 되는 2大要素인 外的인 틀(Frame-work)과 内的인 構造(Structure)를 設計하게 되는 것이며 그외에 必要한 体系, 過程, 原則, 指針과 基準을 提示하게 된다.

表現方式은 図表, 系統図, 地図, 模型등을 주로 사용한다.

여섯째, 都市設計에서 設定하는 関係나 틀이라함은 어떤 設計単位(Design unit) -地区, 地域 또는 都市全体가 가진 特有의 都市的 狀況(Urban setting)을 形成하는 要素로서 그 基本的인 것들은 ① 成長発展, ② 土地利用 —立体的인 것 포함, ③ 交通 및 動線, ④ 空地 및 緑地, ⑤ 構造物의 量塊, ⑥ 公共施設 및 供給処理系統, ⑦ 開発의 戦略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原則, 体系, 基準 및 過程을 表現하는 것이다.

일곱째, 都市設計를 通하여 設定된 틀과 構造는 建築·造景·土木等 細部実施設計作業에 投影되어야 하며 또한 環流되어야 한다. 즉 都市計劃의 三次元的 解析이며 細部設計에 따른 基本概念과 体系設定이 都市設計의 一次的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틀 구조자체는 蓋然性있는 提示(proposal)일 뿐이지 이대로 執行되어야 하는 것으로 強要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状況変化에 対処하고, 創造性을 살리기 위한 対応機構가 確立되어야한다.

여덟째, 都市設計는 반드시 모든 지역에 樹立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現行의 関係地域, 地区制(zoning)로서 不適当하거나 不充分한 경우이거나 相互補完的으로 使用될 수 있는 手段이다. 다만 都市設計의 樹立을 前提로 하는 開発規制로는 P.U.D, Design district, Special zoning distict, 地区群細計劃(Bebaungs plan) 等이 있다.

아홉째, 都市設計라는 分野는 本質的으로 그 性格이 建築·造景等 関聯 design分野의 統合이라는 面과 都市計劃과 細部設計사이를 이어주는 橋梁的 役割을 하는「中間的 領域」이라는 面때문에 都市設計家라는 새로운 專門家만이 都市設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都市計劃家가 都市計劃을 수립한 후 이를 三次元的으로 解析·提示하여 주기위하여 都市設計를 作成하거나 (Top-Down方式 또는 巨視에서 微視的으로 接近), 이와는 반대로 建築家등 細部設計 전문가가 Bottom-up方式 또는 微視에서 巨視로 接近하는 方式으로 細部設計의 前提가 되는 틀 구조를 提案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実際的이라고 할수 있다.

열번째, 都市設計分野가 취하고 있는 環境(주로 人工環境)에 대한 基本立場은 決定論的이 아니고 確率論的 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都市設計는 最終状態(End-state)를 提示하는 것이 아니고 主体와 物的 存在간의 環境 안에서 相互関係를 設定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主体인 市民의 参與装置가 都市設計의 樹立 및 執行過程에 確立되어야 한다. 〈*〉

〈参考文献〉

1. Richard Batholomen, "Case studies in Urban desig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0.
2. Jonathan Barnett, "Urban Design as Public policy", Architectural Record, NY, 1974.
3. Paul Spreiregen, "Urban Design ;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 Mcgraw-hill Co, NY, 1965.
4. I.C.M.A,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Washington D.C. 1979.
5. Anthony Catanes,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aw-hill co, NY, 1979.
6. 黄鏞周, "都市設計에 관한 技法", 都市問題 1980. 5월호.
7. 康炳基, "都市設計의 定義와 範疇에 관한 小考" 都市問題 1980. 2월호.
8. 康炳基外, "都市論", 法文社, 1979.
9. 林梓燮, "社会変動과 文化変動", 新東亜 200号特集, 新東亜 問題論文選, 新東亜 1981. 4월호.
10. 黄鏞周, "都市計劃論", 未来産業社, 1978.
11. 許 範, "基本政策의 形成과 運用 中央公務員教育院教材, 1981.
12. 建築士紙, 1981. 8월호.
13. 拙 稿, "都市美観管理方案研究 — 都市設計를 中心으로—" 建設部 1981.
14. 金基浩, "都市設計와 地区計劃", 都市開発과 地区計劃制度의 導入을 위한 세미나 主題発表論文集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建築·環境·選書＊＊

◎ 全國有名書店에서 販賣中!

① 近代建築은 왜 失敗하였는가
Form Follows Fiasco
尹一柱 譯 A5·236面 定價 4,000원
근대건축의 오류를 날카로운 혜안으로 비평한 이 책은, 건축인에게 깊은 충격을 줄 것이다.

② 建築의 第三世代
Third Generation
崔武革 譯 A5·264面 定價 5,000원
양 세계대전 사이에 태어난 제3의 건축가를 선택, 개인의 사상과 계획안 및 건축을 소개하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에 관해서 스스로의 해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轉換期의 建築
Architecture in Transition
趙昌翰 譯 A5·216面 定價 4,000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계획가의 한 사람인 독시아디스는 현대의 건축과 건축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인간 정주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및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建築心理
Psychology for Architects
許東國 譯 A5·208面 定價 4,000원
이 책은 조명·음향·공간시각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각도의 건축환경 건축심리학의 강의용 교재로 적합하다.

⑤ 建築宣言文集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 Century Architecture
李賢浩 譯 A5·244面 定價 5,000원
근대건축의 이론과 배경으로 선언문과 강령을 집록한 귀중한 자료로서, 건축인의 필독서.

⑥ 建築의 外部空間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金晶東 譯 A4·188面 定價 4,000원
건축의 공간설계를 외적측면에서 고찰한 이 책은, 건축의 내외의 질서를 세계적으로 실례하며 건축가에게 창작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⑦ 黃金分割
Golden Section
俞吉濬 譯 A5·256面 定價 5,000원
황금비의 여러 이론을 실례와 그 분석으로 풍부한 독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가·공업디자이너·화가 등 모든 예술가들에게 형태조화의 기본 원리로서 여러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⑧ 身體·知覺 그리고 建築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李好瑱 譯 A5·200面 定價 4,000원
건축적 공간이 신체·知覺에 미치는 감정과 인상을 기초적으로 다룬 새로운 심리학적 건축서.

⑨·⑩卷은 2月中出刊豫定!

創造出版 技文堂
서울特別市 鍾路區 販賣洞 154
TEL 764-4154 764-2449
대체구좌 123591

우리나라 都市設計의 現況

崔 璨 煥

(서울市立大 敎授)

1. 序

우리나라에서는 都市設計에 대한 制度的인 뒷받침은 물론 合理的이며 効率的 基準이나 準據도 없었을 뿐 아니라 近年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을 施行한 例도 별로 없어서 비교적 새로운 槪念으로 생각하여 왔다. 都市란 都市基本計劃에 의해 전체적인 計劃의 틀을 만들고 부분적인 施行은 都市計劃施設을 設置하고 用途地域地區制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 密度, 建築物높이, 建築線의 指定등의 規制를 통해서 個別筆地 안에서 建築物을 適法하고 合理的으로 짓고 이러한 施設物의 集合에 의해서 都市가 形成, 發展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細部的인 內容은 매우 統制하기 어려운 것으로만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비록 筆地單位에서는 土地利用이나 建物計劃등이 適法하고 合理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集合된 것이 無秩序하고 計劃性이 없다고 하면 問題가 된다. 例를 들어 우리나라 都市地域을 멀리서 眺望해 보면 그 景觀이 無秩序하게 보이며 都市機能이나 環境이 整備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程度여서 어떤 方法으로든지 이를 改善할 必要가 있다. 물론 個別建物이 旣存 法規에 適法하게 이루어졌고 建物別로는 最上의 條件을 維持하도록 하였다고 반드시 그 總合이 좋다고만 볼 수 없다면 現行 法制가 未備되었고 이를 위한 合理的 規制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이는 自律的인 個別行爲가 全体의 利益에 直結되고 私益의 極大化가 公益의 極大化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公益追求를 위한 私益의 部分的 制約은 不可避하다.

建築設計라는 것이 工學的인 技術을 바탕으로 하고 社會, 經濟的인 여러條件을 받아들이면서 造形이란 藝術性을 지닌 創作을 해야 하므로 客觀的이며 普編性이 있는 반면에 建築家의 意志를 넣는 主觀的인 內容도 認定해야 하므로 兩面性이 있다. 따라서 絶對的인 價値基準보다 條件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相對的인 것도 많으므로 一律的으로 規制하기가 어렵거니와 基準自体도 애매모호할 경우가 많으며 자칫하다가는 劃一化될 가능성도 있다. 建築規制를 함에 있어 細部的인 事項까지도 具体的으로 表示하게 되면 設計의 多樣性이나 適用의 融通性이 없어지며 創作活動이 制限되거나 위축된다고 이야기 할 것이며 建築計劃의 재량권을 많이 주면 規制의 實効를 얻기가 어렵고 자칫 이를 惡用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立場에서 規制를 해야하며 또 規制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設計해야 하는지 創作에 임하는 자세가 重要하다. 建築規制가 지나치게 强化되어 設計의 自由度를 떨어지게 하거나 선의의 設計者에게 制約을 주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서도 안될 뿐 아니라 결코 最小限의 基準을 確保하려는 規制에 헛점이 있어서도 안되므로 法規를 制定하고 이를 運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동안 建築法이 建築規制의 唯一한 尺度로서 適用되어 왔으며 近年에 集團的 制定이 別途로 補完 適用되게 되었으며 都市設計라는 槪念도 그 必要性이 認定되어 最近에 法制化 하였으나 아직도 施行에 必要한 細部的인 內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都市設計란 個別筆地의 建築行爲의 規制를 補完하고 그 計劃의 空間的 領域을 넓혀 地域空間을 單位로 하여 綜合的이고 複合的인 計劃要素를 同時에 다루고 形態化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都市設計에 대한 法規現況

우리나라에서 都市設計에 대한 規定이 立法化된 것은 1980년 1월 4일 改正公布된 建築法 第8條의 2 「都心部內의 建築物에 대한 特例規定」 및 1980년 11월 12일자로 改正公布된 同法施行令 제11조의 2 「都市設計의 作成基準」의 條文이 新設된 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細部施行規定이나 基準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로는 그 施行이 어려운 實情이다. 그 內容을 보면 都市設計는 「都心部 또는 幹線道路邊等 市長, 郡守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都市設計를 樹立하여 公告한 區域內로」 하여 都心의 商業地域이 對象地域임을 알 수 있고 計劃樹立은 市長·郡守가 하되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되어있다. 都心部에서는 筆地가 零細規模일 뿐 아니라 그렇다고 小規模 筆地單位로 個別建築行爲가 무질서 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다. 이를 集團的으로 計劃하여 開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公權力이 介入되지 않고서는 거의 힘든 實情이므로 市長·郡守가 都市設計의 計劃을 樹立하도록 하고 있다. 對象區域의 面積은 15,000㎡ 이상을 단위로 하며, 都市設計區域은 再開發區域, 特定街區整備地區 및 아파트地區에 대해서는 例外로 하여 區域指定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이들 區域 및 地區가 別途의 法規를 適用받게 되므로 法適用의 重複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

면 各己 다른 法規定이 適用될 뿐이지 都市設計의 範疇에 포함될 수 있다. 再開發事業은 都市再開發法의 規定에 따라 市長·郡守가 再開發基本計劃을 立案作成하여 建設部長官에게 決定申請 및 施行認可를 얻어 施行하도록 되어 있고 特定街區整備地區에서는 建築法 第33條의 2 및 제33條의 3의 規定에 따라 建築物의 높이, 규모, 모양,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建築計劃을 시장·군수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지구에서는 住宅建設促進法 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地區의 地區指定이 있으면 시장·군수는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따라 시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같은 集團的 規定을 適用받고 基本計劃내지는 建築計劃등을 시장·군수가 수립 또는 작성한 후 이에따라 建築하도록 된 것은 特定한 區域이나 地區를 대상으로 하는 都市設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再開發事業이나 特定街區整備地區內에서 施行行政節次등은 明示되어 있지만 基本計劃이나 建設計劃을 작성하기 위한 基準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다만 아파트地區에서는 共同住宅의 配置나 施設設置를 중심으로 한 住居團地計劃이므로 비교적 同質的 建築物을 對象으로 하여 여러가지 建築物이 들어서는 他 區域이나 地區에 비해 基準設定이나 規制가 容易한 편이다. 특히 아파트 지구는 筆地의 規模가 크고 集團的인 計劃과 開發이 이루어지나 都心地 再開發區域, 特定街區整備地區等에서는 小規模筆地單位로 나누고 여러類型의 建物이 建築될 수 있으므로 細部的인 規制나 計劃基準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어쨌든 現行의 여러 散發的인 規制內容을 綜合하여 잘 補完할 수 있다면 效果的으로 施行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近來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都市計劃法이나, 建築法이 建築物의 規制手段으로 適用되어 왔으나 이와같은 法規가 團地計劃이나 集團的인 施設計劃에는 有效한 規制手段이 되지 못하였고 都市計劃은 巨視的(Macro) 인 內容을 담고 있어 土地利用을 위한 用途地域地區의 設定, 都市計劃施設의 設置, 大規模 團地開發事業이 그 骨格이 되고 있다. 그리고 建築法에서는 用途地域 地區의 細分化와 建築行爲制限 建築密度規制등의 集團的인 規制事項과 微視的(Micro)으로 單位垈地와 建築物의 個体 規定을 상세히 明示하고 있다. 그런데 都市的 次元에서 보는 視點은 지나치게 廣範圍하므로 單位地域이 가지는 合理性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筆地單位로 보는 建築은 비록 單位 垈地上에서는 극히 合理的인 것이라도 全体的인 면에서는 不合理할 수 있다. 그렇다면 統制的인 下向的인 것과 調整的인 上向的 解決이 要請되며 이와같은 法制는 未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都市計劃에서 地域地區보다는 좁은 範圍로서 여러개의 建物을 묶어 하나의 計劃單位로 하는 團地計劃的인 規制가 不可避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巨視的인 計劃과 微視的인 施行 內容과 相互有機的으로 관련지워 맥락을 이어줄 수 있는 架橋的인 中間段階(Meso)의 規制가 效果的으로 施行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既存法規의 틀안에서 必要한 내용을 넣어 補完, 整備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法制를 만들던간에 建物－筆地－街區 또는 街廓－都市의 整然한 位階를 가지고 筆地單位의 合理的 建築行爲가 都市全体의 環境과 秩序에 맞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現在 都市計劃法에서 地域의 크기는 지나치게 크게 정하여 조그마한 地區單位에서는 不合理할 경우도 많고 用途地域相互間의 긴밀한 연결이나 有機的인 관련성이 缺如되기 쉽다.

用途醇化라는 것이 큰 範圍로서 區分하여 그 地域안에서 여러개의 行爲가 무질서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적은 單位로 하여 設定된 單位안에서 엄격한 用途醇化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 現行 用途地域制를 보면 엄청나게 큰 範圍로 設定되어 있고 그 地域內行爲 制限은 비교적 緩化하여 大部分 禁止制(Negative list system)을 採擇하고 住居專用地域, 專用工業地域, 綠地地域에서는 許容制—許可制(positive list system)를 適用하고 있으나 이들 用途地域制를 좀 더 細分化하고 地域內에서의 行爲規制를 体系化하여 强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대부분 도시중심부일원이 상업지로 지정되어 있고 상업지역내에서는 몇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건축될 수 있으며 이것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建築自由를 누리고 그 結果 無秩序한 都心部가 形成되게 된다. 상업지역이라도 業務, 官街, 都賣, 小賣, 慰樂등의 여러가지 機能集團으로 分類될 수 있다. 住居地域의 경우도 부분적인 建築行爲를 規制하고 있을뿐 넓은 지역에 여러가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土地制用에서 어느 程度의 用途醇化라는 점에서 地域地區制를 設定한 것이며 地域空間構造나 生活圈形成이라는 면에서는 극히 등한시 하고 있을뿐 거의 建築行政이나 制度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방관한것과 마찬가지의 結果라고 생각된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用途地域을 細分化 하고 行爲規制를 하다보면 必要에 따라 最上의 利用을 한다는 自然的順應을 무시하게 되거나 지나친 구속에 의해 건축설계시 創作活動의 範圍를 크게 制限하여 큰 侵害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現在 이와같은 法的 規制의 補完策으로 關係專門家들로 構成한 都市計劃委員會나 建築委員會가 設置되어 一定한 條件을 가진 建築物은 審議하도록 하고 있다. 地區指定, 立地의 適合性, 建築物의 形態, 配置,모양, 色彩 등 絶對的인 基準을 두기가 어렵고 事例別 相對的 評價가 이루어 지며 그것이 建築設計에서 重要한 要素가 될 뿐 아니라 公益에 큰 影響을 미칠수 있는 것은 어떤 規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77年에 制定한 住宅建設促進法과 그에 따라 1979년에 制定한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은 一定 規模 以上의

住宅이나 共同住宅을 集團으로 建設할 경우 團地 計劃的 規定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거의 建築法規에서는 未備된 事項으로서 垈地面積, 垈地幅, 建蔽率, 容積率, 建物配置, 單位平面, 駐車場, 어린이놀이터, 造景綠化, 道路幅, 附帶施設 等 單位建築物에서 生活圈形成을 위한 施設設置까지 團地全体의 重要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規制하고 있어 建築法과 都市計劃法에서 다루는 內容의 中間的인 特性이 있다.

即 都市計劃이란 槪念的인 틀안에서 막바로 個別 建築物單位로 規制하는 二元的 規制方法을 集團的인 團地設計나 都市設計를 하게 함으로서 体系的 開發이 可能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必要性이 오래전 부터 强調되어 왔으나 現實化하는 具体的인 基準을 마련하기도 容易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같은 것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社會的 風土나 與件造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파트地區에서는 市長·郡守가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을 樹立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再開發基本計劃을 立案作成해야 하는 再開發區域, 建築計劃을 作成해야하는 特定街區整備地區도 地區의 與件이나 施行上의 節次등을 規定한 法規가 다를 뿐이지 시장·군수가 基本計劃을 作成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하는등 地區單位의 基本計劃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 建築 計劃이나 事業施行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都市設計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파트지구에서는 建物의 種類,用途가 거의 一定하고 事業施行의 單位를 크게 잡고 集團的 大規模 開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法規定을 適用하기 쉬우나 再開發區域, 特定街區整備地區, 都市設計區域等은 商業地域으로 零細한 筆地單位로 建築行爲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建築物의 用途 規模等을 計劃過程에서는 쉽게 알수 없기 때문에 基本計劃을 作成하는것 부터 어느程度 合理性을 가지고 있는지와 最終的인 建築行爲를 어떻게 規制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公益을 前提로한 私益의 制限은 不可避하다 하더라도 計劃過程에서 施行이 어떻게 될지 파악될 수 없는 상태에서 計劃案을 잡고 여기에 따르도록 强要하게 되면 상당한 不作用이 있게되며 開發을 지연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計劃過程에서 施行段階까지 연관성이 있어야 할것이며 지나치게 硬直스럽게 運用되지 않으면서도 全体的 秩序를 흐트러지지 않게하는것이 좋다. 都市設計란 現行規定에서 그 對象區域은 都心商業地域이므로 土地를 高度로 利用하고 零細한 筆地規模에다 수많은 既存關係權利者가 있는 곳이란 점에서 새로 開發해야할 裸垈地를 對象으로 하는 아파트지구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 性格上 再開發區域 特定街區整備地區와 類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區域 또는 地區가 節次法만 統合한다면 구태여 區分되어 施行될 必要가 없으며 都市設計 手法으로 統合될 수 있다. 대부분의 大都市 市街地에는 수많은 再開發區域, 特定街區 整備地區가 指定되어 있으나 事業施行이 극히 不振할뿐 아니라 事業施行때 適用해야 할 法的인 細部基準이나 規定도 마련하지 못한 實情이다. 이들 區域 또는 地區는 土地利用의 合理化와 機能回復, 環境整備等의 긍정적 開發을 前提로 하여 地區를 指定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發展시켜 公益向上은 물론 私益增進을 도모한다는 바람직한 目標를 設定하고 있음에도 區域 또는 地區指定이 財産權行使에 극히 不利한 條件이 되거나 建築活動을 制限함으로서 不利益을 招來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어떤 方法으로든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都市計劃法과 建築法만으로는 團地 計劃的 手法으로 統制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니와 土地區劃 整理가 이루어짐이 없이 團地開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宅地로서의 적합한 條件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宅地에서 파생되는 問題를 일단 없앤후에 施設計劃이 이루어져야 한다. 街區分割統制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建築物을 잘 計劃한다 하여도 土地가 지닌 問題는 그대로 있기 마련이며 그와같은 垈地상에서는 建物에 상당한 制約을 가하게 되므로 都市設計는 土地整理 및 建物의 集團的 計劃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하며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方式을 擇하든 再開發의 立体換地의 方法을 適用시키든가 아니면 事業主体가 全面 買收에 의해 合理的 開發事業을 한후에 이를 分壤하는 方法을 쓸 수도 있다.

3. 關係法規의 適用

어떤 地域에 開發行爲가 이루어질때 다음과 같은 몇개의 段階를 거친다.

	土地	→ 垈地	→ 整地	→ 建物
主要事項	地籍管理	用途決定	利用·形態	建築物의 用途 建築基準
法規	地籍法	① 都市計劃法 ② 國土利用管理法	土地區劃整理 事業法	建築法-住宅建設促進法(其他關係法規)

地籍法은 土地의 分割, 合併, 地目變更을 다루며 筆地, 地目, 地番, 境界面積등을 地籍公簿에 登記하여 效率的 土地管理와 所有權의 保護가 主目的이므로 土地의 利用 施設配置에 따른 垈地形態나 規模等에 관한 規制가 전혀 없는 實情이다. 都市計劃法은 都市의 建設, 整備, 改良등을 위한 都市法制의 立案, 決定, 執行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며 用途地域地區의 指定 및 都市計劃施設設置가 主가 되며 建築行爲制限은 建築法에 위임하고 있다.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은 垈地로서 效用增進과 公共施設의 整備를 위하여 土地의 交換, 分合 기타의 區劃變更, 地目 또는 形質의 變更이나 公共施設의 設置變更을 위한 都市計劃事業으로 施行하며 土地의 構成, 利用, 配置, 形態等을 綜合的으로 計劃하고 整理하지만 土地 및 建物이

表 1　法制適用類型

類型	地 籍 法	都市計劃法	国土利用管 理 法	土地区劃整理 事業法	建築法	住宅建設促 進 法	例	特　　性
Ⅰ	○		○		○		聚落地区	建築基準만 確立
Ⅱ	○	○			○		一般都市	建物의 用途 및 建築基準
Ⅲ	○	○		○	○		都市内 土地区劃整理를 한곳	建物相互間의 配置, 形態관계가 不足
Ⅳ	○	○		○	○	○	아파트地区	가장 効率的 規制가 可能
	土地登録과 用途分類 (必須的)	土地利用 (用途)	土地利用 (用途)	整地 (土地의 区劃, 形態配置構成)	建物의 用途, 建築基準	建物의 配置 環境造成		

有機的으로 計劃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 建築法은 單位筆地와 建物에 관한 事項을 다루며 住宅建設促進法에 規定된 內容은 集團地 住宅을 建設할 경우 建物의 配置, 施設設置等 集團規定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은 法制를適用할 경우 몇가지 類型을 設定할 수 있고 그 特性은 위 표와 같다.

여기서 보면 既存法規 適用을 많이 받을수록 設計의 制約이 커지지만 그 結果 전체적인 면에서 秩序整然한 計劃的 開發이 可能함을 알 수 있다. 都市設計도 既存의 한두개 法制만을 適用할때 오는 커다란 空白을 메울 수 있도록 都市設計를 積極的으로 導入하여 一定한 區域을 集團的으로 綜合基本計劃을 마련한 후에 段階別 事業施行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都市計劃과 관련된 地區 基本計劃을 作成하고 그에 따른 細部的인 建築設計까지 一括的인 規制와 統制가 可能할 수 있도록 하되 上下向的인 位階가 秩序에게 形成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같은 것은 건축행위에 先行되어야 할 기본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建築法의 規定에서 建築設計의 要素 即 配置, 形態, 外觀等 現在로서는 거의 法的으로 統制하기 어려운 것도 最小限 지켜야할 客觀的 基準을 定하여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既存의 여러 關係法規를 整備, 補完하면 하나의 훌륭한 都市設計를 위한 基準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같은 法規定이 建築作品活動에 큰 制約이나 구속을 줄지 모르나 無秩序하게 들어서는 建築物과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都市施設環境을 이대로 放置할 수만은 없다는 긴박한 현실이 都市設計라는 새로운 集團的 規制의 틀을 建築人에게 强要하게 될 것 같다.

私益의 合이 公益이 되지 못한다면 私益만을 追求하는 個個人의 행위가 公益을 해치게 되고 그 公益이 다시 個個人에게 配分된다고 보면 公益向上을 위한 어느 정도의 私益制限은 어쩔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都市設計가 하루빨리 널리 實施되기를 바란다. 〈*〉

製 品 案 内

오랄 (알미늄제) 샷터·오랄파이프샷터

장점 : 장수명, 고강도, 불변체, 무고장, 강탄력

大韓非鉄販売株式会社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276－2　　전화 : 445－2932

□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우리는 왜 건축물이나 시설설비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귀중한생명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건축인 특히 설계 감리를 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다시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하고 철저한 확인을 하므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느껴야할 때인줄 안다.

건축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는 설계,공사 준공후의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역시 구조적인 설계안전면의 확인 검토와 사용 재료의 선택등은 설계계획 단계이외의 할 일이다. 우리는 가끔 어느 현대식 대형빌딩을 비오는 날 출입구를 들어서면서 또 나오면서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가 있다. 그것도 바닥이 강도높은 화강석 물갈기로서 이는 무용을 하는 바닥이지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바닥재료의 표면이 아님을 새삼 느끼며 보기좋은 것과 기능상 인간의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것은 재료 선택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축법상 재료선택의 규제가 필요함) 그 비싼 재료위에 다시 싸구려 재료인 요철논스립 비닐깔판등을 깔아 놓은것이 代案이었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이런 경우는 욕실의 바닥재료를 미끄러운 재료로 시설한 경우와 같은 예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탄가스 누설방지나, 아파트의 난간설비의 높이, 간격, 난간 중간단 의 유무가 아이들의 인명구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건축인들은 생활 주변에서 다시 건축과 안전에 관련된 일들을 찾아 반성하고 다음 설계감리에는 시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선택 유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공사감리면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 거푸집의 조기제거, 거푸집의 제거 순서 잘못에 따른 것이며 사고의 예방도 될 수 있으나 제거시에는 마구 제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R. C 조의 경우 지주를 그냥 둔채 측벽이나 기둥의 측면 거푸집을 먼저 제거하여 기둥의 콘크리트 작업이 완벽한가, 안채워진 부분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기둥에 공동(空洞)이 발견된 것도 모르고 마구 전체적인 철거를 감행한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또한 기초문제로서 설계가정(假定)과 다른 지질 지반의 불확실한 조건의 상황하에서 건축이 진행 되었을 때의 위험부담은 큰것이며 사후 수리와 보완이 어려운것이 기초이므로 기초지질과 기초의 설계가정과의 관계는 반드시 확인하고 실시 되어야 한다는 철칙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도심지내의 지하실 공사 굴착때의 흙막이 공사는 항상 이웃 건물과의 시비의 대상이 되며 공사 진행상 애로가 많은것이 상례이나 최선을 다한 완벽한 흙

막이 공사를 함으로 불의의 인명, 선의의 재산의 피해를 막는일 일 것이다.

이렇게 볼때 역시 우리 건축사란 많은 현장의 경험과 구조적인 전문지식과 시공 관리면의 주도 면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건축물이란 설계에서 완성 단계에까지 규모에 따라 장시간이 걸리기도 함으로 그많은 시간과 인력과 각 직종의 수다한 사람들이 서로가 각자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므로서 결과가 완벽해질 것이며 건축인 특히 설계 감리자는 이 모든 이질적인 직종, 인력, 재료를 건축 목적 시방에 맞게 통일·조화되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건축사의 임무이며 실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 모든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와 성실성의 부족에서

설계도란 설계자가 생각하고 있는것을 설계도에 표현 한것이 아니고 발주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도면이나 시방서의 정보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얼마만큼 시공자에게 전달 될 수 있을까는 현실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다. 말하자면 100%가 60~70%의 설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안전 관리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최근에는 준공후의 유지관리면의 소홀로 대형사고를 내고 있음을 볼 때 건축인 뿐만아니라 건축물과 관련된 제부대 시설면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설비면의 관련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의무의 성실, 확인 등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무슨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대로 확실히 반응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이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9할만 수행하고 1할을 소홀히하는 정신자세를 가져서도 안되겠으며 건축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인명의 존엄성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건축관계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나는 가끔 모든 사고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고 또한 인간의 성질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 할 때에 인간성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인간성의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좋은태도, 성실도의 함양은 성장시부터 교육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물을 관찰 하거나 설계함에 있어 차분히 면밀하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각적인 생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가는 식은 반드시 헛점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는 몇배의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가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할것이다. 모든일에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자. (*)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五大이즘 (Ⅰ)

(영국태생 건축가이며 현재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수로서 과거 설계실무를 거쳐 지금은 건축평론의 전문직 교수이며 이 강연문은 81년 7월 8일 일본 동경대학 건축과 대학원에서 강연한 내용임)

〈다음은 英国태생으로 현재 美国콜롬비아 대학교수로서 과거 설계 실무를 거쳐 지금은 건축평론가로도 활약 중인 케네스·후램프턴(Kenneth Frampton)교수가 지난해 7월 8일 일본 동경대학 건축과 대학원에서 행한 강연 내용을 A+U誌 81년 10월호에서 보고 옮긴 것이다. /편집자/〉

① 박스톤/수정궁, 1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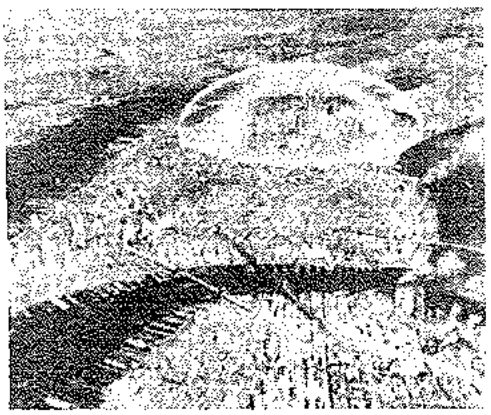

② 박민스타-후라/후라의 동, 1968

③ 미스·판·데르·로에/유리의 마천루, 1921.

④ SOM/해군포병학교, 1954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이즘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테마는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직선적인 표현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이며 논리적이 되기 쉬우나 현재 우리들이 포스트 모던 건축이란 독특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대담한 논의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부터 몇 개로 분류를 해서 시도해 보려는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약 15년 정도 현대건축에 관하여 진행해온 하나의 연구성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는 때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편중되기 쉬우나 어떤 건축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즘은 20세기 초두의 전위주의자들의 이즘과는 다른 것이며 이것들 중 몇 개는 오늘의 건축가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이것들의 이즘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오늘의 건축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좌표와 같은 것이며 건축에 대한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들 중에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덕티즘(Productism) 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이 말은 건축을 다시 기술적 생산물, 그 자체로 환원하려고하는 생각을 의미하고 있다.

이 이즘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근대적인 것이므로 맨 먼저 열거하는 것이다.

프로덕티즘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단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나는 콘라아즈·와스맨이 1961년에 쓴 「건물의 轉向点」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덕티즘의 건축으로서는 박스톤과 라우돈에 의한 1851년의 런던의 水晶宮, 박민스타, 후라의 동, 1920년 경의 미-스의 스카이스크래파, 윌리엄·파레스에 의한 로스엔젤스·타운을 위한 空想적 프로젝트, SOM의 해군 포병학교, 맥스·빌에 의한 1963년의 로잔느전시장 등을 들 수있다.

그렇지만 이 프로덕티즘의 건축 중에도 다른 主義의 건축과 같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여러가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만·호스타의 작품에서 볼 수 있으며 그것은「넌·리드미컬」한 것에서 부터 삐아노·앤드·로쟈스에 의한 파리의 뽕피두 센터와 같은「리드미컬」한 것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프로덕티즘의 건축가들이 건축을 외부의 콘텍트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건축은 산업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져 있고 최근 筑波大学도시를 본 결과 이 대학도시는 영국의 밀턴·케인즈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했고 밀턴·케인즈의 플랜닝은 참으로 프로덕티즘적 태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후리·스탠딩그 의 건물, 개방한 그릿드·시스템등의 개념의 적용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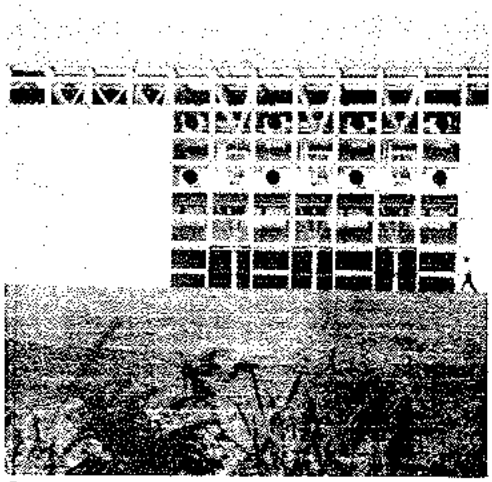

⑤ 훠스타ー·안쉬잇즈 / 세인트베리ー미술센터,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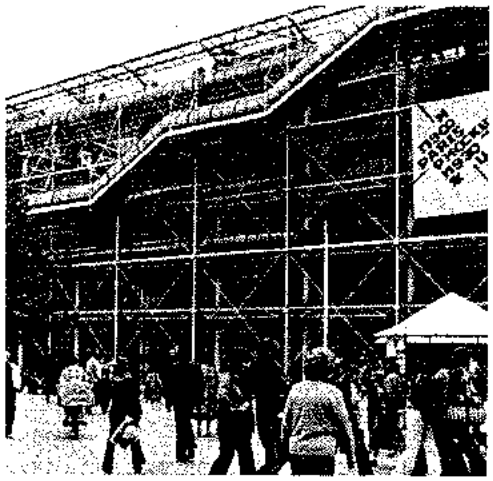

⑥ 렌도 · 베아노 앤드 · 로자스 / 뽕피두 ·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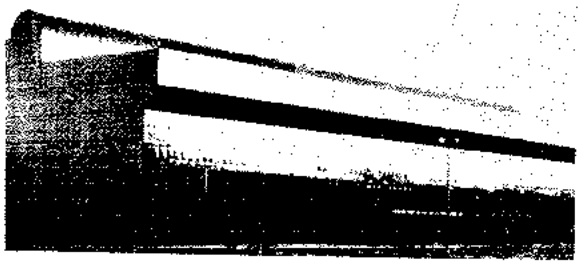

⑦ 시저ー·베리 / 페시픽 · 디자인 · 센터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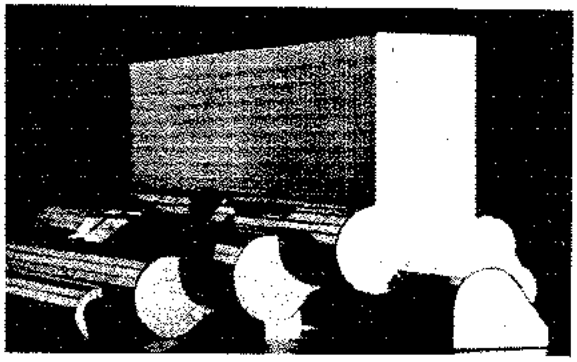

⑧ 안소니ー 람스덴 / 비바리히스 · 호텔 1973

그러면 다음은 노만 · 호스타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들은 앞에서「년· 리드미컬」한 프로덕티즘 건축이라고 일컬은 것으로서 공업기술의 산물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건축이며 베아노 · 앤드 · 로자스의 볼피드 · 센터, 여기에서는 「리드미컬」한 프로덕티즘 한 건축이라고 호칭을 서큐레이숀이나 구조시스템이 표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고 이것은 노만 · 호스타의 작품만큼 還元的이지는 않다.

주위의 콘텍스터와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 호스타의 작품에서는 건물의 스케일이나 형태가 주위의 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희박하며 이 건물의 스케일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50m의 대스팬이며 만약 이 스팬 사이에 기둥이 끼이거나 하면 보의 깊이가 작아짐으로 건물의 높이는 약간 작아 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자에 의해서 공간의 프렉서빌리티(Flexibility)를 확보한다고 하는 생각은 그의 理想的인 것으로서 그에게는 50m의 스팬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이 건물의 정면은 공업생산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作品에 있어서 환경과의 기묘한 관계는 오히려 이태리의 스파 · 스타디오가 아이러니에 찬 드로잉에 표시한 것과 類似하다고 말할수 있다.

호스타의 작품은 공업생산물로 된 펙케이지이나 이러한 경향의 건축은 사리엔파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캐완 · 로제에 의한 프로젝트, 안소니 · 람스덴에 의한 로스엔젤스의 Centry City 페리에 의한 로스의 Civic Desing · Center등을 열거 할 수 있다.

이 페리의 작품을 호스타의 先例와 비교하면 리드미컬이기는 하나 역시 공업생산물의 펙케이지인 것이며 또한 람스덴에 의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프로젝트나 로스의 비바리 힐스 · 호텔, 노만 · 화스타에 의한 영국의 세인즈베리 · 센터, 동경에 있는 페리의 미국 대사관등도 이러한 경향의 좋은 예이다.

이 프로덕티즘은 미스 · 환 · 데르 · 로에의 유리의 스카이스크레파에서 볼 수 있는 특질 — 거의 무에 가까운것(beinahe nichts) — 과 유사하다. 이들 작품의 이점은 職人芸가 경제적으로 극히 고가이거나 또는 衰退한 곳에 있으며 건물의 확실한 생산성이나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 점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프로덕티즘 있어서는 건축에 건물의 공공성이나 성격을 표현하는데 곤란한 것이 단점이며 그 예로써 건물의 엔트랜스(入口)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점이 문제이며 페리의 미국 대사관이나 훼스타의 세인트베리 센터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명백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이의 이즘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며 이 용어는 오늘까지도 내셔널리즘이라고 불리는 운동의 창시자격인 아르테, 롯시, 죠루죠, 그랏시등 이태리인들이 사용한 의의로서의 내셔널리즘인 것이다.

이 이즘에 의한 規範的인 텍스트로서는 롯시의「도시의 건축」(1966년)을 들 수 있는데 이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원리의 첫째로서 건축은 자율적인 언어이며 스스로의 형태적인 것과 기술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곧 조각과 회화와의 다른 점인데 예를 들면 쥬세베 · 테라니의 1920년대 중반기의 작품으로서 세루횟티의 모뉴멘트는 건축독자의 언어를 가진 작품의 좋은 예이며 건축의 자율성 이것이 제일인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은 건축이 역사적으로 가지는 타입과의 연속성 내지 그 전개에 기초를 두는데 있어 공공상의,다시말하면 문화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예를들면 롯시와 스코라리에 의한 시티홀의 계획안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17세기적인 중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타입에 기초를 둔 디자인이 되고 있다.

제3의 원리로써 공공건축내지는 공공적 모뉴멘트는 도시의 개념과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도시란 여러가지 모뉴멘탈한 단편의 누적이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예를 들면 롯시의 빠르마의 극장을 위한 프로젝트에서는 아케이드가 역사적 도시와의 연속성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4 의 원리는 이러한 도시의 단편은 단순히 시민의 공공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오늘날과 같이 대도시적 상황에서 잃어버린 도시의 전통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생해 낼 수 있는 것이며 이 원리는 궁극적으로 건축이란 축소품으로서의 도시, 즉 「도시중의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롯시의 가라라테제의 집합주택이나 그랏슈의 학생료에서 볼 수 있는 아케이드는 확실히 전통적인 도시의 개념을 환기하는 건축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5 의 원리로는 이러한 역사적인 타입의 유사성을 가지는 것과 같이 디자인된 건축은 고전주의 건축과 같이 뷔나큐라—건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태리의 내셔널리즘, 즉 그 자체에 중요한 건축 작품으로서 독일의 건축가 하인리히 뎃세노우에 의한 금세기 초두의 작품을 들 수 있으며 그의 작품은 뷔나큐라와 크라시즘 건축물의 코—드를 각각 묘하게 변화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에 있어서의 서양적인 면에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며 이와같이 고전과 뷔나큐라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뎃세노우의 작품은 롯시의 작품으로 흘러간 것으로도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레온·크리에의 이론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의 드로잉은 자유학습적인 건물, 개방된 도시라고 말한 프로덕티즘적 건축의 원리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실제 그의 드로잉에서 것은 볼 수 있는 도시속의 또 하나의 도시로서 모뉴멘탈적인 건축인 것이다.

또한 크리에의 작품에는 공업기술에 따라 건축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덕티즘적인 이념에의 반발과 건축은 예술이라고 한 20세기 초두의 전위주의자들의 생각에 반발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반발은 그랏슈의 작품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내셔널리즘에 대한 평가와 비평을 크리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기존의 도시의 콘텍스트의 중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도시에 있어서 각종 모뉴멘트의 배치, 동선의 시스템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한 기존의 배경상에 새로운 계획을 重合해가는 手法인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밀튼·케인즈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전혀 다른 逆의 방법인 것이며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 될 수 있고 역으로 비평하고자 하는 점은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中世주의라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中世에 대한 강한 향수적인 태도를 들 수가 있으며 즉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미지이며 이것이 무비평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내셔널리즘적 태도에 있어서 하나의 결론적인 것으로서—물론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운간스의 작품을 예로써 들 수 있으며 그의 뉴욕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때 19세기에 볼 수 있었던 건축과 도시의 타입을 답습하는것 처럼 도시속에 도시를 만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새로운 공업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응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크리에가 가지고 있었던 공업기술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세번째의 이즘은 포퓨리즘(populism)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먼저 몇장의 스라이드를 보아주었으면 한다.

여기에 제시하는것은 뵌튜리에 의한 작년의 베니스·뷔엔나레에 발표한 작품, 아키칼럼(archicolumn)이 초기에 발표한 건축의 개념의 드로잉, 미국 가정의 일반적인 풍경, 부장의 상용으로 사용한 파스메이의 주택의 포스터이며 이것들은 포퓨리즘을 생각할 때 한번씩 거치는 것으로서 대중의 취미에 호소해 오는 것이며 대중이 구하는 것을 近大建築을 기초로 만들어 내는 자세가 있다.

이러한 포퓨리즘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논문으로서는 로바—트·윈체리의 「건축에 있어서 複合과 対立」(1966년)을 들 수가 있으며 이 著作은 롯시와 크라시의 책과 같은 해에 출판되었고, 왁스만의 책이 5 년후에 출판되었으며 이때부터 1960년대의 하반기를 건축의 하나의 전환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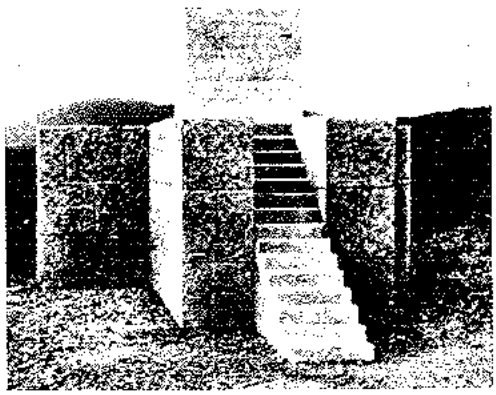

⑨ 쥬세페·테라니 / 세루롯지의 모뉴멘트,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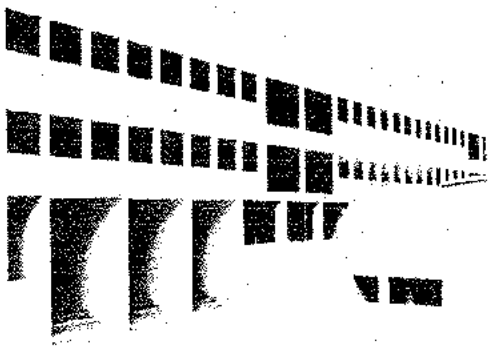

⑩ 아르도·롯시 / 가라라테제의 집합주택, 1970

⑪ 히인리히·뎃세노우 / 주택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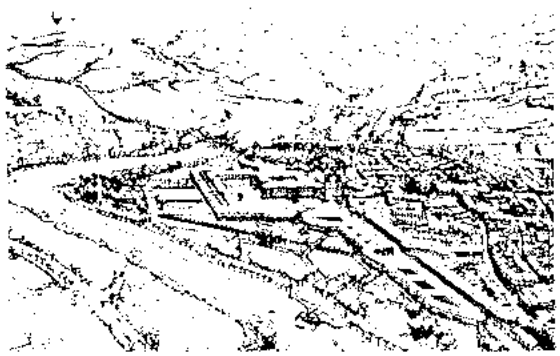

⑫ 레온·크리에 / 에리데루나하 계획안,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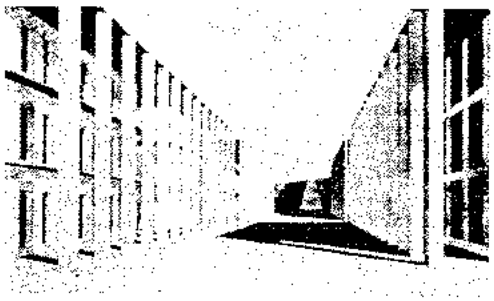

⑬ 죠루도 · 그랏슈 / 기에티의 학생료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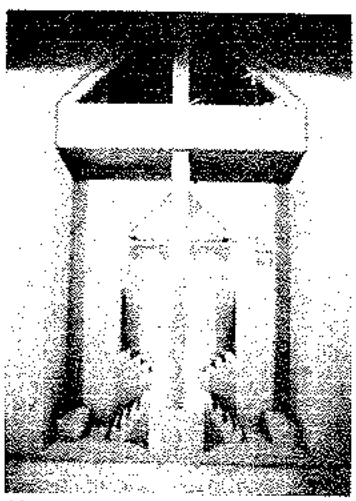

⑭ 후링코 · 부리니, 라우라 · 델에스 / 베니스 뷔엔나레 출품작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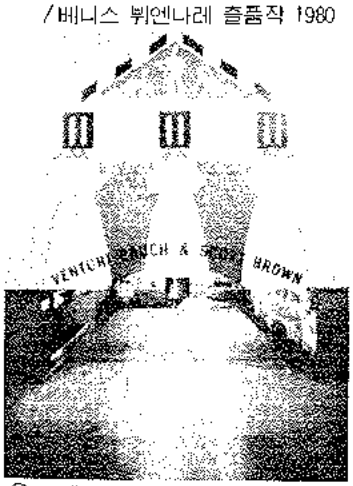

⑮ 뷘체리, 로—체, 스콧트 브라운 / 베니스 뷔엔나레 출품작 1980

⑯ 찰스 · 무어 / 뉴오랜스의 이태리 광장, 1976.

뷘튜리의 「메인 스트리도 여간 나쁘지 않다」고 한 말이 표시하고 있는것과 같이 포퓨리즘은 기존의 대중문화를 긍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소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포퓨리즘의 건축은 어떤 종류의 무대장치와 같은 것으로 영화가 각종 무대장치에 따라 비현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로써 스탄리 · 타이거맨이 베니스 뷔엔나레에 제출한 작품에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리하여 포퓨리즘의 건축은 한편으로는 表面적인 역사주의, 즉 여러가지 역사적 실험을 대중취미에 맞추어 驅使한다고 하는 국면을 가지고 있고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포퓨리즘과 내셔널리즘은 接点을 가지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베니스 뷔엔나레에 출품된 것의 대부분은 거의 이 경향의 것이며 불과 몇 사람의 건축가들, 즉 한스 · 호라인이나 磯崎新등이 이런 경향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작품을 제출한 것이다.

내셔널리즘이 기본적으로는 이태리적이며 프로덕티즘이 영국적인 것과 같이 포퓨리즘은 기본적으로 미국적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스타링그에 의한 뉴욕의 집합주택계획, 그레이우스의 프로젝트, 토머스 · 고든 · 스미스에 의한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아란 · 그린바—그에 의한 슈퍼마켓의 프로젝트, 스탄리 · 타이거맨의 프로젝트, 스탄에 의한 折衷主義나 인테리어등은 그 좋은 예인 것이나.

또한 찰스무어에 의한 뉴오랜스의 이태리 廣場에서는 중앙의 연못이 이태리의 形을 하고 있는데 분수가 처음에는 로마의 위치에 놓여 있었으나 이 지역의 이태리住民이 주로 시시리섬에서 온것을 알자마자 분수는 시시리섬의 위치에 바꿔 놓게 된것이고 이와같이 포퓨리즘의 건축은 무대이며 어떤 종류의 카니발을 연출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포퓨리즘의 건축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매우 효의적으로 받아 들여져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비교적 값싼것으로 또한 무엇이라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대중의 호의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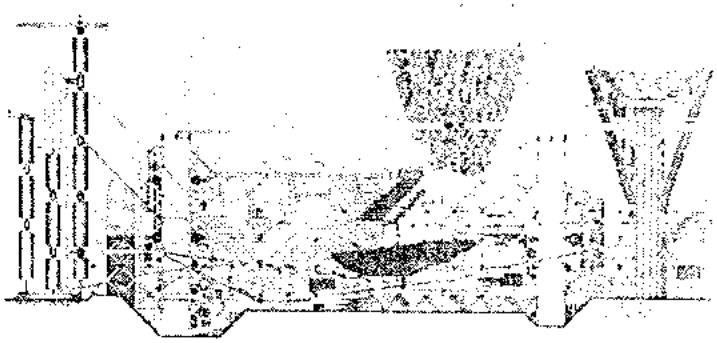

⑰ 아키카랄럼 / 푸라그 · 인 · 시티,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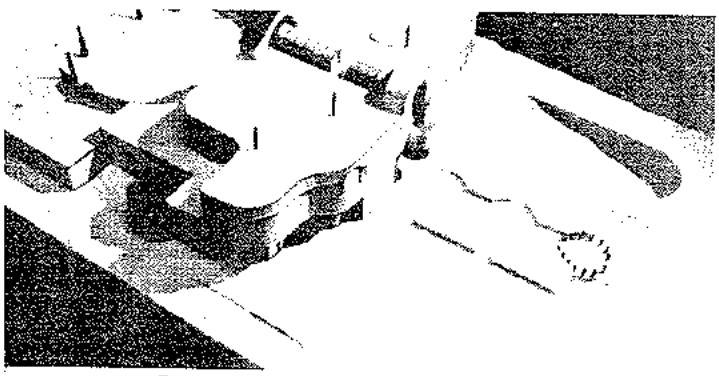

⑱ 스탄리—타이거—맨 / 빌라 · 마다마의 구상에 의한 주택.

우리나라집에 관한 민속(完)

김 광 언

(인하대 부교수)

6. 유교문화의 영향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유교가 정치나 교육에 근본이 되었다. 대부분의 문물과 제도가 유교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었고 상류 지배층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의 일상 생활도 유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대적 환경이 이러하였으므로 이 시대의 상류가옥에 유교적인 생활관이 철두철미하게 반영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유교의 중요한 덕목(德目)이라고 할 남녀유별(男女有別)이나 조상숭배의 관념이 조선조의 상류가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남녀유별의 유훈(儒訓)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하여 오누이 사이에도 어릴적부터 격리된 채 성장하도록 조장하였고 이러한 관념은 상류가옥의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한 집안에 있어서도 남자의 생활공간과 여자의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었던 것이다. 여성의 생활공간은 안채와 이를 둘러쌓은 안행랑채로 제한 되었으며 남성은 사랑채에 기거하면서 필요한 때에만 은밀히 안채에 드나드는 준별거 생활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다. 안채에서 차려진 매끼의 식사는 아랫사람 들이 운반해 내왔으며 의복 등속도 이와같이 하였다. 여성전용의 안변소와 남성의 바깥변소가 따로 세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이 일단 시집살이를 시작하면 안채의 중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것을 이상으로 삼았으며 사내 아이를 낳아 4～5년이 지난 뒤나 부모가 돌아가거나하여 친정에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나들이였으므로 일생동안 중문밖을 나서보는 것은 사녀차례에 불과하였다. ⑩

⑩ 정읍 김동수 씨(70세)의 모친은 17세에 결혼한 뒤 16년 만에야 근친을 갔으며 그 뒤로 다시 친정발걸음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그의 부인은 결혼 이후 40여년 동안 네번 친정에 다녀왔다.

남성도 안채에는 남들이 깊이 잠든 밤중에 한해서 은밀하게 잠깐씩 드나들었다. 새색시 시절에는 남편의 얼굴조차도 기억하기 어려웠으므로 나이 차이가 심하지 않은 남편의 형제가 여럿인 경우 이들을 번갈치로 힐끗힐끗 볼 때마다 저들 중에 누가 과연 나의 남편인가 궁금하기도 했었다는 체험담을 내게 털어놓은 노부인도 있었다.

남녀의 생활이 이처럼 별개의 세계에서 각기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며느리가 될수록 빨리 사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당사자인 며느리에게나 시집쪽에나 현실적인 여건이었다. 밤이 되어 중문이 걸리면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차단되지만 젊은 주인이 부인 방으로 출입하기 위한 은밀한 통로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떤 집에서는 며느리방쪽에서 열 수 있는 쪽문을 담 사이에 붙여두기도 하고 다른 집에서는 구석진 담에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만한 틈을 내고 이에 나뭇단 등을 쌓아두어서 외부 사람에게는 좀처럼 노출되지 않는다.

한편 어느 집에서나 사랑채 젊은주인의 방과 안채의 며느리방은 최단거리에 위치하도록 배려하며 안채 대청의 문이 걸린 때라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며느리방 측면에 퇴를 달아두는 것이 보통이다.

또 외간(外間)남자는 주인의 허락없이는(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누구라도 안채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기면 내정돌입(內庭突入)이라하여 엄중한 벌을 받았다. 심지어 경북 영천군 임고면의 정 씨 집에서는 그의 조부가 현재의 집을 매입할 때 주인이 안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사랑채의 모습만을 보고 대금을 치렀던바,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니 안채가 말할수 없이 헐어 있어서 집값만큼을 다시 들이고 수리를 하였다고 한다.

외부 사람의 안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채에 드나드는 손님에게 안채의 내부가 엿보이는 꼴을 막기 위해 그림처럼 중문 안쪽에 널벽을 쳐서 한 간을 돌아들도록 하였고 앞에 이야기한 월성의 손 씨집에서는 안채와 사랑채의 경계에 쪽벽을 쳐두었다. 이 벽은 시선을 차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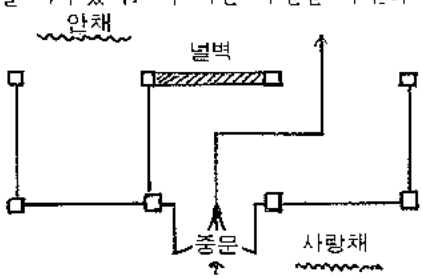

기 위한 목적 외에 이곳이 사랑채와 안채와의 경계점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전북 옥구군의 채 씨 집에서는 중문쪽의 안마당에 사철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밖에서는 안

채의 내부가 보이지 않고 안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이룩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이 지방 특유의 재치요 멋이라고 할 것이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설렁줄을 설치해 놓고 사랑에서 안채에 용건이 있을 때는 이것을 잡아 다녀서 안채에 알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어떤 집에서는 이것이 상스럽다하여 일일히 아랫사람이 의사를 받아서 전하였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나 손님 접대는 그의 격에 따라 하였지만, 영신 신씨네 집에서는 내객(來客)을 앞에 두고 주인이 하인에게 상을 어찌어찌차려 내어오라고 하기가 매우 면구스러워서 안부인과 미리 그림 암호를 정하여 두었으며 안주인은 사랑채에서 그려 보내는 그림의 내용에 따라 상을 차렸으므로 이 집에서는 안팎이 매우 간편하였다고 한다.

효(孝)는 유교사상의 최고지선(最高至善)의 도덕 개념이다. 효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자손은 부모가 생존했을 때 극진히 모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제사를 정성껏 올리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 생전의 봉양보다는 사후의 제사 즉 조상에 대한 숭배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조로부터 후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중국에서는 실질적인 재산상속이 기본이되고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가장권(家長權) 즉, 호주의 지위 계승이 중요시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조상에게 제사를 받드는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상속의 중요 내용이었으니[11] 조상숭배의 관념이 어느정도로 철두철미 하였던 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⑪ 최 재석, 한국가족연구, 1966, p. 646

이러한 조상숭배 관념은 조상의 위패를 모셔두는 사당에 구체적으로 표현 되었다. 상류가옥에 사당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기인 14 세기 중엽부터이며 조선조에서는 초기부터 이의 건립을 강력히 권장하였다. 당시의 귀족이 자기 집에 사당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하고 출가한 승려도 유교적 상례(喪禮)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것[12]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었다.

이러한, 행정력의 강력한 발동과 상류층의 경쟁심리도 곁들여져서 사당의 보급률은 급속도로 높아져왔다. 보기를 들면 경북 성주의 경산(京山)이 씨 마을은 모두 150여 호에 불과하나 이 중에 재실이 15채나 되므로 결국 15호마다 한 채 꼴의 비율인 셈이다.

⑫ 김 두헌, 한국가족제도 연구, 1966, p. 583

집을 지을 때 사당의 위치를 먼저 정하는 것은 물론, 사당을 다른 건물보다 높이(또는 높은 자리에) 세웠으며 주위에는 담을 두르고 출입문을 달았다. 그리고 가옥의 좌향이 동남향인 경우 사당은 다른 건물의 뒷쪽인 동북방향에 두었으며 사당과 사랑채는 같은 방향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처럼 사당과 사랑채를 동일 방향에 두고 사당 출입문의 열쇠를 사랑채의 주인이 가지고 있던 점(곡간 등의 열쇠는 안주인이 간수한다)등은 앞에서 말한 제사권이 사랑채 주인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사당채 중앙의 문으로는 종손만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좌우의 옆문을 이용하도록 하여 제사권의 권위(?)를 한층 높였다.

한 간의 사당도 없지는 않으나 삼간으로 짓는 것이 보통이다. 내외부에는 단청을 입히고 신문(神門) 이라고 하여 삼간 문전면에 반간의 퇴를 붙인 거대한 출입문을 따로 세우며 전면에 기화요초(琪花瑤草)을 심는등 사당 치레도 대단히 하였다. 사당치레라는 말이 사당을 가꾼다는 뜻 외에 실질에는 힘쓰지 않고 외양만 번드르하게 꾸미는 일을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으니 그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든 경북 월성의 손 씨 집에는 6 간의 제청(祭廳)을 사당 앞에 따로 세우기까지 하였으며 사당 앞의 화단을 포함시킨다면 전 대지의 반 가량을 사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위에 사당치레를 생각할 때 이 집의 안채나 사랑채 등의 거주공간은 오히려 사당의 부속건물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사당의 규모나 치레도 대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당 안에 조상이 살아있는듯이 대하여 집안의 비일상적인 일은 모두 이에 나아가 고하였다. 주인은 불과 2～3 일 간일지라도 여행을 떠나기전과 돌아온 뒤, 혼남, 아이의 입학과 졸업, 혼사 등이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보고를 하였던 것이다.

사당에는 4 대 선조의 위패를 모시며 대(代)가 지날 때에는 맨 윗대의 위패를 그의 무덤에 묻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천위(不遷位)라하여 위패를 없애지 않고 자손 대대로 모시기로 한다. 시조나 입양조(入養祖)를 그렇게 하기도 하며 국가의 큰 공로를 끼친 인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지정하여(이를 국선, 國選이라고 한다) 그가 영영세세(永永世世)토록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불천위는 이외에 지방의 서원에서 이를 선정하기도 하였는데 국선과 이러한 서선(書選)의 영예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형편상 사당을 지을 수 없는 집에서 사당벽장이라고 하여 대청 뒷벽의 상부를 터서 내어 벽장을 꾸미고 조상의 위패를 이 안에 모시었다. 이것도 어려울 때에는 나무 상자를 짜서 역시 대청 뒷벽에 걸어두기도 하는데 이를 벽감(壁龕)이라고 한다. 전북 정읍의 어떤 집에서 교살창을 붙인 벽감을 대청 전면의 퇴 끝에 달아둔 것을 본일이 있다.

한편 서민가옥에서는 조상당세기(영남), 봉오가리(호남)라고 하여 쌀이 담긴 작은 단지를 안방의 시렁 위에 모신다. 이 단지는 주로 장손집에

두며 위패처럼 조상의 수대로(4대를 봉사한다고 하면 8개를)모시거나(호남) 한대를 단위로 하여 4 개를 두기도 한다(영남).[13] 이러한 수의 관념은 앞에서 설명한 사당의 영향이고 원래는 단지 하나에 모든 조상의 혼이 머문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⑬ 이 두현, 장 주로, 이 광규 공저, 한국 민속학 개설, 1974, P.165

상류가옥에는 사당 외에 여막방(廬墓房)이라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한다. (경북 경산의 최씨 집)[14]

이 방은 육친이 사망했을 때 시신을 넣은 관을 서너 달 동안 모셔두기 위한 공간으로 조석상식(朝夕常食)을 공궤하며 부모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여막방이라는 이름은 부모의 무덤 옆에 임시 거처인 여막을 짓고 거상(居喪)을 마치는 3 년간 묘소를 보살피던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이 따로 없으면 사랑채나 행랑채의 구석방을 치우고 대용하나 그마저 예의치 않을 때에는 관을 안채의 대청이나(전북 옥구의 채 씨 집)사랑채 누마루 아래(경주 최 씨 집)또는 사랑채 처마밑(전북 임실 이 씨 집)에 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죽고나서 며칠 뒤에 장례를 치르면 마치 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시신이나마 서너 달(보통은 석달)집안에 모시고 슬퍼하기 위한, 효도의 한 표현으로 이를"가빈(家殯)을 꾸민다"고 한다.

⑭ 내 글, 경북지방의 고가옥, 문화인류학 3집, 1970

가빈을 꾸몄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의 제거와 시신에서 흐르는 장수(葬水)의 처리이다. 전남 영광의 조 씨 집에서는 수수 알갱이를 태워서 20여cm 쌓고 마목(馬木)을 놓은 다음 이 위에 관을 두고(이렇게 하면 탄화된 수수가 악취와 장수를 흡수한다) 방문이나 창을 종이로 발라서 밀폐 시켰다. 그러나 전북 장수의 전씨 집이나 김해 등지에서는 방의 구들을 뜯어내고 모래를 깐 위에 관을 두었으며 관 안팎에는 초를 두텁게 칠하고 장판지로 싸서 장수가 흐르는 것을 막았다. 또 전북 옥구의 채 씨 집에서는 밤낮으로 쑥을 피워서 악취를 덜었으며 경북 안동에서는 여막방의 천정에까지 모래를 꽉채워 두었다.[15]

이 가빈의 풍속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랜 것으로 수서(隋書) 고려전(高(句)麗傳)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빈을 꾸미며 삼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받아 장례를 치룬다"(死者殯於屋內經三年擇日而葬)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장법은 고구려 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행하여 졌음을 우리는 1971년 7월에 발굴된 무영왕능(武寧王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능에서 출토된 지석(誌石)에는 무영왕이 523년 5월 7일에 사망하였음에도 그가 매장된 것은 그로부터 28개월이 지난 528년 8월 12일이었으며 526년 11월에 사망한 왕비 또한 529년 2월 12일에 매장되었다고 새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왕이나 왕비는 사망하고 매장되기까지 약 3년동안 빈전(殯殿)에 모셔져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가빈법이 신라에서도 행하여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앞의 최씨 집의 여막방은 바로 이 유습의 계승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⑮ 내 글, 전북지방의 장속(葬俗), 전북의 문화Ⅲ,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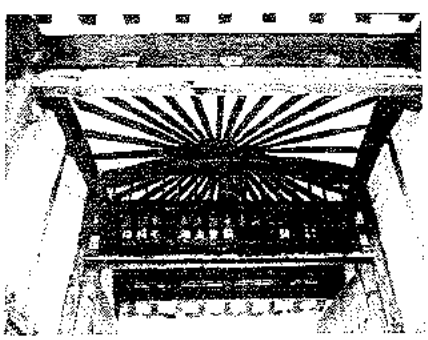

⑧ 전북 임실의 정문

이 가빈과 유사한 것에 초분(草墳)이라는 장법이 있다. 이것은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도서지방에서는 해변가에) 이엉을 덮은 관을 삼년간 두었다가 살이 썩은 다음 뼈를 추려서 다시 장례를 치루는 풍속으로 지금도 도서지방에서 행하여진다. 가빈법이 초분장으로 변하였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별개의 문화적 양상인지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충신이나 효자 그리고 열녀(烈女)가 난 경우 이를 기리기 위해 임금이 붉게 칠한 판액(板額)에 충, 효, 열과 직함, 성명을 새긴 것

⑨ 전남 영광 김씨집 대문위에 세운 정문

을 내렸다(이를 정려, 旌閭 한다고 부른다). 이것을 받은 집에서는 집문 앞이나 마을 입구에 문을 따로 세우고 이것을 달아두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대문의 위에 걸기도 하였다. 또 자손이 번창해지면 정각(旌閣)을 따로 짓고 그안에 앞의 현판을 걸거나 내용을 새긴 비석을 세워 두었다. 그런데 앞의 영광 김 씨 집에서는 삼간의 대문을 세울 때 중앙 네 귀의 기둥을 높이 올리고 정각을 꾸몄다.[16] 대문채 위에 정각을 세운 이러한 예는 아마도 이 집 하나 뿐일것이다.

⑯ 내글, 전남지방의 가옥 ①영광지역, 호남문화연구 10집 1979

정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과거(小科)에 급제한 이가 나왔을 때 이를 자축하고 널리 알리는 뜻에서 마을이나 집앞에 표적을 세워 두는 일도 있었다. 앞의 정읍 김 씨 집에서는 대로 만든, 차양이 너른 큰 우산 모양의 소죽(어원 불명)을 세워 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에서는 김 씨 집 앞을 소죽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17]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깝질을

하얗게 벗긴 소나무를 마을 입구에 세워둔 것을 1977년에 전북 임실군 둔남면 둔기리에서 본 일이 있으며 영광의 김 씨 집에서는 이와 같은 소나무 위에 나무로 깎은 새를 얹어두었다고 한다. 이로써 생각하면 앞의 임실의 것에도 원래 새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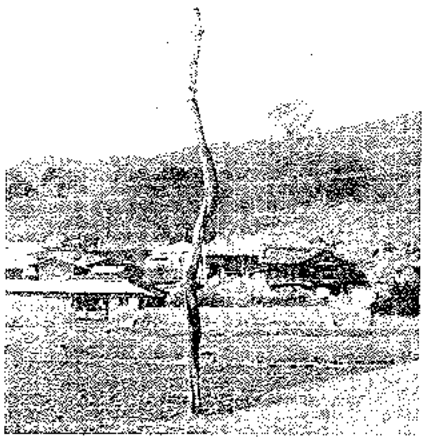

⑯ 전북 임실군 둔남면 마을입구에 세운 솔대

임실과 영광에서는 이를 솔대라고 부르는데 이 희승의 국어사전에는 솟대의 항 ①의 설명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을 입구에 높이 세우던 붉은 장대. 그 끝에는 푸른 칠을 한 나무로 만든 용을 달았음"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⑰ 내책, 정읍 김씨집.

월화당 미술문고 58, 1980

호남과 영남의 상류가옥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의 문화에는 여러가지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상류가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두 지역 상류가옥의 평면을 비교해 보자.

나는 지금까지 전북지방의 상류가옥을 13호 조사하였는데 주건물(안채나 사랑채)의 평면이 일자형(一字型)으로 구성된 집이 7호, ㅁ자형으로 된 집이 4호, 그리고 나머지 두 집은 ㄱ자형 집이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에는 17호 중에 일자형집이 15호이고 나머지는 ㅁ자형이었다.

이를 더하면 결국 호남의 상류가옥은 일자형 가옥이 73.33%를 차지하며 ㅁ자형이 20%를 그리고 ㄱ자형은 극소수에 지나지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영남지방의 상류가옥은 대부분 ㅁ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 지방에서는 예전의 곡식을 되면 말이 모말이었으므로 ㅁ자형 집을 말집이라고 하는데 나는 영남의 상류가옥중에 ㅁ자형이 아닌, 일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가옥의 예를 단지 경남 영산의 신 씨 집에서 보았을 뿐이다). 말집의 경우 ㅁ자 부분이 안채이며 ㅁ자의 마지막 획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랑채를 이룬다. 건물의 배치면에서 볼 때 일자형 건물을 위주로하는 호남식은 분산형이고 영남의 ㅁ자형은 집약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분산형은 집약형에 비해 너른 대지를 필요로 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ㅁ자형은 옹색한 대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면형이다.

영남지역 상류가옥의 평면이 ㅁ자형을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택지를 너른 평지보다 이에서 떨어진 계곡이나 능선에, 마을 입구보다는 후미진 안쪽에서 찾는경향이 강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은둔적인 생활을 이상으로 삼는 유교의 선비사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지방의 상류가옥 중에 물이 나지않는 집이 더러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에서는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직 물을 길어대는 일이 유일한 업무인 물담사리가 한 두 사람 따로 있게 마련이었다.

비탈진 언덕에 집을 짓는 경우, 자연지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는 보통 삼층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안마당과 안채의 대청 사이는 2m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예사이며 이 때문에 주인이 마루 끝에 서서 하인을 부릴 때에는 주인의 발끝이 하인의 머리 위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상류가옥은 평민이 사는 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건물의 평면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지니는 분위기도 두 지역이 서로 다르다. 영남에서는 건물의 치레보다는 실질을 위주로 하는 경향이 강해서 투박하면서도 강건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호남의 가옥은 건물자체도 조화를 이루고 있거니와 그 화사한 치레 또한 한 눈에 들어난다.

보기를 들면 앞의 손 동만 씨 집안채 대청 전면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의 길이는 같지않다. 그것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주추에, 기둥의 길이를 맞추어서 하나는 길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짧아진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둥은 주추를 위해 세워진 결과가 된 셈이다. 아마도 이러한 예를 호남의 상류가옥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호남에서는 가옥 자체 뿐만 아니라 주위의 풍광(風光)을 가꾸는 데에도 정성을 다 하였다. 마당은 물론 담 안팎에도 화초와 나무를 심었으며 담장에 쌓은 돌이나 굴뚝의 모양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서 조화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하였다.

나는 집 울 안에 또 하나의 자연을 가꾸거나 자연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들어난 보기를, 조선조 말기에 판소리 연구와 이에 대한 후진 양성에 일생을 바친 동리(桐里) 신재효(1812-1884) 선생이 기거하던 집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분은 고창읍의 한쪽으로 흐르는 시내물에 도랑을 내어 그 한 줄기가 집안으로 들어와 대청 밑으로 흘러서 다시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내가 갔던 1967년에 이미 물길은 막히고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안내자의 이야기를 듣고 동리 선생은 과연 신선이었구나 하는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정읍의 김 동수 씨 집에서도 가느다란 물길을 멀리서 끌어서 사랑채 전면의 돌담을 따라 흐르도록 하였는바, 이 물에 손을 씻거나 하였다고 한다.

생활관습에도 영남과 호남지방은

대조를 보인다.

영남의 상류가정에서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집안 살림의 내용을 잘 알게되면(보통 5~10년 사이) 시어머니는 살림권(主婦權)을 그네에게 내어주는 동시에 방까지도 서로 바꾸는 일이 있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큰방으로 옮아가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쓰던 머리방으로 물러난다. 만약 3대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맨 윗대의 나이 많은 이는 하인이 쓰는 여행랑방으로 물러나온다. "머리방이 큰방 농 들어낸다"는 이 지방의 속담은 이러한 생활관습의 표현인 것이다. 반드시 안채에서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채에서도 젊은 주인과 노인은 방을서로 바꾸며 가장권(家長權)도 이에 따라 옮겨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남에서는 부모가 자기 생전에 주부권이나 가장권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으며 방을 바꾸지도 않는다. 오히려 호남의 어떤 곳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방을 비워두었다가 대상이 끝난 뒤에라야 며느리가 큰방을 쓰기 시작한다. 죽은 뒤 3년간은 죽은 이의 혼이 그 방에 머물러 있다고 믿는 때문이다.

두 지역 사이의 이러한 생활관습상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영남의 관습은 나이 많은 이가 재산이나 가장권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별채나 안채의 구석방으로 물러나는 일본의 은거제도(隱居制度)와 유관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또 제주도의 경우 나이 많은 노부부가 안채를 젊은 아들에게 내어주고 바깥채에 따로 나와 식사는 물론 모든 경제생활을 아들네와는 별도로 행하는 관습도 이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은거제도가 서부일본,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시고주(四國)나 규우슈(九州)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부권을 이양할 때에는 치마 허리끈에 차고 지내던 곡간이나 도장등의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는 것으로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삼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밥주걱으로 대신한다. 열쇠 꾸러미보다는 밥주걱쪽에 현실성이 더 있다고 하겠다.

⑪ 불을 붙인 고콜

시어머니의 방과 며느리방의 규모나 치장에도 두 지역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호남의 상류가옥에서는 두 방 사이에 이렇다할 격차가 없는 것이 보통이나 영남의 일부 가옥에서는 큰방의 규모가 2간 내지 3간임에 비해 머리방은 단 간 규모이며 천정은 서까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나는 연등천정이고 바닥에는 장판을 깔지않고 흙바닥에 자리를 깔아두기도 한다. 따라서 며느리방의 규모, 내부의 치장 등은 하인방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영호남을 막론하고 상류가옥 주위에는 서너 간의 초가를 여러채 세우고 결혼한 노비 들을 거주시켰다. 안사람은 주인집의 안채에 들어가서, 그리고 바깥사람은 논 밭의 일을 하였으며 세끼는 모두 주인집에서 먹었다. 상류가옥 주위에 이러한 집을 짓는 것은 노비 들을 불러쓰기 편리한 이점 외에 주인집의 외곽을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일시적인 피신처로 삼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정읍 김 씨 집 주위에는 모두 여섯채를 세웠으며 사당 뒷쪽에 비밀 탈출구를 만들고 이에 가까운 집에는 노비 들 중 충성심이 가장 강한 이를 거주시켰다.

이러한 집을 호남에서는 호지집, 영남에서는 가랍집이라고 하며 이 집에 사는 사람을 가랍사람 또는 가랍것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한편 평안도에서는 이러한 집을 마가리집이라고 하였는바 호지, 가랍, 마가리에 대한 어원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상류가옥에 목욕탕 시설이 없었던 것은 매우 기이하다고까지 할만하다. 영광의 김 씨 집에는 목욕간이 따로 있었으나 그것은 남자 들이 여름에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목욕간이 없었으므로 여자 들은 여름이면 안채 뒷쪽에 큰 독을 옮겨놓고 물을 부은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으며 겨울에는 부엌안의 큰솥이나 큰 항아리에 더운 물을 붓고 역시 그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였다. 목욕은 언제나 깊은 밤중에 그것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하였으며(이 사람이 더운 물을 계속 떠붓기도 한다). 여름을 제외하면 한가위와 섣달 그믐 그리고 2월이나 3월 경에 각각 한 번씩 하는 정도였다. 그나마 남자 들은 여름에 냇가에서 몸을 씻었을 뿐이고 이 외에는 제사 무렵에야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여기 저기를 닦아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

□ 한국의 전통건축

창호(窓戶)

창호(窓戶)는 창(窓)과 호(戶)의 복합어로서 호(戶)가 지게문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창호란 창과 문의 통칭이 된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창호라 할 때에는 창과 문이라고만 국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한국 건축에서 문(門)의 일종인 대문들은 창호의 의미에서는 제외되고 또 어떤 경우는 창이면서도 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다. 고로 이러한 혼란을 막는 데는 전통적으로 창과 문의 기능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이들을 만든 목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 된다.

즉 대목(大木)이 전담한 문, 예컨데 평대문(平大門), 솟을대문 등은 문으로, 소목(小木)이 전담한 창과 문은 창호로 부른다.

한국 건축에 언제 어떠한 모양의 창호가 발생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선사시대(先史時代) 수혈주거(竪穴住居)에서 가장 원시적 단계의 문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며 기록상으로는 후한서 동이전 마한조(後漢書 東夷伝 馬韓條)에 나타난 "作土室形如家 開戶在上…"의 호(戶)가 바로 최초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의 호(戶)도 수혈주거(竪穴住居)의 호(戶)로서 원시적 단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삼국시대(三国時代)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즉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画 : 安岳3号墳, 安城洞大塚, 馬線溝1号墳) 들에서 창과 문들을 볼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구조양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백제(百済) 동탑편(銅塔片)에서는 뚜렷이 교창(交窓)의 형태를 볼 수 있고, 이로써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널리 사용된 교창(交窓)이 이미 백제시대(百済時代)부터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신라시대(新羅時代)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창호(窓戶)로는 우선 가형토기(家型土器)에서 "빗장"의 형태와, 창호(窓戶)를 달 때의 장부와 둔테 형식을 볼 수 있고, 다음 고원사지(高遠寺址) 부도(浮屠) 등에서 "살창"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 오면, 비로소 창호의 구체적 실물을 볼 수 있는 바,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의 정자(井字) 살창호와 수덕사(修德寺) 대웅전(大雄殿)의 빗살창호가 그것이다. 특히 이들의 돌쩌귀 부착장소나 서까래에 매단 돌쇠를 생각하면 들어열개 개폐법(開閉法)을 쓴 것으로 이 개폐법이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계승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창호구조가 어느 시대보다 풍부하고 그 형식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창호의 입면(立面)과 살짜임새에 의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살창 : 창울거미에 수직으로 살을 세운 창으로서 살의 단면은 사각형·삼각형·육각형·팔각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창은 구조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시대(伽倻時代)의 가형토기(家形土器)에서부터 보인다.

(2) 교창(交窓) : 주택의 부엌이나, 대청 분합문 상부에, 또 사찰(寺刹)·왕궁(王宮) 건축에 널리 쓰이며, 살짜임새에 따라 일반교창과 아자교창(亜字交窓) 등으로 나뉜다

(3) 띠살창(細箭窓) : 띠살문(細箭門) 에서처럼 울거미에 수직으로 가는 살들을 좁은 간격으로 끼우고 여기에 수평으로 다섯 줄씩 살을 짜 넣은 창이다. 일반주택·사찰·궁전의 잇문으로 또는 창으로 많이 사용된다.

(4) 용자창(用字窓) : 용자(用字) 모양과 같이 살짜임새가 생긴데서 생긴 이름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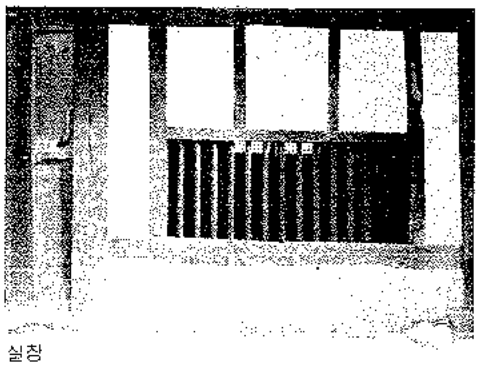
실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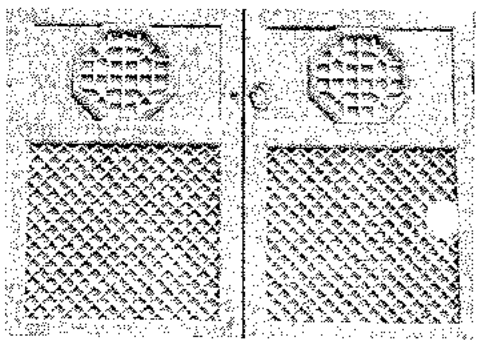
성면장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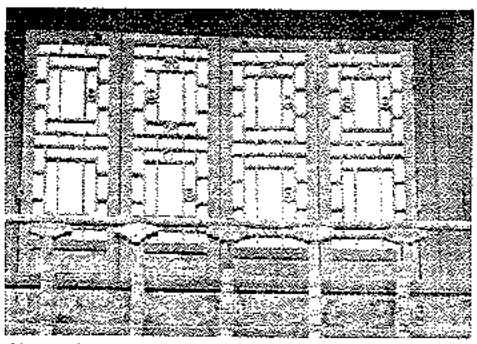
아자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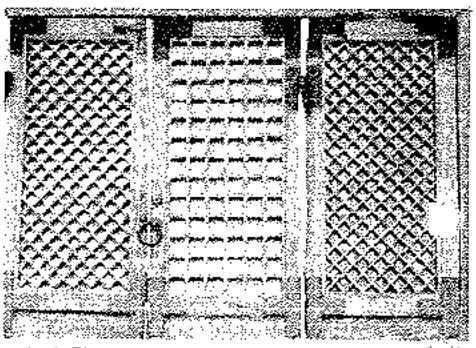
교살과 정자꽃살

"흙의 건축연구 붐"

흙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건축자재. 현재도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흙집에 살고 있다.

「흙을 이용한 건축을 되살리자」는 학술세미나와 주장 등이 최근 파리에서 일기 시작했다.

「건축가들이 흙의 건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다. 에너지 위기는 흙의 건축연구를 촉진시켰다」고 2년에 걸쳐 학술세미나장의 흙의 건축 전시회를 준비한 장·데디에씨는 말하고 있다.

흙의 건축은 가마에서 굽지않고 햇볕만으로 말린 벽돌과 찰흙을 써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풍피두 센터 높이의 2배에 달하는 바벨탑도 흙만으로 세워졌다.

로마제국이 리용에 골족의 수도를 건설할 때도 흙만을 썼다.

흙의 건축의 전통은 예메니 사막의 건물이나 팀부크투탑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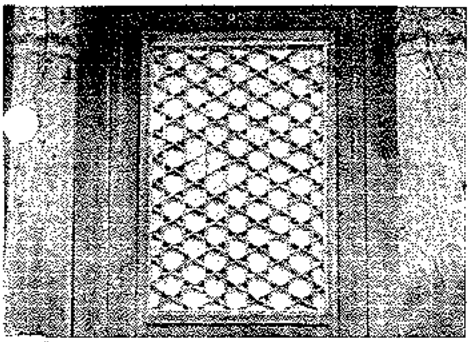

빗꽃살 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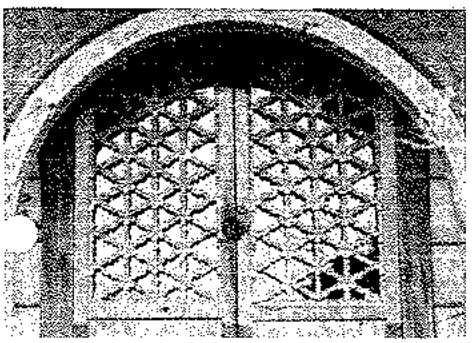

소슬빗꽃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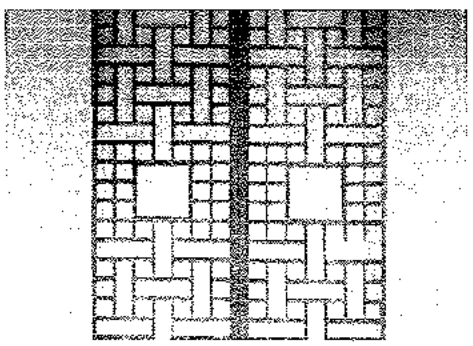

숫대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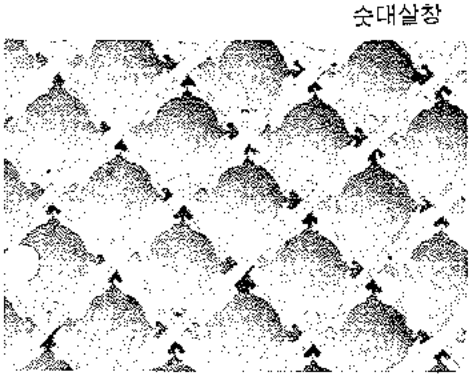

꽃살창

창호도 창과 문으로 혼용되는 바, 주택에서는 특히 행랑에서, 사찰에서는 승방에서, 궁궐에서는 내전(內殿)등에서 사용된다.

(5) 아자창(亞字窓) : 아자(亞字)에서 온 형태로 주택, 특히 안채의 방(房)·사찰·내전(內殿) 등에 널리 사용된다.

(6) 완자창(卍字窓) : 아자창(亞字窓)과 같은 용도로 이 역시 완자(卍字)에서 온 이름이다.

(7) 정자(井字)살창(窓) : 고려시대 건축인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정면 창호에서 이미 본 것으로 정자형(井字形)에서 온 이름이다. 주로 왕궁·사찰에 널리 쓰이고, 또 이 창호의 살짜임새는 주택에서는 불발기나 교창(交窓)의 짜임새로 많이 이용된다.

(8) 빗살창 : 울거미에 살을 45°와 135°로 빗겨 짜넣은 창호로서 왕궁·사찰의 창호로 널리 쓰인다.

(9) 솟을빗창살 : 울거미에 수직의 살과 30°와 150°방향의 살들로 짜넣은 살창을 말하는 바, 일반으로 이 살들 위에 꽃을 새겨 넣은 솟을빗꽃살창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사찰의 정면 창호로 사용된다.

(10) 숫대살창 : 조선시대 산가지(算木)를 나타내는 살짜임새의 창호로서, 주택과 사찰의 승방에서 볼 수 있다.

(11) 귀자창(貴字窓) : 현존유구(現存有構)로 조선시대의 것으로 발견된 바 없으나 주택의 불발기와 들창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12) 귀갑창(龜甲窓) : 울거미에 거북 잔등 문양처럼 육각형으로 살을 짜넣은 것으로, 조선시대 관명전 진연도(觀明殿 進宴圖)와 같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귀갑창살을 변안한 창호가 사찰의 승방이나 밀양(密陽) 영남루(嶺南樓)의 불발기에서 보인다.

(13) 꽃살창 : 이 창호는 위에 말한 빗살과 솟을빗살·정자살 등의 살짜임 위에 꽃을 새겨 넣거나 꽃을 부착한 창호를 말하는 바, 왕궁과 사찰의 창호로 다양한 꽃모양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수사(淨水寺) 법당(法堂)의 창호에서는 울거미 속에 아무런 규칙적인 밑바탕의 살짜임 없이 화병에서 뻗어나온 꽃과 줄기를 살려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창호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살짜임새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창호에 복합적으로 구성될 때도 많다. 예컨대, 떠살과 골판문의 복합이라든가, 또는 중앙부에는 귀갑살의 변형으로된 팔각 불발기를 넣고 위·아래에 빗살을 짜'넣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창호의 호지법(糊紙法)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라서, 종이를 창호의 안쪽에 바른다. 따라서 한국 건축 외관에 독특한 특징을 주게 된다.

즉 한국 건축의 정면은 대부분 창호로 구성되고, 이 창호의 안쪽으로 종이를 바르기 때문에 외부로는 선적(線的)인 구성을 하며, 내부로는 면적(面的)인 구성을 하게 된다. 하얀 창호지를 배경으로 한 아기자기한 살짜임새는 극적인 선(線)의 율동(律動)을 이루며, 나무의 섬세한 나무결과도 조화(調和)를 이룬다.

그리고 이 호지법(糊紙法)은 내부공간(內部空間)에 독특한 공간정서(空間情緖)를 주니 은은히 비치는 장지의 감각이 바로 그것으로, 밝은 햇빛, 은은한 달빛으로 창호에 던져진 나무의 가지와 잎새의 그림자들은 한 폭의 묵화(墨畵)를 이룬다. 또 창호지는 유리와 달리 소리(音)를 잘 투과시켜 자연의 음향적(音響的) 투영(投影)이 이루어진다. 즉, 앞뜰 큰 느티나무의 매미 소리, 뒷뜨락 감나무의 까치 소리, 처마의 낙수 소리들은 모두 한국 건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유한 공간정서(空間情緖)이다.

또 한국의 창호는 공간에 연속성을 준다. 즉 안방·대청·건넌방들 사이는 모두 창호로 되어 이들을 열었을 때 손쉽게 공간은 연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호들은 들어열개라고 하는 독특한 개폐법(開閉法)으로 창호를 접어 들쇠에 매달음으로써 곧 내부공간(內部空間)과의 합일성(合一性)은 담장에 살창을 달고 대청에 앉아 이 살창으로 앞내음을 내다보는 한국 건축에서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미국의 뉴멕시코州의 고급 주택가에도 흙의 건축전통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이도바라 불리는 흙벽돌집이 최고급주택으로 통한다.

흙의 건축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멘트·철근·목재를 절약할 수 있어 건축비가 3분의 1로 절감될 뿐더러 보온과 냉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흙 건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흙집에 살 수 있다.

흙집은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흙의 건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리디아·밀러 여사는 주장하고 있다.

밀러여사는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45년 흙의 건축연구를 시작한 이래 5채의 흙집을 지었다.

흙집이 내구성이 없을 거라는 일반인의 선입관과는 달리 흙은 어느 건축자재보다도 오래 가고 단단한 건축자재라는게 흙의 건축가들의 지론이다.

그들은 파리에 6층짜리 흙집을 누가 세우려든다해도 이를 말릴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흙의 건축에 대해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건축설계 · 견적 · 시공에서의 공사비 인하요령

(V·E 가치공학) 방식도입을 중심으로

朴 商 浩
(석림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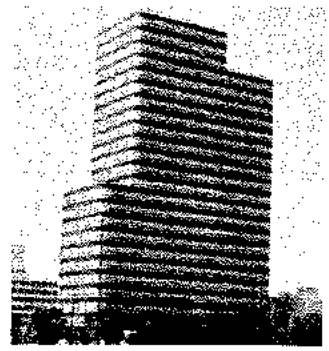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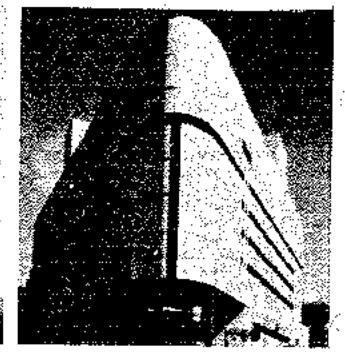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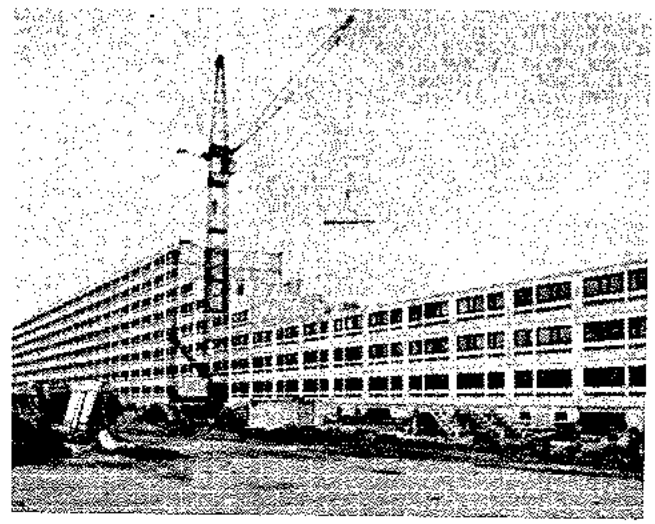

최근에 와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제적인 불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원의 고갈과 노동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기업의 운영 발전면에서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이에 선행되어 진행되는 건축설계면에서는 보다 그 중요성이 심각하다.

서민주택과 사회복지를 위한 병원등 제시설이 모두 과대한 예산을 수반하게되며 정부사업 으로써 이를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방안의 한 시안으로써 81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사설계 일괄입찰(TurneKey Base)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의 장단점과 허와 실은 고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건축인(건설, 설계)들이 배우고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최신의 기법과 공법등 각종수법이 모두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기능적이고 그 효용면에서 가치 기준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부단한 노력으로 계속 신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며 연구 노력해야 할 숙명에 도달된듯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과 각종수법과 공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격경쟁정책하에서의 승산과 잔존할 수 없는 사정에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공사비의 인하수법은 곧 우리 현실에 적합한 수법으로써 특히 건설과 설계면에서 도입 적용되어야 하며 건설업과 설계업무에서는 V·E적 생각이 필요하며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념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이익추구를 잊어버리면 그 존폐가 문제가 되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만을 추구하여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념으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해야 할것이다.

이 정당한 이익의 추구가 곧 V·E적 사고방식이며, 이는 가치공학(價値工學)이며 불필요한 군살과 녹을 떨어버리고자 하는 생각이다.

다음은 V·E에 대하여 그 중요골자를 간추려 설명한 것이다.

V·E의 정의

가치란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 장소, 시간, 목적, 동기등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치의 종류에는 사용가치, 귀중가치, 교환가치, 희소가치, 코스트가치등의 종류가 있으며 V·E란 最底의 총코스트로 필요한 機能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機能分析과 改善에 集中하는 組職的인 努力이다.

또한 V. E는 V. A (VALUE ANALYSIS) 라고 부르고 25년전 G. E의 MILES에 의해 개발된 수법이며 그후 V. E (VALUE ENG.)라고 부르고 개발해왔다.

※ G·E = GENERAL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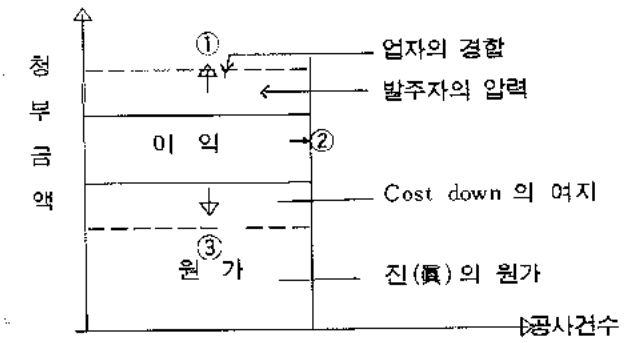

기업의 모식(企業의 模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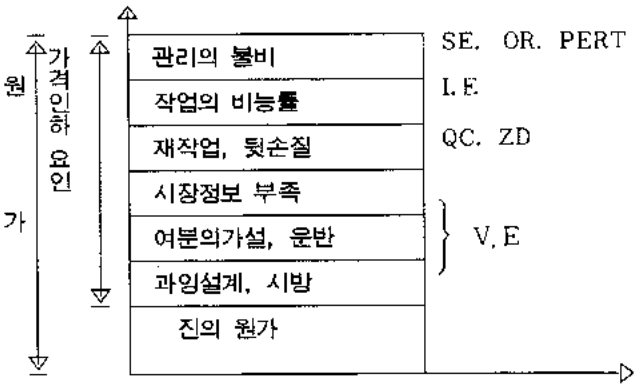

V.E 란

1) 먼저 문제의식을 가진다. (테마선정)
2) 왜 그것은 무엇때문에 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기능의 추구)
3) 기능을 만족시키는 물(物)이나 방법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해결해 간다. (개선안의 작성)

V.E기본스텝

1. 기능의 정의 { 그것은 무엇인가 / 그 기능은 무엇인가
2. 기능의 평가 { 그 가격은 얼마인가 / 그 가격은 어떤가 / 별도로 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은 없는가
3. 개선안의 작성 { 그 가격은 얼마인가 / 그것은 필요한 기능을 확실히 다 할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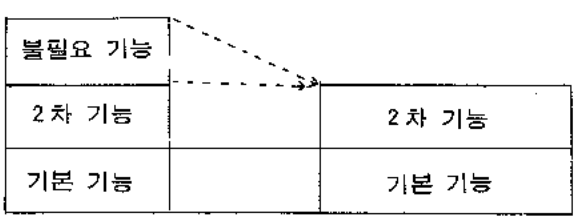

V.E전 V.E후

V.E 를 성공시키는 여섯가지 법칙

1. 정보를 철저히 수집한다.
2. 기능을 분석한다.
3. 독창력을 살린다.
4. 성과를 측정한다.
5. 공동체제를 확립한다.
6. V.E 활동을 전문화 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공개 정보원

1. 전시회, 발표회, 연구회
2. 도서관, 업계지(業界誌), 정기간행물
3. 전문업자, 전문업계
4. 카다로그, 팜플렛드, 전화부

비공개 정보원

1. 하청업자
2. 동업자의 작업장
3. 유사업자(조선, 자동차등)
4. 사외(社外)의 전문가
5. 사내의 타부분
6. 사내의 전문기능자

정보수집법

1. 정보를 산다.
2. 정보를 교환한다.
3. 앙케이트를 만든다
4. 실제로 관찰한다.
5. 면접한다.

V.E적인 각종 사고 방식

아이디어 기법
부래인스토밍법
체크리스트법
고—돈법
관련강화법
바이오니구스법
형태분석법
특성열거법 등

V.E적인 사고로서의 오즈본의 체크 리스트

1. 달리 사용방법은 없는가
2.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3. 형, 색, 운동등을 바꾸면 어떨까
4. 확대하면 어떨까
5. 축소하면 〃
6. 대용 〃 〃
7. 바꾸어 넣으면 어떨까
8. 역으로 하면 어떨까
9. 조합하면 어떨까

V. E창시자 LD마이루구이시의 열가지 가르침

1. 무슨일이든지 적어도 8가지 대체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라
2. 발파를 걸어 부셔내고, 창조하고, 세련된 것으로 하라
3. 장해물을 명확히 하고 제거하라
4.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 그 방면의 전문가를 활용하라
5. 중요한 공차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라
6. 되도록 업자의 기존 기능 제품을 이용하라
7. 업자의 숙련이나 지식을 이용하고, 이에 맞도록 하라
8. 전문적 생산공정을 이용하라
9. 이용되는 표준품을 사용하라
10. "나의 돈일때는 이렇게 쓸것인가"를 판단기준을 사용하라

건설업의 타산업과 비교한 VE의 특징

1) 개별수주공사
2) 1건 공사의 금액이 크다
3) 옥외조립 산업이다.
4) 이동 공장적이다.
5) 부품의 종류가 많다.
부품별——▷ 부위별
요소별——▷ 요구별

구축물에 있어서의 건설업 V. E대상의 구성방법과 분류

하드 V·E { 1) 구축물 (건물, 교량, 갱도등)
2) 가 설 (흙막이, 가설울타리, 사무실등)
소프트 V·E { 3) 공사관리
4) 경영일반

※ 미국방성V. E제안 50% 장려상 건설업자에게 돌린다.

건설업자에게 메릿드가 있는 V. E대상

1) 건설업자에게 직접 메릿드가 있는것 — { 가설
2) 동일 건물속에 같은 것이 다수 있을때 { 거푸집
토공사 등

3) 한번이라도 메릿드가 큰것
4) 되풀이가 기대되는 큰 시스템적인것
5) 사행방법으로서는 1회로서는 메릿드가 작으나, 단시간에 많은 테마로 V. E를 하므로써 누적효과를 바라는 방법

1) —— 예 :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숙사, 변소,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집기비품, 가대, 비계다리, 비계 거푸집, 양생설비, 가설전기, 가설수도, 흙막이 굴착, 되메우기, 양중기, 운반기계, 안전설비, 장해물 제거, 소모품, 경비 등
2) —— 예 : 병원, 호텔, 공동주택, 학교, 같은방의연속
3) —— 예 : 대규모공사의 굴착방법, 초고층건물의 양정계획 대량콘크리트의 타설방법
4) —— 예 : 현장의 장비운반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관리시스템화, 거푸집 시스템와 개혁 현장의 공사관리시스템.

가설공사 V .E

현장에서 이익을 올리기 위한 요령

1) 설계내용, 시방변경
2) 자재, 외주등의 조달의 노력
3) 가설 계획의 옹졸
} 현장에서 직접이익

4) 노무의 출역을 적게한다.
5) 재료의 운반가격을 낮춘다
6) 재료의 허실을 줄인다
7) 관리 COST의 삭감
} 하청업자 계약습관

설계도의 V. E

설계도의 기능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하는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계도에 표현하는 것도 아니며 발주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하는것이다.

발주자의 선적(線的)인 정보를 시공자에게 이해되게 면적(面的) 정보로 정보변환하는 것으로 도면이나 시방서의 정보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공자는 이 면적 정보를 다시 선적(線的)정보로 변환해 가는 것이다.

설계자는 공법지식을 가지고 건축비 감각을 항상 인식하고 VE적인 생각으로 설계자체와 설계방법을 보다 좋고 싸고 빠르게 보다 쉽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

会員作品

- 삼익부산비치타운 / 金 龍 仁(주 · 상도건축)
- 종근당사옥 / 姜 雪 寬(예건사합동건축)
- 삼익주택사옥 / 李 雄 培(삼익환경건축연구소)
- L씨주택 / 金 浩(주 · 부림종합설계)
- 원주새마을협동유아원 / 朴 世 振(박건축설계사무소)

① 삼익부산 비치타운
② 종근당 사옥
③ 삼익주택사옥
④ L씨 주택
⑤ 원주새마을협동 유아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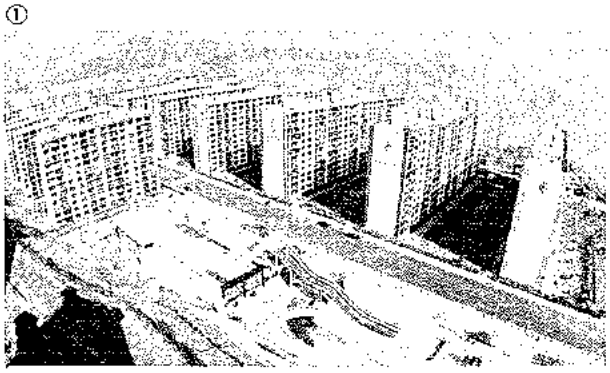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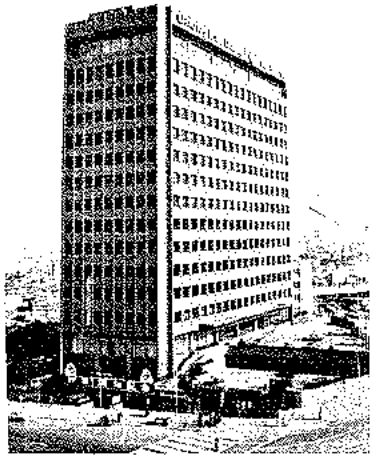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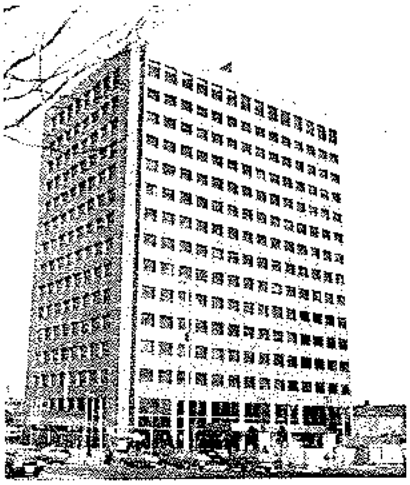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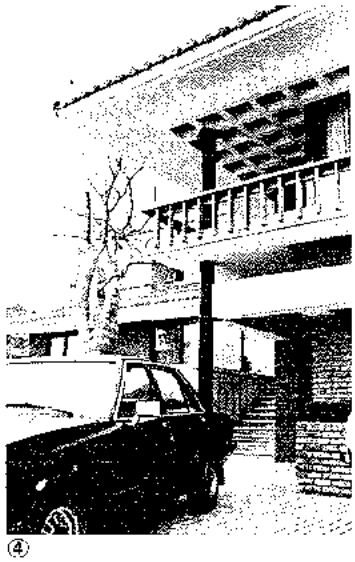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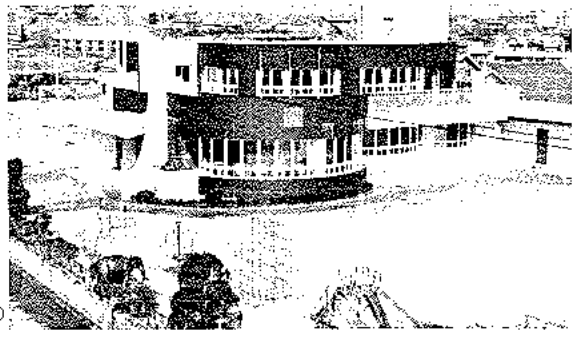

삼익 부산비치타운

金 龍 仁
(주 · 삼도건축)

소 재 지 / 부산시 남구 남천동
대지면적 / 194,636㎡
건축면적 / 34,410㎡
연 면 적 / 360,00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설계개요

본 비치타운의 부지는 해안을 매립하여 얻은 땅으로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인접하며 삼면이 바다에 면하여 비교적 한적하고 공해가 없는 최적의 주거 지역이다.

본 부지는 매립 깊이가 25m이므로 12층의 기초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양대학 건축과 교수진의 도움을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위 환경이 자연적인 장엄한 경관이어서 본 프로젝트가 휴양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임을 감안하여 이것과 주위의 자연 환경이 스므스하게 이어지도록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외관은 원색계인 백색을 과감히 도입하여 건물의 위용(?)이 주위의 푸른 바다와 잘 조화됨은 다행스러왔다.

아파트 단지의 외곽에는 해안을 따라 폭 12m의 넓은산책로를 두었고 그 안쪽으로는 쇼핑센타, 노인정, 운동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배치하여 입주자의 공동휴식공간은 가급적 해안에 접근시켜 전해의 자연경관을 조망 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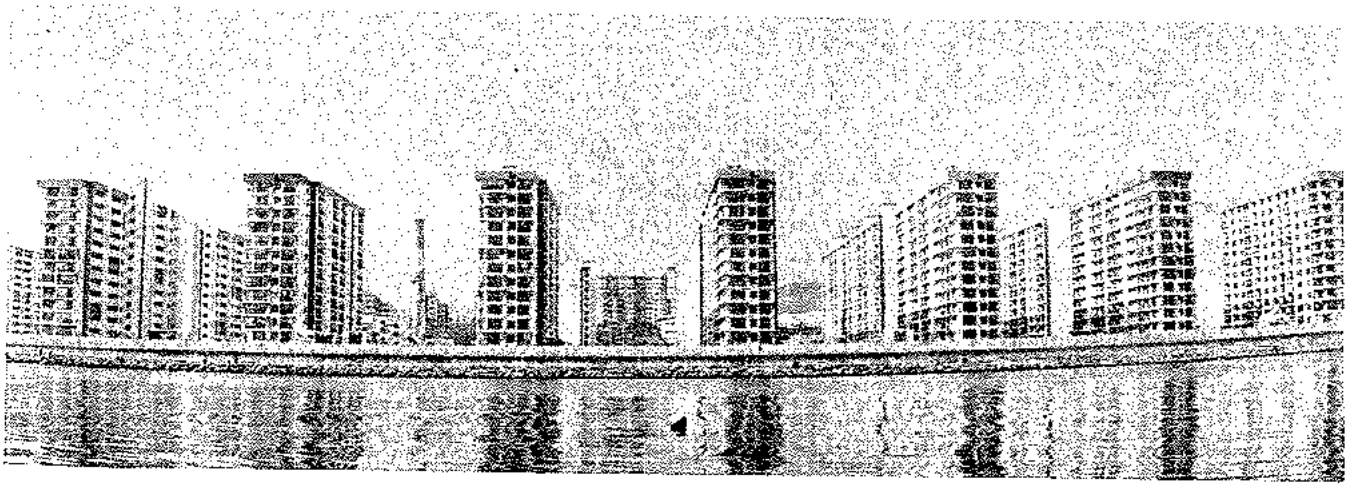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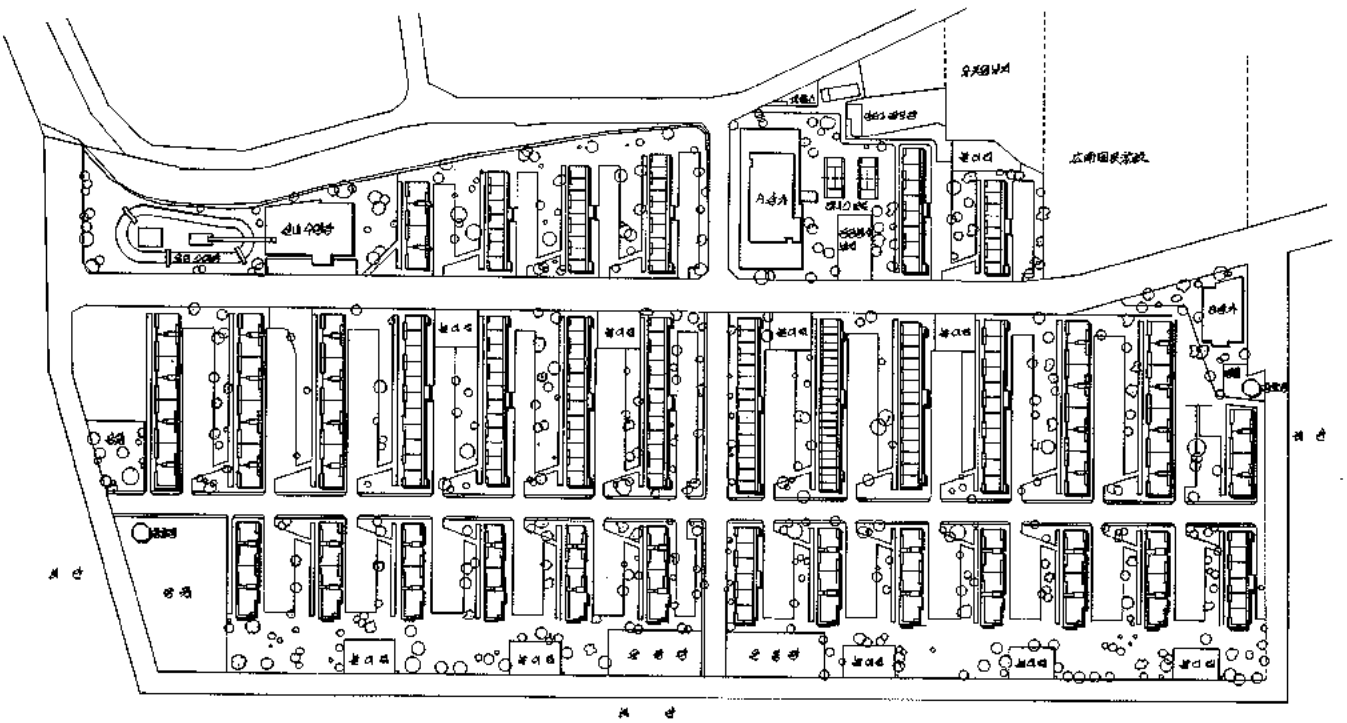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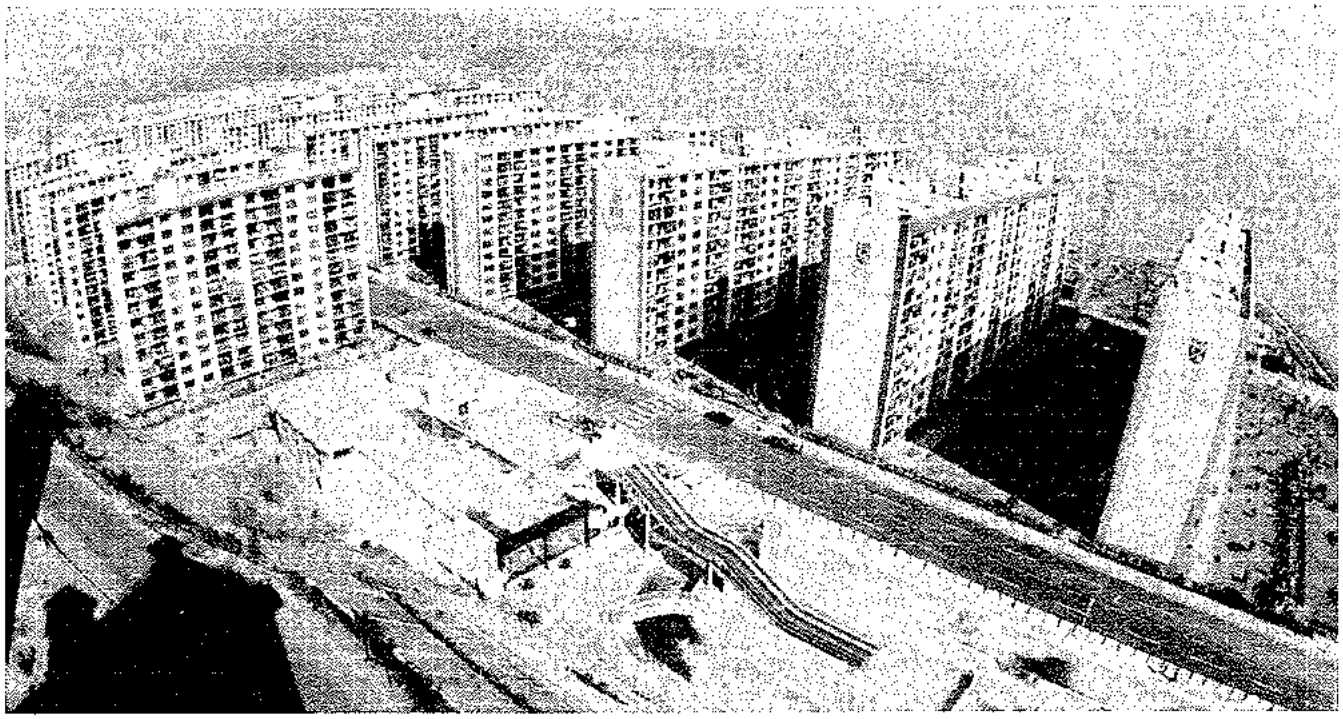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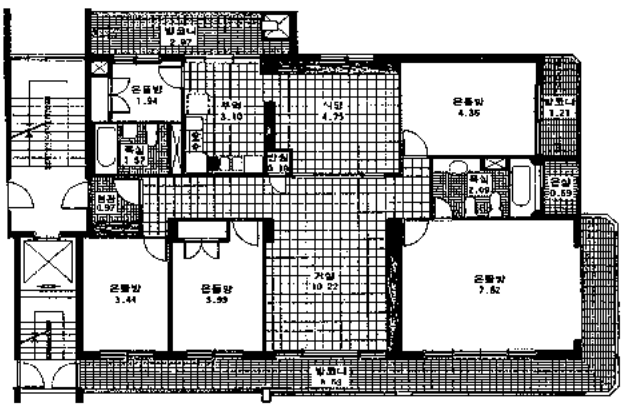

54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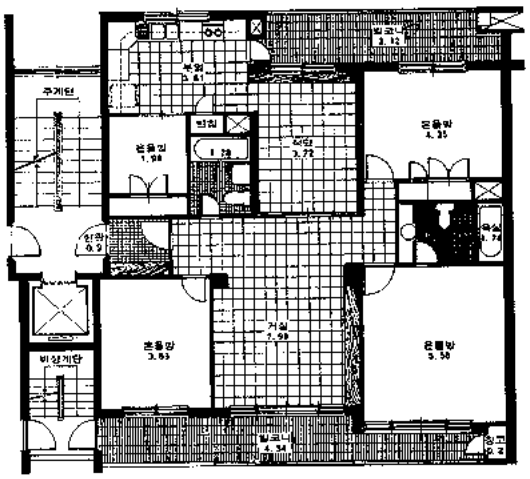

43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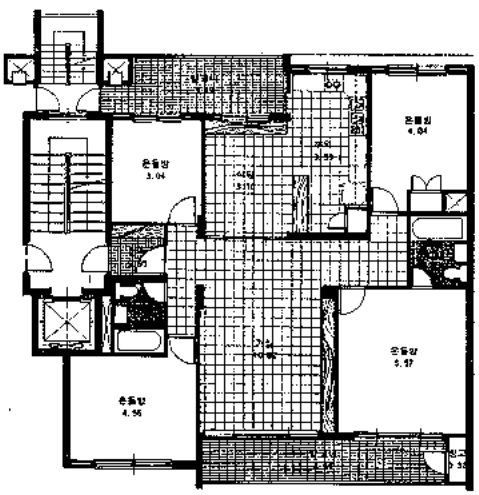

48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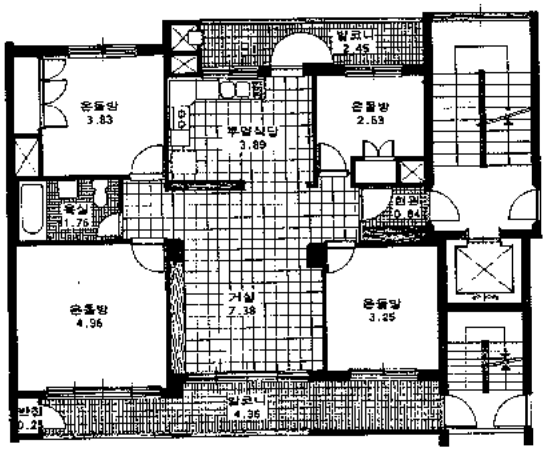

36평형

종 근 당 사 옥

姜 信 寬
(예건사합동건축)

소 재 지 / 서울서대문구충정로
대지면적 / 3,715^{72}㎡
연 면 적 / 22,567^{70}㎡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 3층, 지상1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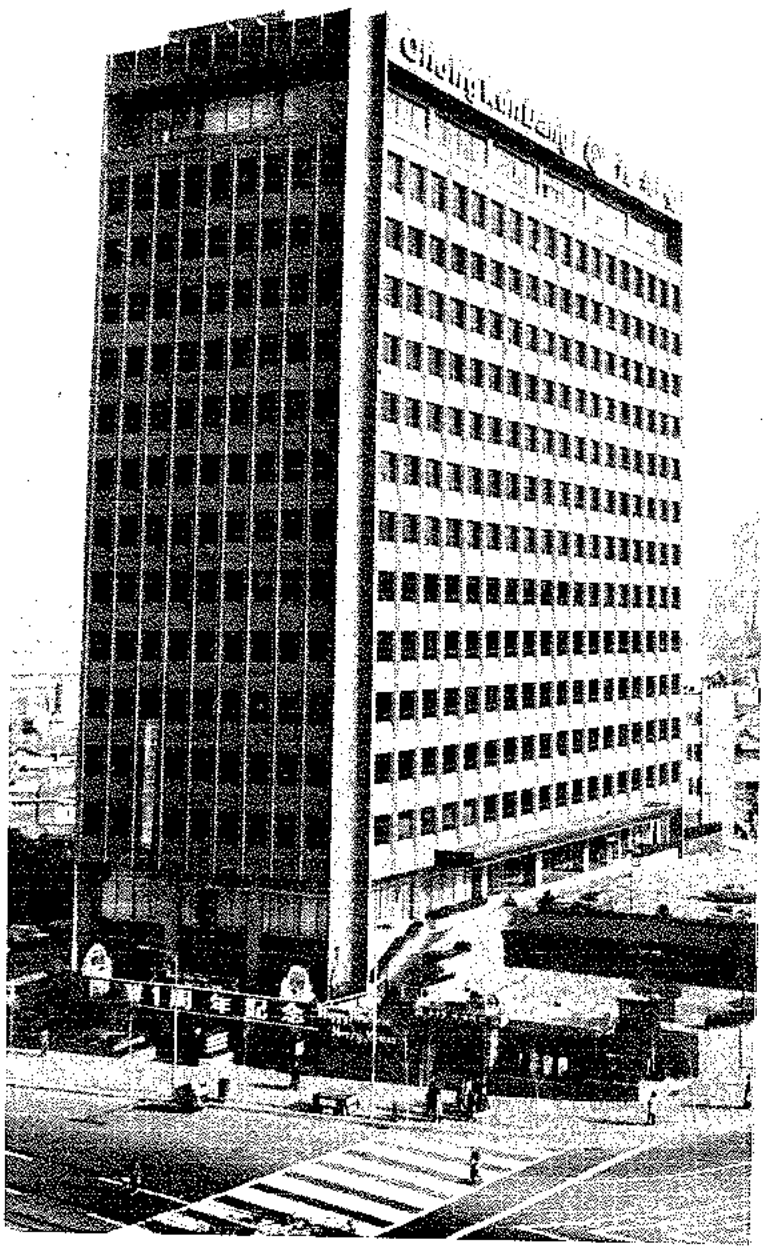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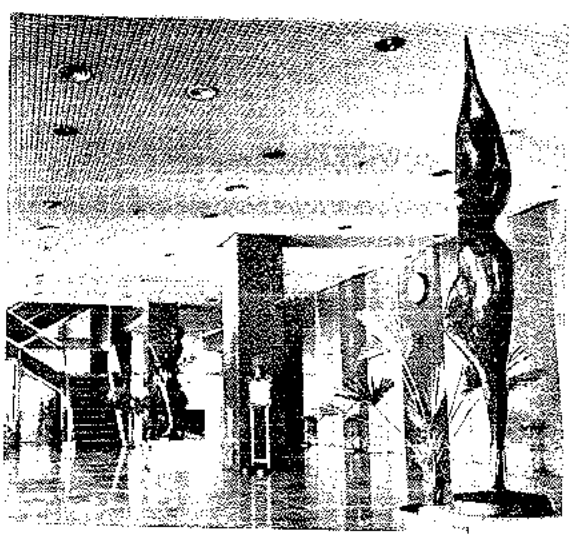

■ 설계개요

이 건물은 서울시내 중심가의 고층빌딩 群으로 부터 비교적 떨어진 곳에 서있다. 광화문과 서소문에서 마포·신촌 방면으로 가는 2개의 幹線道路가 만나는 교차로 앞에 위치한 이 건물 前面으로는 멀리 여의도 광장과 서울大橋가 眺望되고, 아래로는 아현고가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줄을 잇는다. 주위를 압도하듯 서 있긴 하지만 이 오피스빌딩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外觀構想·出入動線 편리한 어프로우치 관계, 造景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성과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다. 특히 建物軸에 대한 배치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고, 그밖에도 주위 도로면과 대지의 高低差, 특정지역의 可視部分에 대한 遮蔽設置등, 설계상의 합당한 적용에도 애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으로 합리화시킨 이 건물은 그런 면에서 어느 건물보다도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더우기 도시인에게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훌륭한 屋外空間으로서 친밀감 넘치는 광장을 제공해 주고 또한 인간적인 空間表現의 방법으로 특이한 造形施設을 두고 있는 등, 그런면에서도 이 건물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빌딩 입주자와 외래객들에게 놀랍도록 참신한 韻致를 느끼게 해주는 계단 폭포는 B1층 아케이트에 설치되어 1·2층을 연결하는 주 계단상에 있다.

러시아워에 出入動線混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2층의 前面主出入口와 측면 도로면에서 직접 B1층, 1층으로 출입이 가능하게끔 출입구가 분산되어 있는것도 이 건물의 또다른 특징이며 상대적으로 2층 현관야드를 도로면보다 높게 하여 차량과 사람의 상호 동선거리에 적합성 및 유연성을 부여한 것도 또한 장점일 것이다.

넓은 옥외 및 옥내주차장은 외래객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 피로감을 덜어주고 있다.

건물코어는 遮蔽後面으로 배치하여 훤히 뚫린 前面의 전망을 즐기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오피스공간 모듈을 빌딩 입주자로 하여금 아늑한 안정감속에 일할 수 있게 해준다.

건물 외관의 색깔은 信賴感을 바탕으로 채택되었고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빌딩의 색깔보다는 매우 活力的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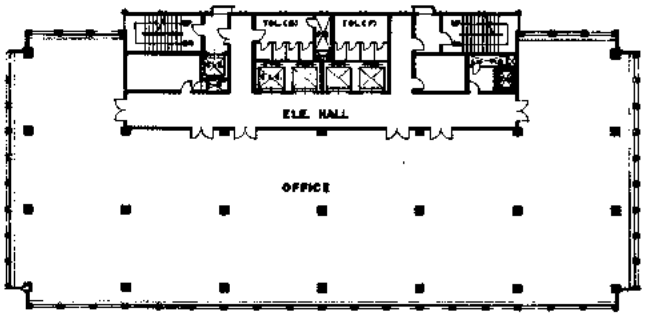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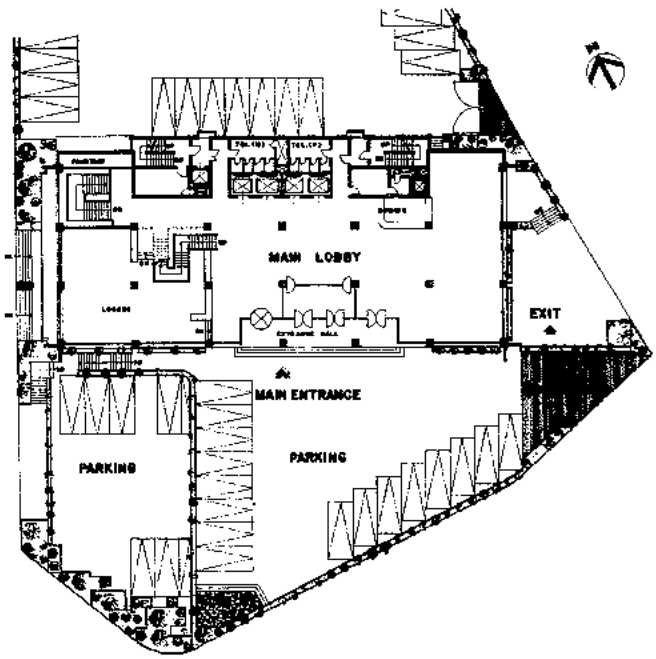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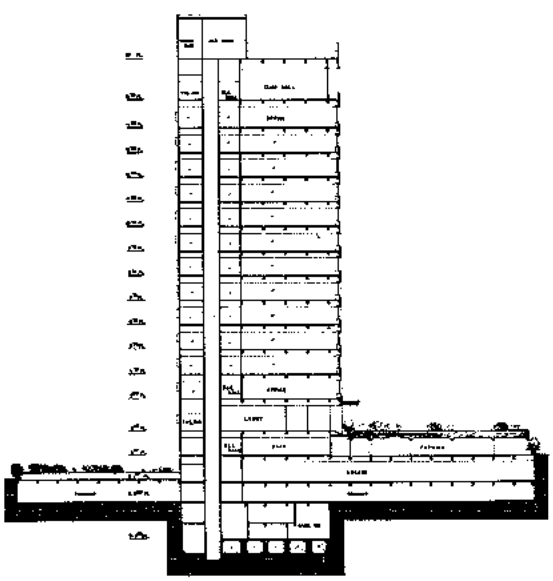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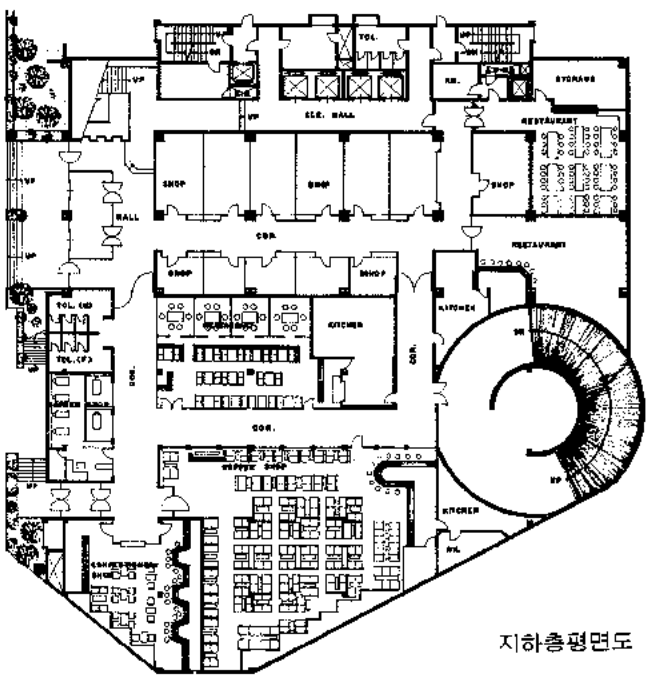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삼익주택사옥

李 雄 培

(삼익환경건축연구소)

소 재 지 / 서울용산구한강로 3가
대지면적 / 4,618㎡
건축면적 / 1,485㎡
연 면 적 / 27,162㎡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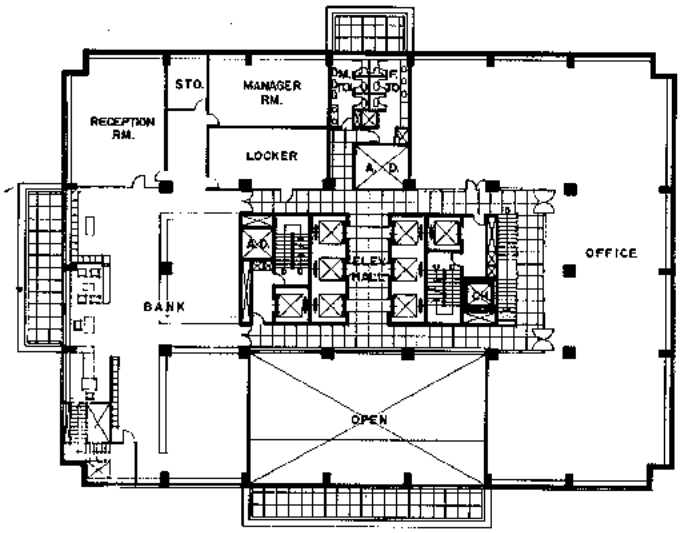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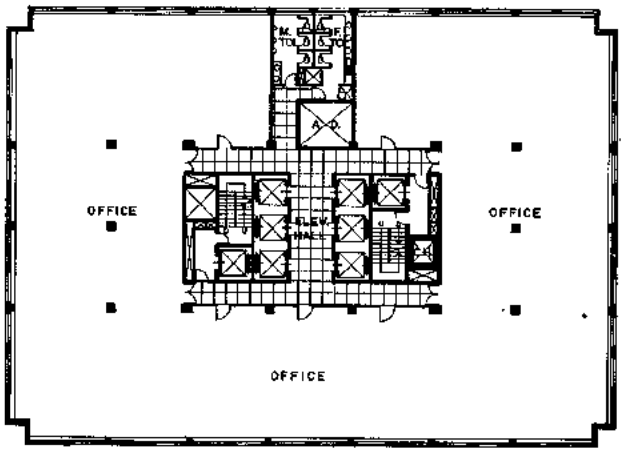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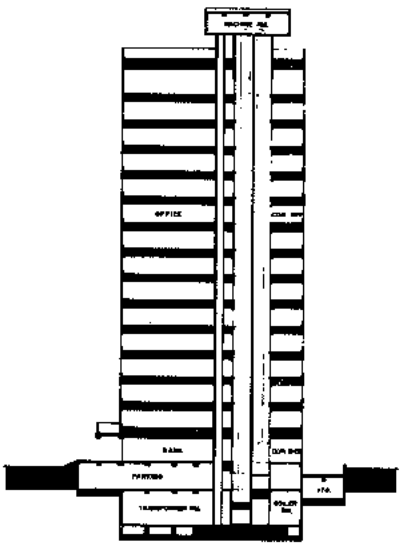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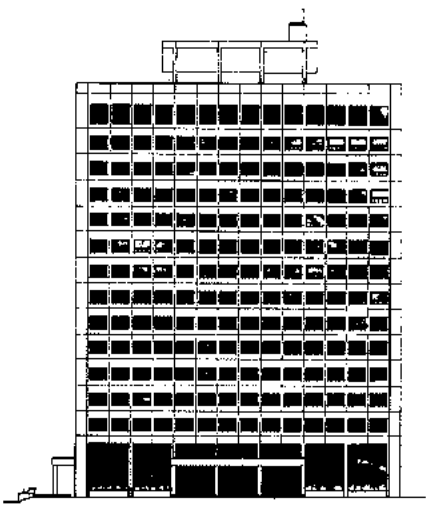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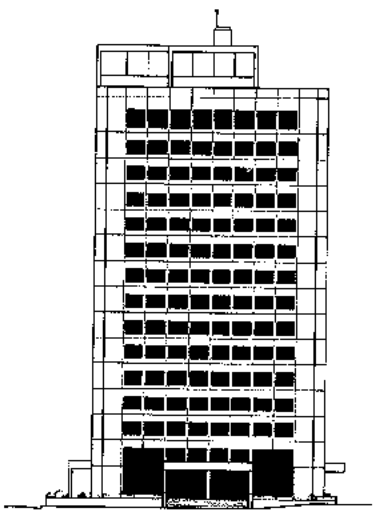

입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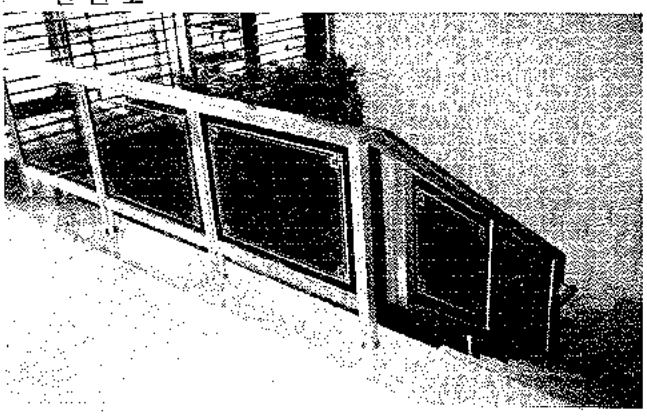

■ 설계개요

제 1 한강교를 통해 市內로 들어올때의 Facade.

周辺의 無秩序한 建物群 사이에 均衡잡히고 安定感있는 姿態로 서 있는 갈색의 Hexahedron.

P. C構造物에서 느껴지는 바와는 또다른 鉄筋Conc. 構造의 重厚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4面이 同一한 Proportion으로서의 정돈된 外觀을 試図하였다.

Main Entrance를 繁雜한 道路辺보다는 일단 餘裕있게 建設의 앞마당(?)으로 들어온 뒤 2層까지 Open시킨 Lobby로 들어설 수 있도록 位置시켰다.

快適性, 能率的인 業務環境造成 및 事務室 有効面積增大를 꾀하여 柱間 10의 Span으로 計劃하였다.

4面 모두 같은 規格의 Color Aluminium Sash와 同色調의 外裝用 磁気質 Tile로 마감하여 単純하면서도 重厚한 외부를 演出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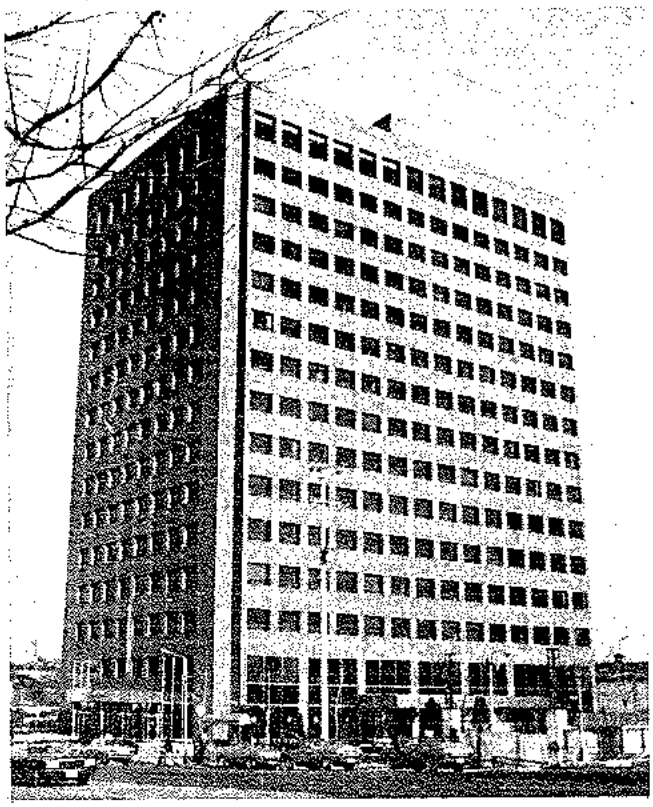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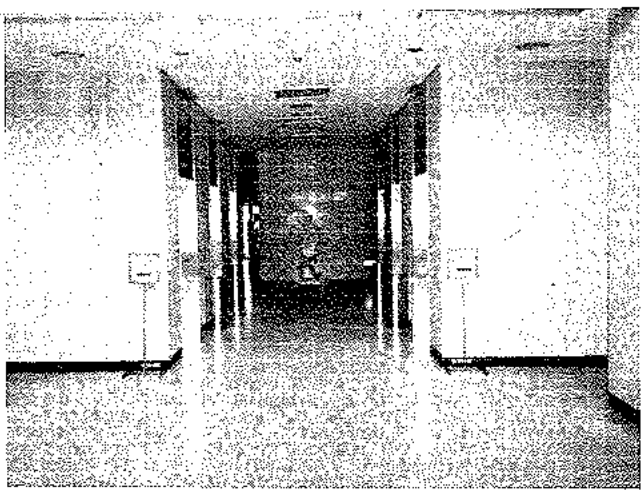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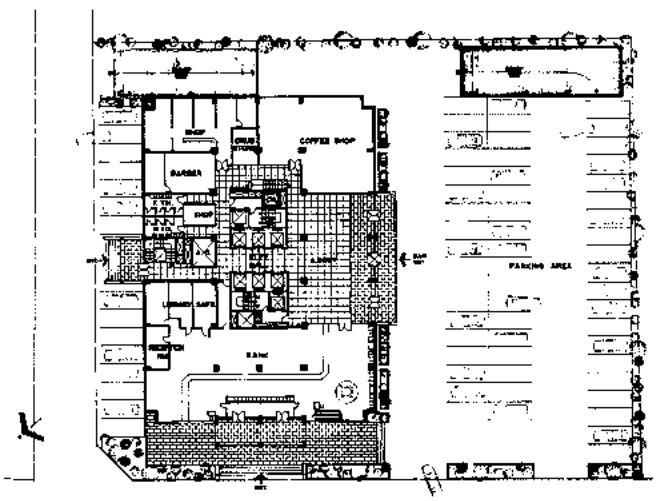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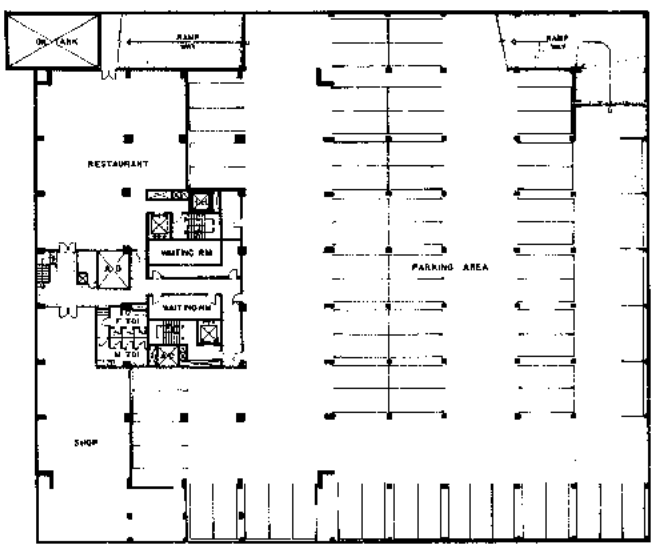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L 씨 주 택

金 浩
(주·부림종합설계)

소 재 지 / 서울강남구논현동
대지면적 / 643.5㎡
연 면 적 / 316.8㎡
외 장 / 붉은 벽돌, 붉은스페니쉬기와
구 조 / 벽돌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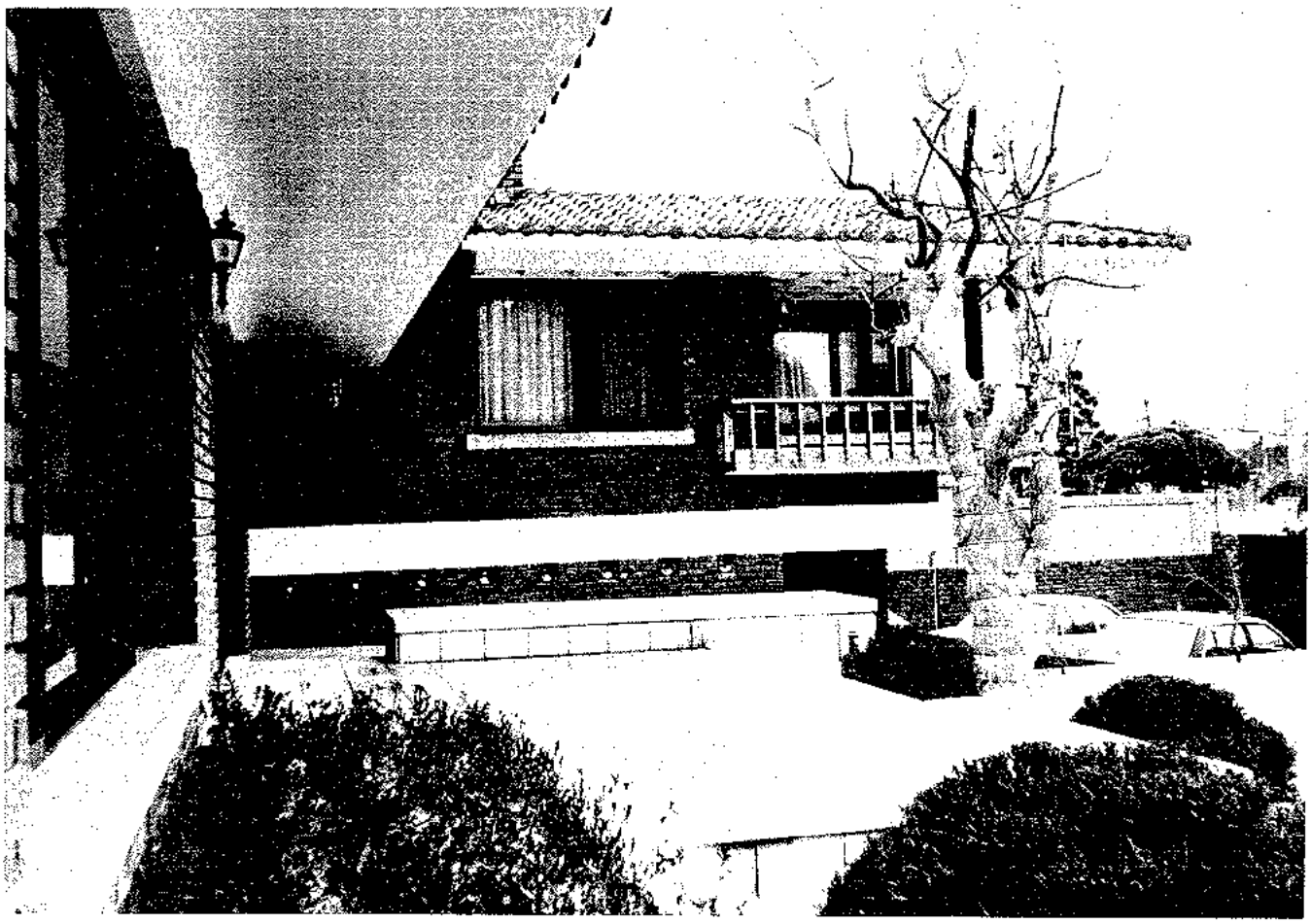

■설계개요

남북으로 놓인 장방형의 대지로 도로면과는 고저차이가 있고 비교적 조용한 남향받이였다. 대지와 도로와의 차이를 완충시키고, 내부 동선의 기능과 형태의 변화를 주기 위해 전면 부분을 Mezzanine으로 처리하여 복합시켰다.

거실은 남쪽과 북쪽에 창을 두어 전면 정원과 후정을 연결시켜 고유의 대청과 같은 공간을 시도했으며, 전면 부분에 누마루를 두어 정취를 맛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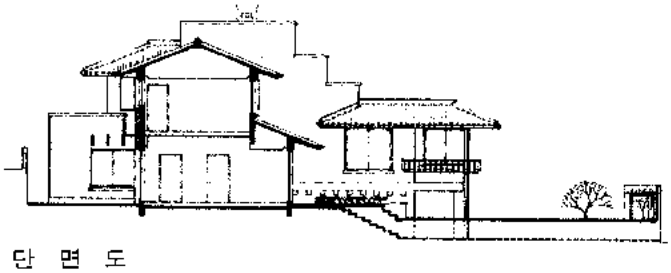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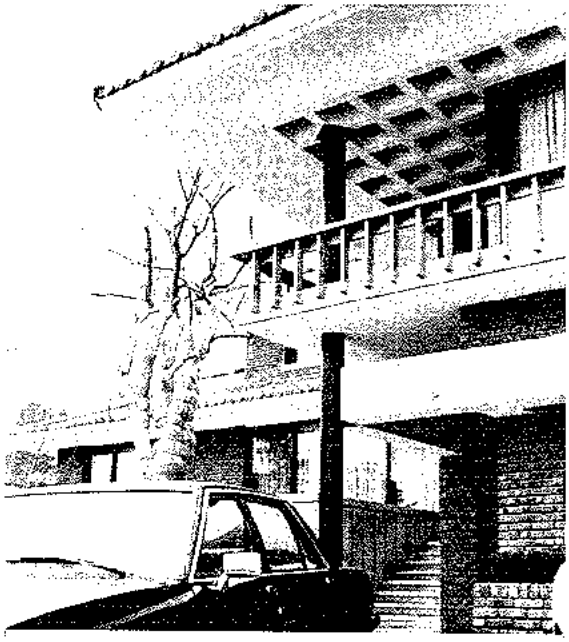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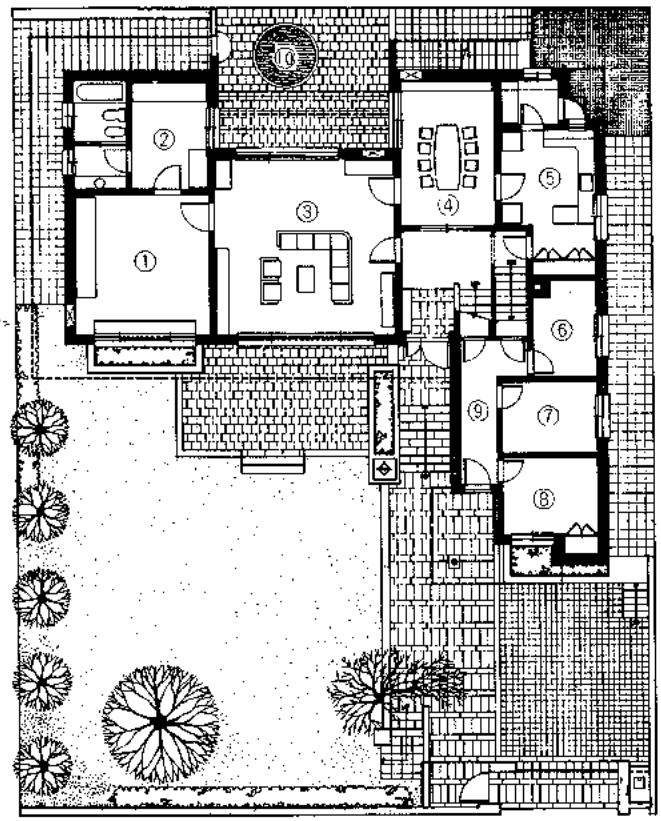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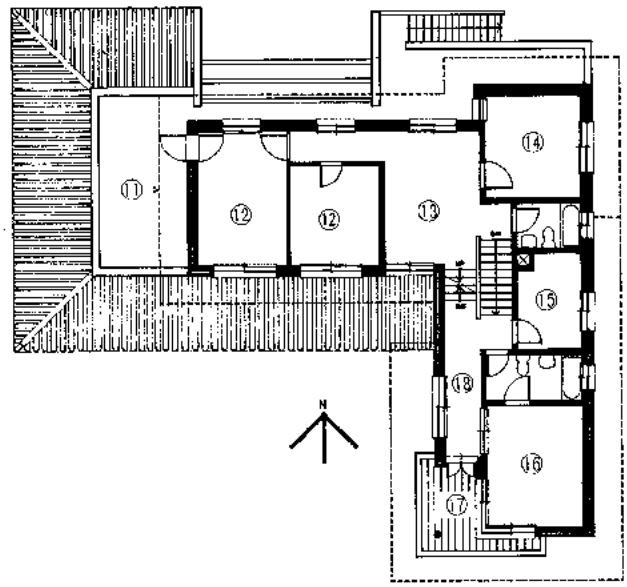

2층평면도

① 안 방
② 갱의실
③ 거 실
④ 식 당
⑤ 부 엌
⑥ 보일러실
⑦ 창 고
⑧ 운전수실
⑨ 복 도
⑩ 연 못
⑪ 발코니
⑫ 아들방
⑬ 가족실
⑭ 딸 방
⑮ 가정부실
⑯ 노모실
⑰ 누마루
⑱ 복 도
⑲ 몰탱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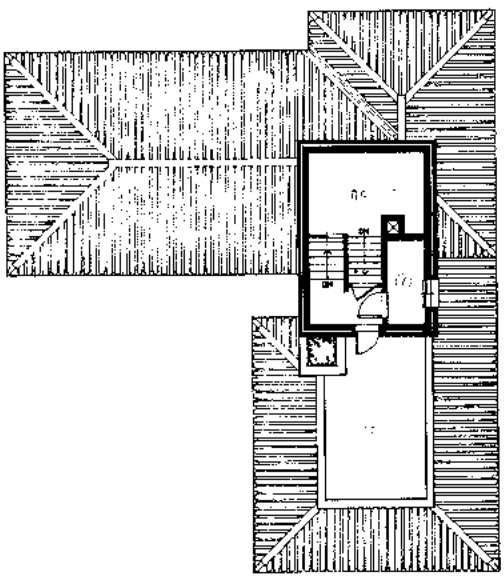

옥탑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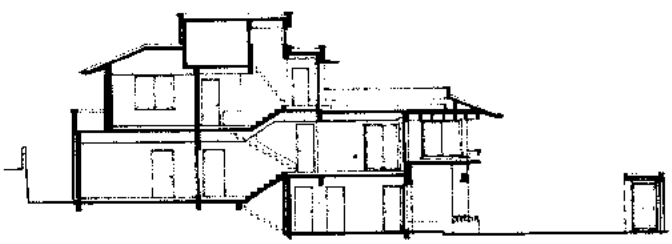

단면도

원주새마을협동유아원

朴 世 振
(박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강원도원주시일산동
연 면 적 / 150평
외 관 / 본타일, 하이사시, 우레아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 **설계개요**

이 집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설계된 유아원으로서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다 밝고, 명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에 신경을 썼으며 어린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유아실, 영아실, 보모실로 구분하고 그 실내를 투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하여 주현관을 경사로(路)와 계단으로 처리하였다.

외형은 어린이의 심리를 파악하여 둥근형으로 하였으며 자라나는 새싹들의 마음을 평온하고 둥근마음으로 서로가 한데 뭉쳐 모든 일에 성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원에는 맑은 동심을 자연과 합일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류사 및 잔디운동장, 분수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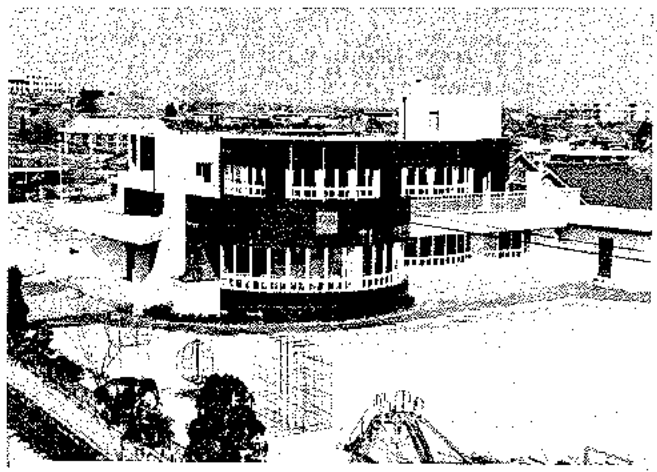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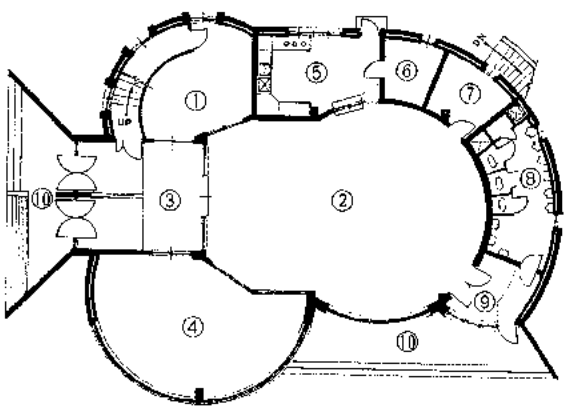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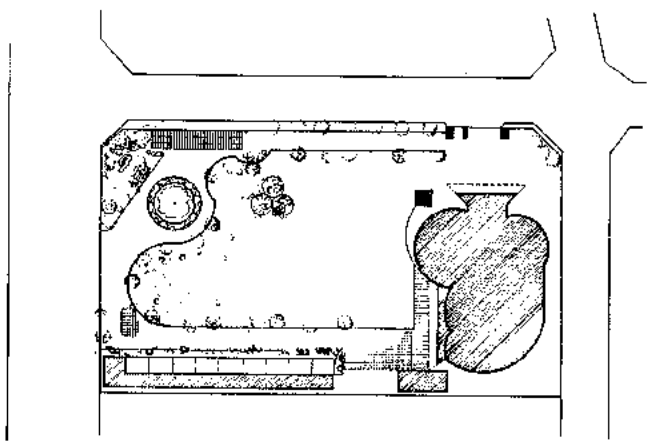

배 치 도

① 사무실 ⑤ 주 방 ⑨ 현 관
② 육아실 ⑥ 창 고 ⑩ 테라스
③ 현 관 ⑦ 사워장 ⑪ 계단실
④ 영아실 ⑧ 화장실 ⑫ 유희실
⑬ 발코니 ⑭ 베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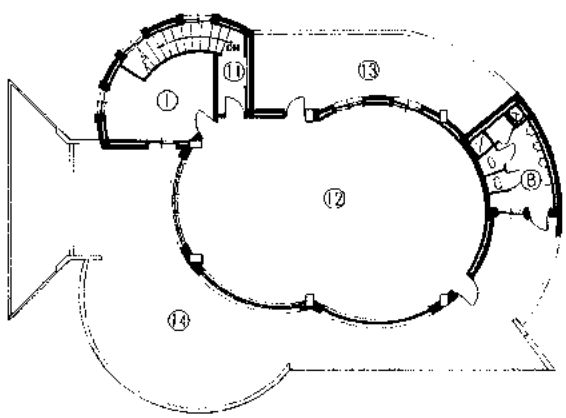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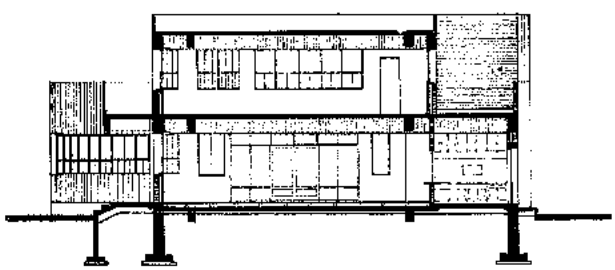

단 면 도

住宅行政 實態와 對策에 關한 研究 (完)

秋 永 守
(弘益工專 敎授)

第5章 住宅에 關한 需給

第1節 垈地選定

1. 垈地選定에 있어서의 留意할 事項

都市의 人口가 膨脹함에 따라 住宅의 需要量이 增加한 것은 勿論이지만 그보다 먼저 지을 垈地 問題가 더욱 深刻하다. 都心地에서 빈 垈地를 찾아내기란 지극히 힘든 일이며, 설사 있다하더라도 땅 값이 너무 비싸서 垈地를 求하려는 사람은 自然히 郊外로 郊外로 밀어나가게 된다. 不良한 環境속에 垈地를 選定한다면 아무리 비싼 高級 住宅을 짓는다 하더라도 日常生活에 큰 支障이 생겨 結局 아무도 돌보지 않는 貧民村의 一部가 되어 버리기 쉽다. 이와 같이 垈地를 選定한다는 것은 大端히 힘든 일이며 重要한 일이기 때문에 愼重을 기해야 한다.

1) 位置와 環境—：每日같이 通勤하는 사람들에게 交通機關이 便利한 것이 무엇보다 必要한 條件이다. 그러나 鉄道線路나 交通量이 많은 道路辺에는 먼지, 震動, 騷音 等을 잘 考慮하여야 한다.

2) 公同施設—：電気, 水道는 容易하게 끌수 있는가, 排水 関係는 어떠한가를 잘 調査하여야 하며 水道를 끌 수 없어 우물을 파야 할 때는 水質도 아울러 調査하여야 한다. 또 市場이나 附近의 病院 施設의 利用도도 살펴보는 반면에 工場, 墓地 等 不利한 環境은 可能한 멀리하여야 한다.

3) 空気와 眺望—：都必地에 비해서 郊外에서는 空気가 맑은 것이 무엇 보다 유리하다. 하루종일 먼지가 많은 都心地에서 일하다가 空気가 맑고 眺望이 좋은 自己 집을 찾아 간다는 것은 明朗한 일일 뿐더러 衛生上 으로는 重要한 条件이 된다.

4) 危険性—：垈地가 언덕 위에 있어 石築으로 造成된 境遇—：그 石築이 튼튼한가 또 뒷집의 石築에 무너질 危険性은 없는가를 잘 確因하여야 한다. 附近에 電気高圧線이 지나가는 鏡遇 危険할뿐만 아니라 라디오의 雜音이 나는 原因도 되고 이런 垈地에 집을 지을 때는 여러가지 法的 制限을 받는 것도 아울러 알아 두어야 한다.

5) 土質—：南쪽으로 약간의 傾斜가 있는 땅을 石築으로 段이 지게 整地한 垈地는 해받이도 좋고 通風도 좋으나 새로 닦은 땅은 盛土한 곳이 많기 때문에 基礎工事 때 注意를 要한다. 盛土인 境遇 地耐力이 적어서 집이 내려 앉기 쉬우며, 特히 집의 一部分만이 盛土에 걸리게 되면 집이 기울어지며 壁에 금이 갈 우려가 많다. 이럴 때는 생땅이 있는데 까지 깊이 내려파서 생땅 위에 基礎工事를 하여야 하며 이것이 상당한 깊이에 있는 境遇는 파일(Pile)을 막아서 工事를 하여야 한다. 이런 땅을 調査하려면 1m나 2m程度의 깊이까지 파봐서 確因하는 것이 좋다. 또 週囲에 우물이 있으면 附近의 主民들에게 물어서 地下水나 水質을 調査하는 것도 垈地를 決定하기 前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일이다. 用水는 水質이 좋은 것이 重要하지만 垈地의 常水面은 이와 別個이다. 垈地의 地表面은 땅 속에 常水面이 깊을수록 좋다.

이垈地의 크기와 模様—：垈地가 都市計劃 区域内에 있을 때는 用途地域의 制限에 따라서 垈地와 建物과의 面積 比率이 定해져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나중에 그 땅에는 希望하는 크기의 집을 지을 수 없는 境遇가 자주 있으니 注意하여야 한다. (垈地에 関한 法律 参照) 이러한 法的 制限이란 집을 지을 수 있는 最小限의 크기를 定한 것이지만 이와는 別途로 実際 집을 짓는 境遇 垈地의 크기는 적어도 建坪의 3培 以上은 있는 것이 좋으며 5倍 以上이 되어야 비로소 理想的인 크기가 된다. 垈地의 模様은 되도록 네모 반듯한 것이 理想的이고 矩形인 境遇 긴쪽의 길이가 짧은쪽의 길이 보다 1.5倍以内가 되는 것이 좋다.[7] 秋永守, 建築計劃, 建設研究社, 서울, 1975. pp. 105~114.

第2節 垈地에 関한 法

1. 用途地域과 制限

都市計劃 区域内의 土地에 対해서는 用途地域을 定하고 그 区別에 따라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높이等을 制限하고 있다.

1) 建蔽率—：垈地에 占有하는 建物面積의 垈地面積에 対한 比率.

2) 容積率—：建物延面積의 垈地面積에 対한 比率.

2. 住宅을 지을수 있는 用途地域

1) 住居専用地域—：2層以下의 建築物만 許容되는 住宅地로서 가장 좋은 住居環境地域이다. 一般商業 施設이나 工業施設은 一切 建築할 수 없다.

2) 住居地域—：高層住宅도 許容되는 比較的 住居環境

이 좋은 地域, 風紀에 有害한 建築物, 多数人이 모이는 建築物은 禁止된다.

3) 準住居地域—: 어느程度 商業的인 要素가 加味된 地域.

4) 商業地域—: 経済 活動의 中心地로 主로 工場에 限하여서만 制限한다.

5) 工業地域—: 商業施設, 遊戯場과 病院 等의 社会施設은 禁止.

6) 準工業地域: —大概의 商業施設과 公害가 甚한 工場은 禁止된다.

7) 緑地地域—: 緑地의 保存을 目的으로 指定된 것으로 建蔽率, 容積率을 極히 制限하고 있으며, 緑地를 利用하기 為한 不可避한 建築物, 住宅, 其他 共益上 必要한 建築物(学校, 図書館 等)만을 許容한다.

3. 建蔽率의 限度(防火地区 以外의 区域)

1) 住居専用地域—: 5/10

2) 住居地域, 準住居地域—: 6/10

3) 地域의 指定이 없는地域—: 6/10

4) 商業地域—: 7/10

5) 緑地地域—: 2/10

4.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1) 住居専用地域—: 200m²

2) 住居, 準住居, 地域의 指定이 없는 地域—: 90m²

5. 容積率 制限

1) 住居専用地域—: 80%

2) 住居地域, 地域의 指定이 없는 地域—: 300%

3) 準住居地域—: 500%

6. 垈地境界線 까지의 距離에 따른 높이 制限

地域의種類	向	制限을 받지 않는 높이 (일정높이)	建築物 높이의 限度 (H)	備 考
住居専用	眞北	4 m	H=1.5D+4	D는 垈地 境界線에서 建築物까지의 距離를 말함.
	其他	8 m	H=1.5D+8	
住居地域	眞北	8 m	H=1.5D+8	
	其他	17m	H=1.5D+17	
準 住 居	모든方向	17m	H=1.5D+17	

7. 絶対높이 制限

住居専用地域에서는 2層을 超過하거나 8 m以上 이어서는 안된다.

1) 緩和—: 1層바닥이 地表面上 0.5m以上일 때는 +8 m까지 許容, 지붕물매가 4/10以上인 建築物은 12m까지 許容.[8] 建設技術研究会, 建築法典, 建設研究社, 서울, 1980. pp. 510~511.

8. 其 他

民法(第242條) ①建物을 築造함에는 特別한 慣習이 없으면 境界로부터 0.5m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9. 登記 閲覧

1) 垈地를 購入하려면 垈地에 対한 内容을 잘 알아 보아야 한다. 即 垈地의 所有者가 누구이며 垈地가 擔保에 들지 않았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垈地가 아닌가를 잘 確因하여야 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法院의 垈地 所管 登記所를 찾아가서 登記簿謄本을 받아 보면 곧 알 수 있다. 萬若 擔保에 들어가 있으면 解決될 때까지 保留하든지 사는 것을 中止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사는 사람이 借入金을 返還하는 것으로 하고 垈地費에서 빌린 돈을 빼고 나머지를 支払하는 境遇도 있다.

2) 垈地를 빌려주고 있어도 登記를 하지 않았으면 定式으로 登記할 수가 있다. 그러나 登記되어 있는 借地権은 相當히 強한 権利이다. 이러한 権利를 다시 찾으려면 垈地主側에 有力하고도 正當한 理由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借地法에는 借地権이 消滅하고 借地権者가 契約의 更新을 請求하였을 境遇 垈地 所有者가 自己 스스로 垈地를 必要로 한다거나 其他 正當한 理由가 있어 遅滞없이 異議를 提出하지 않을 境遇 更新을 거부못하도록 되어 있다. 正當한 理由라는 것은 그 形便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事実上 認定받기란 相當히 어려운 問題로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境遇의 垈地는 그 解決이 난 다음에 사는 것이 좋다.

10. 代金의 支払方法

以上 여러가지 点을 調査하여 아무支障이 없다고 確因하였을 때에 垈地를 사기로 決定한다.

1) 먼저 契約書 2通을 作成하여 各者가 1通씩 保管하고 代金의 1/10程度를 支払한다. 残金은 名義変更 登記할 때 또는 契約書에서 約束한 支払期限에 依하여 支払한다.

2) 垈地購入時에는 垈地費, 紹介費, 不動産取得税 (目的物 価格의 4%) 및 登記料 等의 여러가지 費用이 든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둘 必要가 있다.

第3節 設計의 綜合方法

住宅을 設計하려면 優先 그 垈地의 形態 및 周囲 環境을 参酌하여 全体의 "매스"(Mass, 덩어리)를 大略 決定한 後에 차차 細部에 들어가면서 房들의 連絡関係, 집의 外観, 構造의 種類等을 決定하여야 한다. 勿論 設計를 有能한 建築家에게 委嘱시키는 境遇 建築家가 이러한 点을 充分히 考慮하여 計劃에 反映시키겠지만 모든 것을 一任하고 無関心해서는 안된다. 수시로 接觸하여 検討하고 좋은 意見을 交換하며 自身의 希望을 正確히 図面에 表示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래야만 집이 다된 後에도 후회되는 점이 없고 自己 마음에 흡족한 집을 얻을 수가 있

다. 이러한 意味에서 집을 지으려는 建築主도 設計, 計劃의 基本만은 알아 둘 必要가 있다. 平面의 統一을 解決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原則을 추려 說明해 본다.

1. 道路, 垈地, 玄關— : 垈地形態와 道路의 位置는 平面의 模樣과 玄關의 位置를 決定하는 要素가 된다.

2. 平面과 構造形態의 単純化— : 平面과 構造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凹凸이나 屈曲部를 없애도록 한다. 変化가 많은 平面은 効果的일 듯 生覚하기 쉬우나 結果的으로 工事費를 增加시킬 뿐, 때를 벗지 못한 品位 없는 집이 되기쉽다. 単純한 形態일수록 지붕이나 壁体에서 工事費를 節約할 수 있고 물마감도 便하며 기둥이나 보(梁)도 定理될 수 있다.

3. 존. 프랜잉(地帶別 計劃) — : 生活機能으로 볼 때 住宅은 団欒地帶, 調理地帶, 就寢地帶의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現在 住宅에서 일어나는 活動을 表示하면 住宅의 機能이 얼마나 複雜한가를 理解할 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이 複雜한 機能을 単純化시키기 為하여 共通性이 있는 것을 서로 묶어서 地帶別로 定理해 보겠다는 生覚이 이른바 존. 프랜잉(地帶別計劃)이다.[9] 秋永守, 建築計劃, 建設研究社, 서울, 1975. pp. 89~90.

〔図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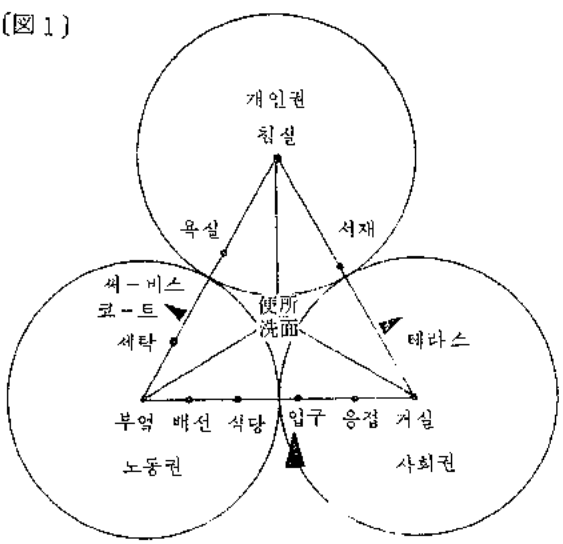

4. 動線의 整理— : 動線이란 日常生活의 움직임을 表示하는 線이며 地帶別計劃의 複雜한 線은 全部 動線을 表示하고 있다. 動線이 가지고 있는 要素는 頻度, 速度, 荷重의 세 가지가 있다.

頻度는 一定한 時間 동안에 한 通路를 얼마나 자주 來往하느냐 하는 回数를 말한다.

速度는 그 움직임이 어느 程度로 빨라야 하느냐를 나타낸다.

荷重은 움직임의 무게가 어느 만큼 되느냐 하는 点을 表示한다.[10] 安瑛培, 새로운 住宅, 宝晋斉, 서울, 1980, pp. 211~213.

〔図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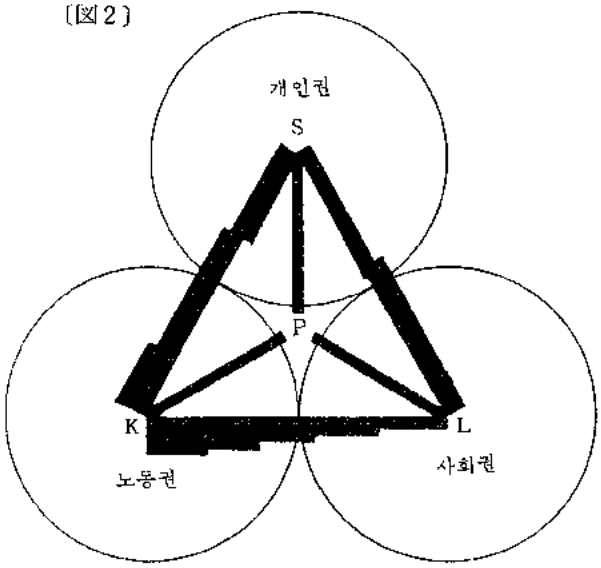

기본 동선도

이 세가지 要素의 크기를 線의 굵기로 表示해서 個人圏 労動圏, 社会圏으로 分類해서 基本動線図가 이루어진다.

이 그림을 보면 다른 動線보다 家事労動 動線이 굵고 重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安瑛培, 새로운住宅, 宝晋斉, 서울, 1980, pp. 21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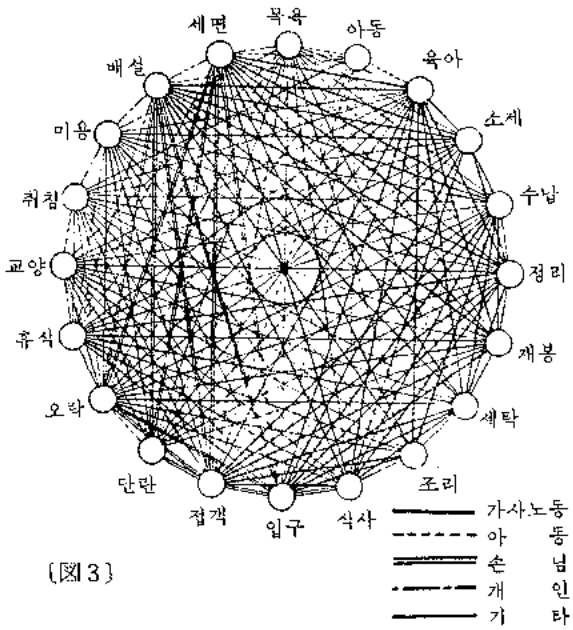

〔図 3〕

또한 平面形에는 単位平面, 改良된 住宅平面, 中央居室의 住宅平面이 있는데 이들 平面의 動線을 서로 比較 해 보면,

1) 独立性— : 個人生活, 社会生活, 家事労動의 3個動線이 서로 分離되어 干渉이 없어야 한다. 動線이 混雜하면 生活圏의 独立性이 그만큼 混雜하다.

2) 家事労動의 位置— : 頻度, 速度, 荷重의 세가지 要素에 依하여 表示되는 動線이다.

3) 動線의 스페이스(空間)—：動線에는 空間이 必要하므로 그 곳에 家具를 놓을 수가 없다. 따라서 房의 動線에 依해서 從橫無進으로 끊어진 境遇 그 房은 完全히 安全感을 잃고 通路 구실 밖에 못하고 만다.

5. 空間의 經濟的 使用과 重複使用—：반자 위나 마루 아래의 스페이스를 어떤 目的으로 利用한다면 그 住宅의 効率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特히 반자위는 다락이나 침실로 充分한 利用価値가 있다. 이런 經濟的 空間使用과는 약간 다른 角度로 空間을 융통성 있게 利用하는 것에 重複使用이 必要하다.

6. 設備部分의 集中, 코아·씨스템(core system)—：부엌이나 浴室, 便所 等에 電気, 水道 施設을 하려면 많은 配管을 必要로 한다. 이와 같은 点을 考慮하여 設備部分을 集中시켜 코아(核)로 만들어 보겠다는 生覚이 이른바 코아·씨스템이다.

7. 統一과 標準化—：住宅内의 窓戸의 크기를 하나하나 単独的으로 決定하려면 그 크기나 模様이 各種 各色으로 되어 経費가 많이 들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이 尺数上의 規準이 되는 것을 모듈(Module)이라고 하며 이 모듈에 依하여 建築의 材料, 部分品 生産에서 設計 施工에 이르기까지 建築全般에 걸쳐서 尺数上의 有機的인 統一을 이루는것을 모듈라·코어디네이숀(Modular-coordination)이라고 한다.

8. 끝매기의 単純化—：끝매기는 単純하며, 材料의 特性이나 構造를 살리도록 하고, 지금까지의 住宅은 外観上 壁乭造나 콘크리이트造로 보이는 것도 木造인 境遇가 많다. 이것은 끝매기로 材料의 美를 감추어 버린 것이며 費用도 더 많이 들고 建物의 耐久力에도 좋지 않다. 壁乭이면 壁乭의 質感을 살리고 木造이면 木造의 気分을 돋우어 주는 것이 現代住宅의 올바른 길이다.

9. 工事費의 割当—：工事費에는 内定価格의 限度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할수는 없다. 計劃 없이 進行 시킨 工事는 쓸데 없는 곳에 돈이 많이 들고 結果的으로 가장 重要한 部分에 소홀하게 되기 쉽다. 工事 着手하기前 工事総額을 工事別로 細密히 割当하는 것이 設計에서 가장 重要하다.

10. 建築許可 手続 및 必要한 設計図書—：設計가 끝나면 工事를 始作하기 前에 市廳이나 区廳에 設計図書를 첨부하여 建築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때 必要한 書類는,

1) 建築許可 申請書
2) 建築設計図
3) 示方書
4) 事実証明書

建築許可 書類는 市에서 認定된 建築士를 通하여 提出하게 된다.

建築許可 手続에 必要한 設計図面은

1) 建物配置図
2) 求積図
3) 平面図
4) 立面図
5) 主断面詳細図
6) 便所 및 부뚜막 部分 詳細図
7) 階段 詳細図(2層以上인 境遇)
8) 構造計算書(鉄骨이나 鉄筋콘크리이트造인 境遇)

以上은 建築許可 申請에 必要한 最小限의 図面이다. 以外에도 工事에 必要한 完全한 図面을 갖추려면 基礎伏図 마루틀, 지붕틀, 各 部分 詳細図, 窓戸 詳細 및 窓戸一覧表, 室内 마감표, 衛生 및 煖房 設計図 等이 必要하며 鉄筋콘크리이트造인 境遇는 鉄筋配筋図가 있어야 한다.

11. 工事契約書의 内容

契約書라 하면 契約書, 契約項目과 設計図書를 말한다.

契約書에는 工事의 請託부터 建物이 完成되어 建築主에게 引渡될 때까지 双方間에 約束한 部分을 規定하고 契約項目에는 그 約束을 実行해 나가는 條件에 対하여詳細하게 記載한다.

契約해 둘 重要事項

1) 請負金額(内訳書도 첨부)
2) 工事의 規模, 種目, 範囲(設計図書에 名記되어 있으면 "図面과 같음"이라고 表示한다)
3) 工事費의 支払方法과 時期(전도금, 중도금의 額数도 쓸때가 있다)
4) 着工과 竣工의 時期와 引導日字.
5) 其他 工事監理者와의 関係 및 工事検査方法, 設計変更時 処理方法 等.

이中 가장 重要한 것은 무엇보다도 設計図와 示方書이다. 工事費의 支払條件도 契約書의 中心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둘러 싼 分争은 深刻해 질 때가 많다.

전도금은 別途로 하고 그 後의 支払은 工事의 既成高에 따라야 하며 絶対로 既成高 以上으로 支払해서는 안된다. 支払期日을 몇月 며칠이라고 明示할 것이 아니라 監理하는 建築技師가 検査한 後에 支払하도록 하는 것이 틀림 없는 方法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業者는 監督 하는 建築技師의 指示에 잘 따르게 되며 工事도 큰 支障이 없이 進行할 수 있게 된다.

第4節 住宅需要 및 需給

住宅問題의 核心은 住宅의 需要와 供給間의 隔差 로서 住宅의 不足現象을 빚고 있는데 반하여 供給은 需要에 미치지 못하는 現象이다. 住宅需要를 分析하면,

1) 住宅의 量的分析—1) 公共用地 및 社会間接 施設의 確充이나 都市再開発·都市改造 等에 依한 既存 住宅의 撤去.

2) 工場 移転이나 不良地区 改造 等에 依한 郊外地域의 住宅需要增加.

3) 既存 住宅의 用途変化.

4) 人口의 增加, 人口密度 및 家口의 增加, 家口의 細分化, 人口의 都市集中 等에 依한 新需要発生.

5) 災害나 戦争으로 因한 住宅의 파괴 및 멸실, 老朽 및 不良 住宅의 撤去 等에 依한 需要增加.

6) 投機的 売入이나 建築中인 未入住建物 等에 依한空家率의 增大 等.

2. 住宅의 質的 分析—: 1) 生活様式의 変化, 所得및 生活水準의 向上에 依한 文化住宅 所有慾.

2) 住宅構造의 変化에 依한 房数 및 居住面積의 增加.

3) 住宅의 高級化에 依한 附帯施設의 確充 等[12] 韓垣沢, 都市行政論, 法文社, 서울, 1981, pp. 294~295.

以上과 같이 都市地域의 核家族化 現象과 이에 따른 住宅需要 圧力이 加重되고 있으며, 한편 住宅의 質的需要에 対해서는 住宅의 低質化와 住宅価의 昂騰要因에 関聯시켜 分析할 수 있다.[13] William, John B.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Inc, 1968.

第6章 住宅行政의 対策

第1節 住宅行政의 実態와 問題点

1. 住宅에 関한 調査統計業務가 貧約하다—: 正確한 統計数字의 把握이 困難하고, 多様的인 調査統計가 不可能하다.

2. 住宅造成에 関한 行政이 有名無実하다—: 公共団体가 都市周辺의 遊休土地를 取得造成할 時의 行政措置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取得造成時의 資金支援措置가 되어 있지 않다.

3. 建築許可가 複雑하다—: 現在의 建築許可過程을보면 許可申請 具備書類 19個→建築設計→許可処分(所要日 4日~10日)→免許税納付→着工申告 및 検査→竣工 等申告 및 検査라서 極히 複雑하다 하겠다.

4. 建築資材開発 및 建築技術向上을 為한 行政体制가 未備되어 있다.

5. 住宅投資와 公共施設投資가 有機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住宅資金調達機能이 未備되어 있다—: 住宅金庫로서 長期的인 民間資本을 動員키 困難하며 住宅金庫의 利子高率로 因하여 低所得層의 無住宅者에게 혜택을 주기 困難하다.

7. 民間自力建設助長行政이 未備되어 있다.[14] 徐廷和, 都市問題概説, 文旺社, 서울, 1971, pp. 156~157.

第2節 住宅行政의 改善策 方向

住宅行政의 一環으로 家口 住宅을 供給하고 住宅水準을 漸增시켜 生活環境水準의 充実을 期하는데 基本 目標를 두고있다. 当面目標는 심각한 量的 住宅難의 解決과 不良住宅의 一掃라는 質的 住宅難의 解結에 있기에 住宅行政에 対한 基本方向設定은 都市自体만에 限定할 것이 아니라 國家全体의 眼目에 두어야 할 것이다.

改善策 方向은 다음과 같다.

1. 住宅行政의 対象은 自力으로 建設할 수 있는 高, 中所得層을 除外한 低所得層이므로 이들을 為한 行政으로 転換되어야 한다—:

住宅事業은 聯関事業의 附加価値에 미치는 影響이 크므로 経済開発事業의 一環으로서 住宅産業으로 育成토록해야한다.

2. 住宅投資의 大案을 民間建設에 두고 政府는 民間自力建設을 誘致장려하는 行政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3. 市自治団体와 住宅公社의 公営住宅事業과 大団地造成事業을 活潑히 推進한다.

4. 行政機関과 許可官廳과의 行政的 3次元的인 対策을 一消하고 将來를 내다보고 住宅行政을 하되 자주 変更하는 母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15] 徐廷和, 都市問題概説, 文旺社, 서울, 1971, pp. 157~160.

第7章 結 論

이제까지의 理論의 展開와 統計資料에 依하여 住宅行政의 方向을 提示한다면 于先 制限된 土地와 人口의 都市集中現象으로 都市家口数와 密集型 共同住宅 그리고核家族化傾向에 따라 効率的인 土地管理는 勿論 建築許可基準의 変更을 必要로 할 것이다. 現行 建蔽率은 변두리 地域에서는 適合한 規定이요 都心에는 低所得層을 為한 密集型 共同住宅의 建設을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建蔽率은 都市内의 地域에 따라 伸縮性있게 適用되어야 한다.

住宅行政의 目的은 무엇보다도 住宅市場의 脆弱性을補強함으로써 圓滑한 住宅供給을 達成케하는데 時急한 事情임으로 行政的 機能을 強化하여야 한다.

1. 調査統計業務의 強化

2. 民間資力建設 助長行政의 強化

3. 建設資材開発 및 建築技術向上을 為한 行政機能의 強化

4. 宅地造成의 促進化

5. 支援指導体系의 強化

6. 住宅事業의 創意性 및 自律化

7. 国公有地를 無償 또는 低廉한 価格으로 取得하여 宅地를 造成化

8. 都市에 있어서는 不良住宅地区 改良事業을 積極推進化

9. 単純한 住宅建設業務를 止揚하고 創意性과 営利性

으로 経営의 合理化

10. 公社의 自律性의 保障으로 行政的 統制, 会計人事上의 制約을 완화

11. 土地区画整理事業으로 都市問題의 空閑地 및 国公有地를 宅地로 造成化

12. 住宅行政「센타」의 設置로 技術, 資材의「서비스」, 展示 및 宅地를 알선化

13. 組立式 住宅建立의 推進化

14. 「프램」(Frame)式 아파아트 建立化, 따라서 市場의 供給이 어느 한 部門에 지나치게 置重되지 않았을 때 住宅行政은 効果的으로 遂行될 것이다.

15. 需要増大要因에 対한 統制策으로서 需要発生의 重要한 要因인 人口増加나 地域間 人口移動에 対하여 強力하고 制度化된 統制行政方法이 마련되어야 한다.

16. 行政体制의 一元化와 有関部署間의 圓滑한 協助体制의 行政構築이 必要하다.

17. 住宅供給計画樹立에 있어서의 機能的 連繋性을 維持하여 業務推進行政에 蹉跌이 없도록 해야한다.

以上과 같은 住宅行政의 改善을 為한 未來의 住宅建設을 為하여 現在의 事情을 明確히 把握分析한 結果를 住宅行政 解決의 方向에 具体的으로 方案을 樹立実践해야 한다. 〈*〉

〈參 考 文 献〉

1. Owen, Wilred, The Accessible City, Brookings Institution, 1975.

2. Dror, Yehezkel, "The Planning Process : A Facet Design", Andreas Faludi, A Reader in Planning Theory, Programm Press, 1974.

3. Friedmann, John, "The New Wave of Planning Theory" JAIP, Vol. XXXIX, No. 3 (Sept.) 1973.

4. Willian, John B.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Inc, 1968.

5. Clapp, James A. New Towns and Urban Policy : Planning Metropolitan Growth. New York : The Dunellen Publishing Co. Inc., 1971.

6. Bollens, John C. & Schmandt, Henry J. The Metropolis: Its People, Politics, and Economic Life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70.

7. 金澤良雄 外 (編), 住宅問題講座 (全 9 巻), 有斐閣, 東京, 1960.

8. 田畑貞壽 外, 住環境の理論と設計, 1969.

9. 建設省, 行政機構シリーズ, 教育社, 東京, 1979.

10. 倉田康男 外 5 人, シンポジウム 都市住宅の 條件, 工業出版(株), 東京, 1980.

11. 尹定燮 外 1 人, 都市計画, 文運堂, 서울, 1967.

12. 安瑛培 外 1人, 새로운住宅, 宝晋斉, 서울, 1980.

13. 康炳基 外 2人, 都市論, 法文社, 서울, 1979.

14. 韓垣澤, 都市行政論, 法文社, 서울, 1981.

15. 韓栄春, 現代組織論, 法文社, 서울, 1981.

16. 姜珉, The Third Wave, 時事英語社, 서울, 1981.

17. 朴文玉, 新韓国政府論, 新泉社, 서울, 1980.

18. 朴璉鎬, 行政学新論, 博英社, 서울, 1981.

19. 尹禹坤, 組織原論, 法文社, 서울, 1980.

20. 韓国住宅銀行, 융자주택실태조사, 한국주택은행, 서울, 1976.

21. 韓国住宅銀行, 韓国住宅建設総覧, 한국주택은행, 서울, 1976.

22. 秋永守, 建築計画, 建設研究社, 서울, 1975.

新刊書籍紹介

建築士, 建築技師, 應試를 爲한 必携의 指針書!

〔主觀式 • 客觀式〕

建築計劃問題研究

黃在雄
金聖培 共著

圖書出版 世進社 ☎ 92-3422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22-13

A5 494面 定價 4,800원

建築計劃問題의 集大成

☆. 主觀式 183問題 · 客觀式 1217問題 收錄

☆. 試驗案內(應試資格 · 試驗科目 · 出題基準) 및 過年度 出題問題 收錄.

☆. 各 問題의 重要度 및 出題빈도, 出題水準에 따라 *표로 表記.

☆. 現行 國家技術資格 問題와 出題型式의 一致

☆. 客觀式 · 主觀式 問題의 比重을 均等히 하여 科目別로 計劃各論 · 計劃原論 · 建築意匠 · 建築史 · 建築設備 問題 總整理.

건축행정 /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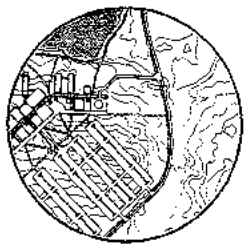

□ 시도지부 문의

문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할 중간검사를 신청에 있어서 중간검사 신청서상에 건축사(공사 감리자)의 날인을 받아 두고도 이를 허가 관서에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경우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행정처분 등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건축법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는 건축주가 받아야 할 의무규정이며, 행정청이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것으로 보아 공사감리자는 중간검사 신청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주의 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 행위에까지 건축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건축사법 제28조에 의한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감리자(건축사)란 당해공사 시공을 확인하고 지도하는자 이므로 중간 검사의 실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 계속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절차 결여 유무를 확인하는등 업무의 만전을 기함이 건축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설부)

문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 소화함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건축허가 (건축 허가서 교부)후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 소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부? (부산지부)
(지금 까지는 건축 허가후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 소화하여 왔으나 1981. 12. 10일 이후 부산직할시의 자체 지침으로 건축허가 신청시에 주택 채권을 매입·소화토록 하므로서 불 허가시 동 채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답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바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채권 매입기준은 본 행위후에 소화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술부)

문 본대지의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은 138.8평방미터 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80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대지로서
대지 면적이 60평 이상이거나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0 조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한 42평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경우 평을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42평은 138.8436 평방미터 이므로 140 평방미터에 미달될 것이나 평의 개념에 의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귀견여부? (전남지부)

답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의 대지면적 최소 한도가 200 평방미터로서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80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면 140평방미터가 될것인바,
현행 규정상 대지면적은 평(坪)의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할 수 없음이 사료되며, 다만, 질의의 대지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적용 시킬 수 있는 경우이면(기준면적의 5 / 10 또는 6 / 10일경우)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술부)

문 본협회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기간동안 정관 제 8 조에 의한 권리가 정지 되는 것인지 또는 자격정지라 함은 건축사로서 모든 업무와 제반 권리가 상실되며, 그 정지기간 동안은 건축사협회의 회원자격도 동시에 정지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비위 회원의 징계 사항을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여부? (부천분소)

답 본 협회 윤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32조 제5,6 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의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 정관 제 8 조 및 제10조에 의한 것이며, 사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 장관에의 보고 사항인바, 자격정지란 본협회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건축사법 제22조

에 의한 협회의 도서 신고는 동 처분 기간 중에는 그 신고 행위를 할수없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수탁 업무에 대하여는 제외 됩니다) (기술부)

문 그림과 같이 도로면보다 10. 2m의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병원을 신축코자 할때 1층은 임대점포 2·3층은 식당및 휴게실, 4·5층은 한방의료시설, 6층은 의사 숙소인 건축물의 경우 승용 승강기의 설치에 대한 귀견 여부? (충북회원)

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2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 6층으로서 최대층 바닥면적이 243m² 이므로 위 규정에 적용 시킬수 있읍니다.
(기술부)

문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의 특례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80조 제5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지면적이 기준 면적의 적합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감소 되었을 경우의 귀견 여부와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라 함은 도시 계획선을 지정한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전북지부)

답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더욱 미달된 경우에 동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이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부)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모든 경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술부)

□ 건축법

문 아파트의 인동간격 산정에 있어 건물 높이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답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 용도변경을 하면서 간막이벽의 일부를 해체할 수 있는지요?

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문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은 남북쪽 방향에 다 같이 적용되는지요?

답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의한 높이 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정북방향에만 적용됩니다.

문 건물의 일부분에 무허가 증축된 부분이 있는데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영업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무허가 증축부분이 아니고 가옥 대장에 등재되어 적법하게 준공처리된 부분은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문 대지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일조권 후퇴 방법은?

답 건축물의 높이가 8m이상일 경우 정북방향으로 높이의 1/2을 띄어야 하며 그 계산은 고저차의 1/2로 환산 합니다.

문 지반이 암반으로 되었을 경우 지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 5층 이하의 건물로서 건축물에 필요한 건폐율을 제외한 공지면적이 연면적의 1/8이상인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지내력이 장기허용 응력도 200t/m²이상일 경우 적용의 특례를 받을 수 있읍니다.

문 주거지역내 방앗간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바닥면적 200m²이내의 방앗간은 설치할 수 있읍니다.

문 시장내 식용류 제조소(기름집)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용도변경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읍니다.

문 석축으로 조성된 대지위에 건축할 경우 건축물은 석축에서 얼마를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합니까?

답 1층의 경우 1.5m, 2층은 2m, 3층이상은 3m띄어야 하나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 이하에 둘 경우는 예외가 되겠읍니다.

문 개인명의로 된 도시계획상 도로에 공작물(담장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답 건축법 제2조 제15호 규정에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므로 공작물등을 설치 할 수 없읍니다.

□ 건축법시행령

문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 부득이한 경우 기준면적의 7/10까지는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요?

답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위에 건물이 있다던가, 건축이 불가능한 공지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분할이 되지 않아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대지는 제외되겠읍니다.

문 미관지구 도로변 건물의 외장변경을 할 경우 건축미관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까?

답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외장변경은 건축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문 주거지역 6m도로변에 사무실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주거지역에 업무시설의 건축은 폭 12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장법

문 주차장 정비지구내 4m도로변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답 서울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6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읍니다.

문 아파트에서의 주차산정 대수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서 알고 싶읍니다)

답 아파트는 연면적 200m²당 1대꼴로 산정하고, 상가는 150m²당 1대로 산정합니다.

문 주차장 면적 산정에 지하층의 대피소가 포함되는지요?

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 이외의 연면적은 주차장 설치 면적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읍니다.

문 예식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얼마입니까?

답 연면적 150m²마다 1대로 산정합니다.

문 주차장 출입구는 폭 몇m가 확보되어야 합니까?

답 1방향 통행로는 3.5m이상,
2방향 통행로는 5.5m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 건축조례

문 4대문내 간선도로변 용적율과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답 4대문내 간선도로변의 용적율은 670%이고 건폐율40%이며, 간선도로변 이외는 용적율 670%이고 건폐율 45%입니다.

문 연립주택의 인동 간격 및 대지안의 공지관계는?

답 공동주택의 인동간격은 높이의 1.25배이며 대향부양측에 창등 채광시설이 없을때는 6m(2층이하 4m), 인동의 경우 높이의 0.625배이고 대지안의 공지는 높이의 0.625배인 동시에 외벽에서 3m(2층이하 2m), 처마에서 2m(2층이하 1.5m)이상입니다.

문 건축조례의 풍치지구내의 대지안의 공지지구 규정에 후면 경계선이란 어느쪽을 말하는지요?

답 대지의 전면(건축선)도로측과 반대인 면을 말합니다.

□ 건축행정

문 건축물 준공 신고시 시멘트 제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야 됩니까?

답 시멘트제품 시험성과표는 법정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첨부하지 않읍니다.

문 건축물 준공시 정화조 검사필증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건축법 개정 이후에는 검사필증이 필요없지만 잠정적으로 첨부되며, 82. 1월부터는 정화조 업무를 구청 건축과에서 취급합니다.

문 건축허가시 신청소유자의 토지등기부상에 가압류가 있을 경우 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요?

답 가압류는 동의서가 필요없으며, 건축허가가 불허가되는 소유권 제재기준임
① 지상권 설정
② 공공기관의 압류
③ 채무관계에 의한 건축허가 행위에 대한 금지조치조목이 삽입된 압류는 해당됨.

문 타인소유의 환지예정지에 건축허가시 첨부서류는?

답 대지등기부 등본과 소유자 사용 승낙서 및 환지예정증명서 각 1통입니다.

□ 기타규정

문 10층 이하의 아파트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답 '81. 12. 1일 이후 아파트 입지심의 및 건축승인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었읍니다.

문 벽면 외부창에 반사유리를 설치하여 건축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지요?

답 벽면재료 및 창문재료에 관하여는 별도 규제는 없으며 미관지구내 건축 계획심의로 주변의 건물조화 및 교통장애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읍니다.

문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입지심의 및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입지심의 및 사업승인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고 20세대미만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득하시면 됩니다.

문 폭 2.0m도로가 포장이 되어 4.0m로 확장 사용시 지목은 대지로 되었을 경우 현재 도로 적용여부는?

답 지목이 대지일지라도 공공의 통행이 유일하게 이용하면 현재도로로써 적용가능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서에 현재 도로임을 기재하여야 함)

문 회사원용 공동주택도 공사감리 및 시공자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 공동주택은 3층이하를 연립주택, 4층 이상을 아파트라 하며, 회사원용이라고 건축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지 않고 개인이 도면을 그려도 가능합니까?

답 가능합니다.

도서신고현황통계 ('78~'81)

도서신고 현황 (총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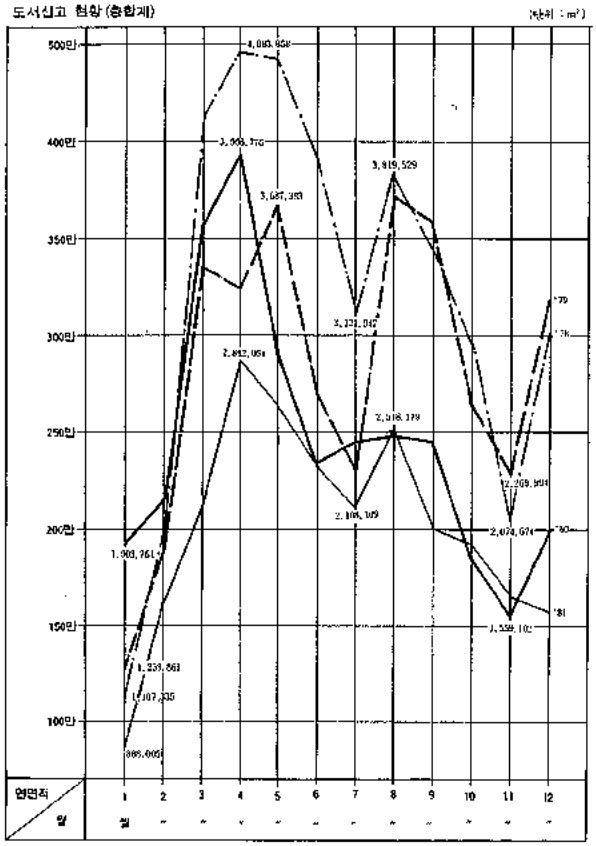

도서신고 현황 (주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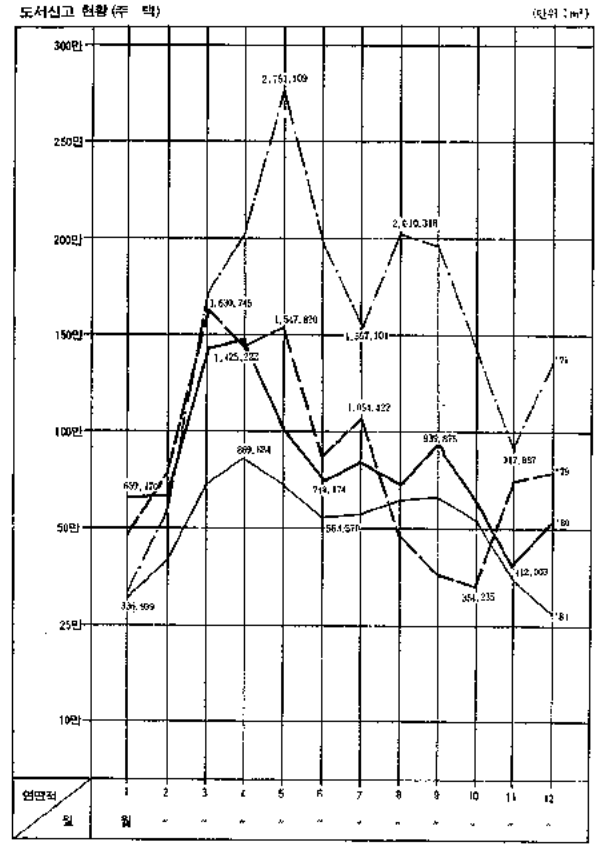

도서신고 현황 (점포 및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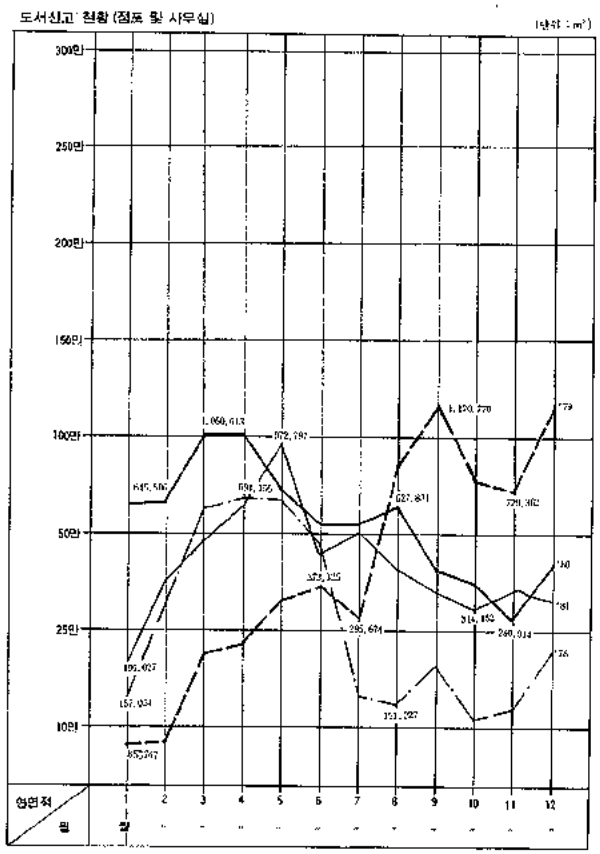

도서신고 현황 (기타 : 학교 · 병원 · 공공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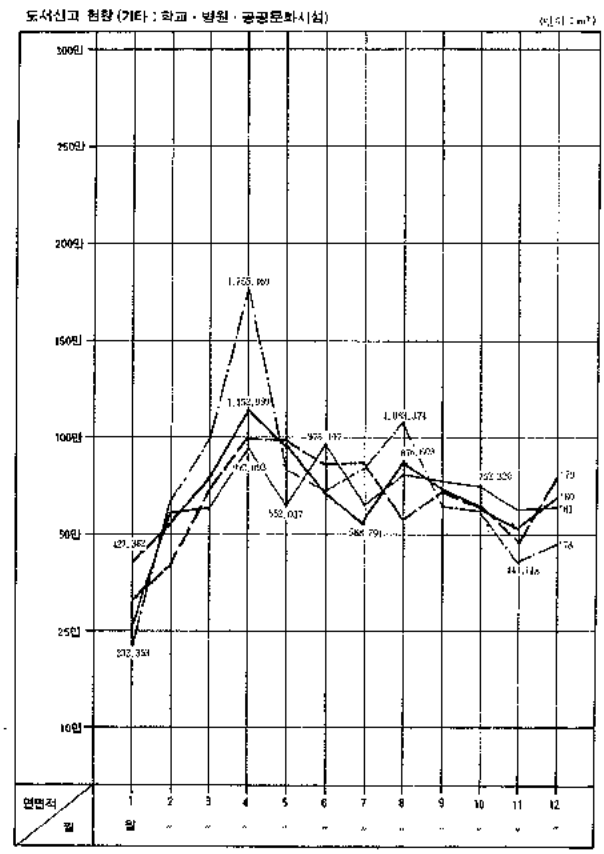

〈자료〉

소방법시행령개정
공업배치법 시행령
건설업법중 개정법률
특정건축물정리 특조법
주택공급 규칙중 개정령
태양열집열기설치 및 시공기준

소방법 시행령 개정(完·81. 11. 6)

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오스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휘발유·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주입관으로 주입할 경우에는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에 밀착하여야 한다.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전기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제43조 (운반용기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철판·알루미늄판·합석·유리·도기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적재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은 제43조의 운반용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덩어리로 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장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도중 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6.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광의 직사, 누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덮개를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운반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환적·휴식·고장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중 그 위험물에 적용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송의 기준)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또는 이동저장탱크에서 뺄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취급주임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를 휴식·고장등으로 일시 정지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알루미늄알킬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송의 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할소방관서에 송부하고, 그 서면의 사본을 휴대하게 한 후,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재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자위소방조직

제47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한다.

1. 보일러·버어너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압유장치·윤활유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8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및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소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제조소등으로 한다.

1.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
2. 지정수량의 30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곳

제49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표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작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된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사 업 소 의 구 분	화학소방자동차	조작인원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②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국고보조

제50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기계·기구
   가. 소방펌프자동차·화학소방자동차·고가사다리차·공중방수차
   나. 소방용 헬리콥터·소방정
2. 설비
   가. 소방전용통신장치
   나.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1항의 소방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51조 (보조의 신청)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용기계·기구,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52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①내무부장관은 시·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용기계·기구,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보조의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 (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용기계·기구,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54조 (주된 사무소와 지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5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6조 (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57조 (회원의 자격) 법 제70조의4제1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에 한한다)·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난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업의 등록을 한 자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신고를 한 자

제58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9조 (임원) ①협회에 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회장·이사(회장을 제외한 이사를 말한다) 2인 및 감사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60조 (이사회)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61조 (건의 및 자문) ①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업무에 관하여 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 (감독등) ①내무부장관은협회를 지휘·감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63조 (권한의 위임)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에게, 법 제15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6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6조중 화학반응식 포소화기에 관한 사항과 비상경보기용 축전지 설비에 관한 사항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및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 9 항제17호·제19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

◇ 消防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許可등에 대한 消防官署의 同意對象에서 住宅 및 3層이하의 共同住宅을 제외하는등 同意對象범위를 縮小하고, 小規模 消防對象物에 대한 消防施設 設置義務를 緩和하여 國民의 消防施設 設置에 따르는 費用負擔을 最小限으로 줄이며, 農漁村地域 危險物販賣取扱所의 危險物取扱量의 上限基準을 大幅 緩和하여 國民生活에 便宜를 도모하고 기타 消防法의 改正(1981. 4. 4法律 第3,413號)에 따른 施行令上의 關聯條文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建築許可등에 대한 消防官署의 同意에 있어서 住宅 및 3層이하의 共同住宅을 그 對象에서 제외시키는 등 同意對象 범위를 縮小함. (令 第4條)

나. 法의 改正內容에 맞추어 防炎處理對象 特殊場所에서 工場·圖書館·市場·百貨店·學校 및 共同住宅등을 제외함. (令 第11條)

다. 火災危險度가 낮은 小規模 消防對象物에 대한 消防施設 設置義務를 緩和함. (令 第17條 내지 第22條)

라. 泡消火器의 消火藥劑充塡, 消防設備의 表示燈·誘導燈의 光源交替 등 輕微한 工事는 消防設備技士가 아니라도 施工할 수 있도록함. (令 第27條)

마. 注油取扱所에서 自動車등의 燃料탱크에 직접 注油하는 외에 賣消費者에게도 危險物을 販賣할 수 있도록 함. (令 第34條 第1號)

바. 第2種販賣取扱所에서 取扱할 수 있는 危險物數量을 종전에는 指定數量의 5倍이상 15倍 미만이던 것을 指定數量의 5倍이상 20倍(單位農業協同組合이 經營하는 경우와 面單位이하地域의 경우에는 35倍) 미만으로 擴大함. (令 第34條第2號 나목)

사. 消防用機械·器具등 製造業許可에 관한 內務部長官의 權限을 道知事에게, 危險物製造所등 許可등에 관한 道知事의 權限을 消防署長에게 각각 委任함. (令 第63條)

아. 消防法의 改正으로 內務部令으로 정하도록 된 消防施設의 設置·維持基準 및 危險物製造所등의 施設基準에 關한 條項을 削除함. (법제처 제공)

공업배치법시행령중개정령(81. 12. 12)

공업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이전촉진지역)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의정부시
3.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4.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미금읍·와부읍·진접면·진건면·별내면
5.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일산읍·벽제읍·원당읍·지도면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비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1호중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호·제8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천직할시
8.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소래읍·군포읍·과천면·수암면·군자면
11.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동부읍·초월면·퇴촌면·남종면·서부면·중부면
13. 경기도 광명시

제7조제2항제16호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산림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인천시"를 "인천직할시"로, "대구시"를 "대구직할시"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공장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당해공장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장의 증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증대를 위한 공장의 증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

제21조제1항중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을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의 공장으로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2.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3.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의 제한정비지역안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4.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5.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이전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이전

제32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부 산업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장관·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농수산부장관·상공부장관·건설부장관·환경청장·서울특별시장이 소속공무원인 국장중에서 지명한 자 각 1인(경제기획원은 2인)
2. 공업입지 및 공업배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 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 종 명
31113	고기가공 및 저장업
31121	버터 및 치즈 제조업
31122	연유 및 분유 제조업
31123	아이스크림 제조업
31124	우유처리업
31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낙농품 제조업
31142	해산물 가공 저장업(냉동 및 냉장업에 한한다)
31161	도정업
31171	식빵 및 기타 빵 제조업
31172	과자 제조업
31173	국수 제조업
31179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빵제품 및 국수 제조업
31190	설탕과자 제조업
31211	얼음 제조업
31212	장류 제조업
3121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31216	당류 제조업
31217	커피 및 차 가공업
31321	약주 및 탁주 제조업
31340	청량음료 제조업
32117	연사 제조업
32122	가정용 섬유제품 제조업
32123	캔버스 제품 제조업
32124	자수업
32129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품 제조업(의복제외)
32131	편직 양말 제조업
32132	편직 내의 제조업
32133	편직 외의 제조업
32134	편직 장갑 제조업
32135	편직물 제조업
321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편직업
32151	끈 및 로프 제조업
32159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끈 및 로프산업
32191	제면업
32201	남자용 양복 제조업
32202	남자용 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 제조업
32203	여자 외의 제조업
32204	소아용 외의 제조업
32205	여자용 및 소아용 내의 제조업
32206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
32207	모자 제조업
32208	장갑 제조업
32209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의복 제조업
32332	가방 제조업
32333	핸드백 제조업
32334	가죽케이스 제조업
32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
32401	가죽신 제조업
33111	제재업
33112	목재건구 제조업
33114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33122	목재포장용기 제조업
33123	목함 제조업
33124	등세공품 제조업
33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33192	목재 가정용품 제조업
33193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33201	가구제조업(내장가구 제외)
33202	내장 가구 제조업
33203	가정장치물용 캐비넷 제조업
33204	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신문용지 제외)
34115 건축용지 제조업
341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34122 종이포대 제조업
34123 판지상자 제조업
34124 위생용 식품용기 제조업
34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
341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용기제외)
34193 가공지 제조업
34194 문구용지 제조업
34211 신문발행업
34212 정기간행물 출판업
34213 서적 출판업
34214 노트, 장부 및 유사제품 제조업
34215 상업인쇄업
34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 및 출판업
34221 제본업
34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관련산업
35401 연탄제조업
36205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36991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36992 레미콘 제조업
38115 가정용식품 가공기기 제조업
38120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38131 금속제 건구 제조업
38132 건축용 및 장식용 금속제품 제조업
38133 철판금속제품 제조업
38136 금속 탱크 및 용기 제조업
38251 계산기 제조업
38252 등사 및 복사기 제조업
38255 타자기 제조업
38292 송풍기 제조업
38295 재봉기 제조업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 제조업
38321 라디오, 텔레비젼 및 기타 음향장치 제조업
38322 유선통신 장치 제조업
38323 무선통신장치 제조업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8325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8326 방사선 장치 및 전기의료장치 제조업
383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라디오·텔레비젼 및 통신장비 제조업
38331 전기 냉장고 제조업
38332 선풍기 제조업
38334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업
38335 전기이·미용 기구 제조업
383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38392 전구 제조업
38511 측량기계기구 제조업
3851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8513 검사 및 시험용기구 제조업
38514 이·화학 및 과학용기구 제조업
38515 의료용 기구 제조업
38516 전기공급 계기 제조업
38517 가스 또는 액체공급 계기 제조업
385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8521 안경렌즈 제조업
38522 안경제조업
38523 사진기 제조업
38524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8525 사진 복사 장치 제조업
38526 사진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8531 시계 제조업(케이스 제외)
38532 시계 케이스 제조업
39010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9021 현건반악기 제조업
39022 건반관악기 제조업
39023 현악기 제조업
39024 관악기 제조업
39027 국악기 제조업
39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악기 제조업
39031 체조 및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제조업
39033 낚시장비 제조업
390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9091 칠기 제조업
390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90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9094 가발 제조업
39095 비 및 솔 제조업
39096 라이터 제조업
39097 장난감 제조업
39098 단추 제조업
390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

〔별표 3〕

업 종	이 전 허 용 지 역
1. 도정업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3.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시멘트 및 콘크 상 동
리트 제품 제조업
5. 약주 및 탁주 상 동
제조업
6. 레미콘 제조업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

◇ 工業配置法施行令 改正理由

移転促進地域안에서의 工場의 增設 및 移転과 制限整備地域 안에서의 工場의 新設·增設 및 移転에 대한 制限을 一部 緩和하고 移転促進地域안에 있는 工場으로서 商工部長官의 移転命令의 対象이 되는 工場의 範囲를 縮小함으로써 都市型 企業의 活性化를 도모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発制限区域에서의 工場의 新設·增設 및 移転등에 대한 制限은 都市計劃法에 맡기고, 工業配置法 에서는 그에 대한 制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発制限区域을 工業配置法에 의한 移転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에서 제외시킴. (令 第2條 및 第3條)

나. 移転促進地域안에서의 工場의 增設 및 移転이 가능한 業種을 拡大하고, 同地域에서의 商工部長官의 移転命令의 対象이 되는 工場의 범위를 縮小함. (令 第19條, 第21條 및 第23條)

다. 종래에는 移転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안에서 製造業을 営為하는 者가 既存 工場内에서 業種을 変更하는 것도 工場의 新設로 보아 이를 制限하였으나, 앞으로는 既存工場内에서의 業種의 変更은 許容하도록 함. (令 第18條)

라. 移転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안에 있는 工場으로서 搗精業, 豆腐, 薬酒 및 濁酒, 印刷 및 出版, 시멘트 및 콘크리아트製品의 工場인 경우에는 業種別 立地特性에 따라 工業地域이 아닌 地域으로 移転하는 것을 許容함. (令 第21條) (법제처 제공)

建設業法中改正法律 (81. 12. 31일)

建設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本文중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建設業者"로 하고, 同條 第2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住居用建築物로서 延面積이 661平方미터를 超過하거나 기타의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495平方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의 新築, 增築, 改築, 再築 또는 大修繕에 관한 工事.

第4條의 2 題目 "(権限委任)"을 "(権限의 委任·委託)"으로 하고, 同條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権限중 다음 各号의 権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建設協会 또는 기타 建設関係 専門機関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限度額의 算定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実態調査簿의 作成 保管.
3. 第1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補修教育
4.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의 経営実態등의 調査.

第4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條의 3 (手数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 또는 建設技術者의 免許 또는 免許更新, 免許證 또는 免許手帖의 再交付나 建設技術者保有證明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数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5條의 2중 "単種工事業"을 "専門工事業"으로 한다.

第7條의 2중 "単種工事業免許"를 "専門工事業免許"로 하고 "単種免許"를 "専門免許"로 한다.

第7條의 3중 "単種免許"를 "専門免許"로 한다.

第9條의 2중 "単種工事"를 "専門工事"로 하고 "単種工事業者"를 "専門工事業者"로 한다.

第11條를 削除한다.

第12條중 "建設工事의 現場에"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工事 現場에"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現場에 配置된 建設技術者는 당해 建設工事発注者의 承諾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事由없이 그 工事現場을 離脱하지 못한다.

③ 建設工事発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現場에 配置된 建設技術者가 身体의 虚弱 등으로 인하여 業務遂行能力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受給人에게 建設技術者의 交替를 要請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受給人은 정당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3條 第1項중 "第7條第1項第1号 내지 第8号"를 "第7條第1項第1号 내지 第3号, 第5号, 第6号 및 第8号"로 "単種免許"를 "専門免許"로 "釜山市"를 "直轄市"로 하고, 同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14條 第2項중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및 道知事"를 "道知事"로 한다.

第16條 第1項중 "第37條"를 "第37條第2項"으로 "建設業의 免許取消 또는 営業이나 施工의 停止処分을 받은"을 "営業停止 또는 建設業의 免許取消를 받은"으로 한다.

第17條 第2項을 第5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내지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技術者의 免許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技術者免許手帖을 交付한다.

③ 建設技術者는 免許手帖을 他人에게 貸與하거나 이를 不当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建設部長官은 建設技術者의 実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技術者免許手帖을 検閲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更新할 수 있다.

第18條 第1項第3号중 "第3号 또는 第4号"를 "第3号 내지 第8号"로 한다.

第19條중 "2이상의 事業体에 雇傭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다른 事業体(自営事業体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아니된다"로 한다.

第21條를 削除한다.

第32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建設工事의 下都給契約當事者間의 契約締結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都給契約"은 "下都給契約"으로 "都給金額"은 "下都給金額"으로 본다.

第34條第2項중 "単種工事"를 "専門工事"로 "単種工事業者"를 "専門工事業者"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下受給人은 그가 下都給 받은 建設工事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다시 下都給할 수 없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下受給人이 그가 下都給 받은 建設工事중 専門工事에 해당하는 建設工事를 해당 専門工事業者에게 다시 下都給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受給人과 下受給人間에 締結하는 契約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都給契約"을 "下都給契約"으로 본다.

第36條의 5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受給人은 発注者로부터 先金給을 받은 때에는 下都給人이資材의 購入, 労務者의 雇傭 기타 下都給工事를着手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先金給의 内容과 率에 따라 下受給人에게 先金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人은 下受給人에게 債務의 保證을 요구할 수 있다.

第37條 第1項 第2号를 削除하고, 同條 第2項第2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限度額을 초과하여 都給받았거나, 同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의 都給下限線 미만의 工事를 都給받은 때

第37條 第2項第3号중 "検査"를 "調査 또는 検査"로 第4号중 "下都給한 때"를 "下都給하거나 下都給 받은 때"로, 第5号 중 "第36條의 5 第1項"을 "第36條의 5"로 하고, 第6号 및 第9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建設工事都給契約에 의한 瑕疵補修義務期間중 受給人 또는 下受給人의 歸責事由로 3回이상 瑕疵가 발생한 때. 이 경우, 下受給人의 歸責事由에 대하여는 受給人에게도 同一한 責任이 있는 것으로 본다.

9. 建設技術者 免許手帖을 貸與받거나 다른 事業体에 종사하고 있는 建設技術者를 雇傭하여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하게 한 때

第37條 第2項에 第10号 내지 第15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実績 申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하지 아니한 때

11.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12. 정당한 事由없이 建設工事都給契約 또는 下都給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13. 建設工事発注者의 業務上의 監督 또는 検査를 忌避·방해 또는 拒否한 때

14. 予算会計法·地方財政法·政府投資機関予算会計法에 의하여 契約締結에 관한 資格이 2年미만의 期間동안 정지 된 때

15. 第50條第1号에 해당하는 行為를 하거나 결과를 招来한 때

第38條 第1項 本文중 "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를 "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거나 2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営業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하고 "(第50條 第2号의 경우에 限한다)"를 削除하며 同條同項 第8号중 "他人의 免許證 또는 免許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使用한 때"를 "不當하게 사용한 때"로 第9号중 "各号"를 "第2号"로, 第11号중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予算会計에 関한 法令"을 "予算会計法·地方財政法·政府投資機関予算会計法"으로 하고 第4号 및 第12号를 削除하며 第18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8. 다른 法令에 의하여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機関으로부터 免許取消의 要求가 있을 때

第3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8條의 2 (建設技術者의 免許停止) 建設部長官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建設技術者의 免許를 정지할 수 있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建設工事現場에 配置된 建設技術者로서 그가 配置된 建設工事가 第37條 第2項 第6号 또는 第8号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1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에 정당한 事由없이 3回이상 不応한 때

第39條 第5号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7号 내지 第9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7.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免許 手帖의 検閲 또는 更新을 계속하여 2回이상 받지 아니한 때

8. 第38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免許停止処分에 違反하여 建設技術者의 業務를 행한 때

9. 国家技術資格法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種目의 国家技術資格이 取消된 때

第42條 但書를 削除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設業者 또는 建設技術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聴聞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建設業者 또는 建設技術者가 第13條 第1項 또는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所変動申告를 하지 아니하여 聽聞通知가 到達하지아니한 경우에는 聽聞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処分을 할 수 있다.

第50條 本文中 "500万원"을 "2千500万원"으로 하고 同條第1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建設業者가 競争入札에 있어서 入札者間에 共謀하여 미리 造作한 価格으로 入札하거나 他人의 見積提出 또는 入札行為를 방해한 때

第51條 本文중 "100万원"을 "500万원"으로 하고, 同條第3号중 "都給 받은 者"를 "都給받거나 同條第6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設工事 都給下限線미만의 工事를 都給받은 者"로 한다.

第52條 本文중 "50만원"을 "250万원" 으로 하고, 同條第4号중 "検査"를 "調査 또는 検査"로 한다.

第53條 本文중 "30万원"을 "150万원"으로 한다.

第51條, 第52條, 第53條의 각 題目 "(同前)"을 "(罰則)"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経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許可받은 建築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 이후 設計変更으로 인하여 第4條第2号의 規定에 의한 延面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経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単種工事業免許를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専門工事業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経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設部長官이 交付한 建設技術者免許手帖은 이 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된 것으로 본다.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81. 12. 31)

第1條 (目 的) 이 法은 特定建築物을 選別整理함으로써 国民의財産権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特定建築物"이라 함은 無許可建築物 및 違法施工建築物을 말한다.
2. "無許可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한 建築物을 말한다.
3. "違法施工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 建築한 建築物로서 同法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検査를 마치지 아니한 建築物을 말한다.

第3條 (適用範囲) 이 法은 特定建築物로서 이 法 公布당시 事実上 完工된 建築物(増·改築된 建築物을 포함한다. 이하 "対象建築物"이라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関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再開発区域, 都市計画施設, 土地区画整理事業地区, 開発制限区域, 接道区域, 山林地域, 軍事施設保護区域, 海·空軍基地 (保衛区域을 포함한다)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하는 常習災害地区 및 環境整備地区안의 建築物 (開発制限区域안에서는 指定 이전에 建築된 建築物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申 告)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対象建築物의 建築主 또는 所有者(이하 "所有者"라 한다)는 対象建築物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図書 및 現場調査書를 첨부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市長 또는 郡守(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対象建築物중 無許可建築物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国家施策事業으로 建築 또는 改良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市長·郡守가 作成한 現場調査書로써 申告에 갈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図書 및 現場調査書의내용·서식과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特定建築物整理審議委員会) ① 市長·郡守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申告에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対象建築物의 整理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定建築物整理審議委員会(이하 "審議委員会"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委員会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竣工検査畢證의 交付·是正命令 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③ 審議委員会의 組織 및 運営 기타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竣工検査畢證의 交付) 市長·郡守는 審議委員会가 第7條의 規定에 적합하다고 審議議決한 対象建築物에 대하여는 建築法 기타 関係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竣工検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7條 (対象建築物의 審議基準) 第3條의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竣工検査畢證을 交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号의 規定에 적합하여야 한다.

1. 自己 所有 垈地(使用承諾을 받은 他人所有垈地를 포함한다) 또는 国·公有地에 建築된 建築物일 것.
2. 建築法 第27條 및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違反되지 아니하고 建築物의 構造安全·衛生 및 防火와 都市計画事業의 施行상 현저한 支障이 없는 것일 것.

第8條 (是正命令등) ① 市長·郡守는 所有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6條의 規

定에 의하여 竣工檢査畢證을 交付받지 못한 対象建築物(이하 "整理未畢建築物"이라 한다)의 所有者에게 다른 法令에 의하여 이미 행한 措置·処分등에 불구하고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第7條第2号의 規定에 적합하게 是正할 것을 命하거나 申告하게 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따라 是正된 整理未畢建築物에 대하여는 審議委員会의 決定에 따라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한다.

③ 市長·郡守는 整理未畢建築物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申告등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電話·電気 및 水道를 設置하거나 供給하는 者에게 그 사용 또는 供給등의 中止를 要請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供給등의 中止要請 을 받은 者는 遲滯없이 필요한 措置를 取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9條 (過怠料) ① 市長·郡守는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할 때에는 過怠料를 賦課하여야한다. 다만, 延面積(共同住宅은 世帯當 專用面積을 말한다)85평방미터이하인 住居用対象建築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다음 各号의 범위안에서 建築物의 用途·規模·構造 및 地域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面積(建築法의 規定에 의한 垈地안의 建築制限線을 침범한 部分의 面積을 포함한다)에 관계되는 違反部分에 대하여는 그 違反部分의 面積(住居用無許可建築物은 85평방미터를 초과한 面積을 違反面積으로 본다)의 매평방미터당 30만원이하.

2. 第1号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違反事項에 대하여는 當該建築物에 適用하는 課稅標準額의 100分의 10 이하.

③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徵收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④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過怠料는 無許可建築物이 있는 区域안의 道路, 上·下水道·環境整備 기타 이 法의 目的에 적합한 事業 이외의 用途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10條 (無償讓與받은 国·公有地의 使用) ① 住宅改良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再開発区域을 廃止하여 당해 区域안의 無許可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하는 境遇에는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団体에 無償으로 讓與된 土地는 原所有者인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에 還収되지 아니하며 當該土地의 使用·収益 또는 処分으로 인한 収入은 同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許可建築物이 있는 区域안의 道路, 上·下水道 및 環境整備 기타 이 法의 目的에 적합한 事業 이외의 用途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団体에 無償으로 讓與된 土地의 管理処分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地方自治団体의 條例로 정한다.

第11條 (権限의 委任)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기타 区가 設置된 市의 市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権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区聽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2條 (罰 則)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4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3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며 1984年 6月30日까지 그 効力을 가진다.

② (経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竣工未畢既存建築物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申告되어 竣工檢査畢證 을 交付받았거나 処理중에 있는 建築物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되어 竣工檢査畢證을 交付받았거나 処理중인 것으로 본다.

③ (廃止法律) 이 法 施行과 同時에 竣工未畢既存建築物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은 이를 廃止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82. 1. 4)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 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호의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제11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불임시술자증명 (선매청약저축 1순위해당자중 2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전에 세대주 또는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 영구불임시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임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제11조 제3항 제3호 및 제6호중 "(제15조 제3항 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를 "(제15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에한한다") 로 한다.

제13조 제 1 항 제 1 호중 "군별번호가 동일한자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에 및 영구불임시술자(2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이 "(영구불임시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제13조 제 1 항 제 2 호중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를 "3회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5조 제 3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3 호를 삭제한다.

2. 제 2 순위 :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로서 제13조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자

제15조 제 6 항중 "제 3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을 "제 3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중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23조 제 1 항 단서중 "슈퍼마켈, 종합상가의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를 "슈퍼마켈, 종합상가를 직영하고 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태양열집열기설치 및 시공기준 (82. 1. 4)

1. 총 칙

1 -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평판형 액체식 태양열 집열기(이하 "집열기"라 한다)의 설치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 - 2 용어의 정의

(1) 집열기

태양에너지로 직접 흡수하여 이용 가능한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열 이용기기를 말한다.

(2) 축열탱크

집열기에서 집열한 열을 필요한 때에 난방이나 급탕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용기에 저장하는 탱크를 말한다.

(3) 자동제어장치

태양열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계통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말한다.

(4) 보조열원장치

태양열 집열량이 부족할 때 열원을 보충하여 주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 태양열 시스템

집열기를 설치하여 건축물등 난방 또는 급탕을 하기 위한 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되며 각 부간의 열 이동을 강제 순환 또는 자연순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한 것으로 그 구성 예는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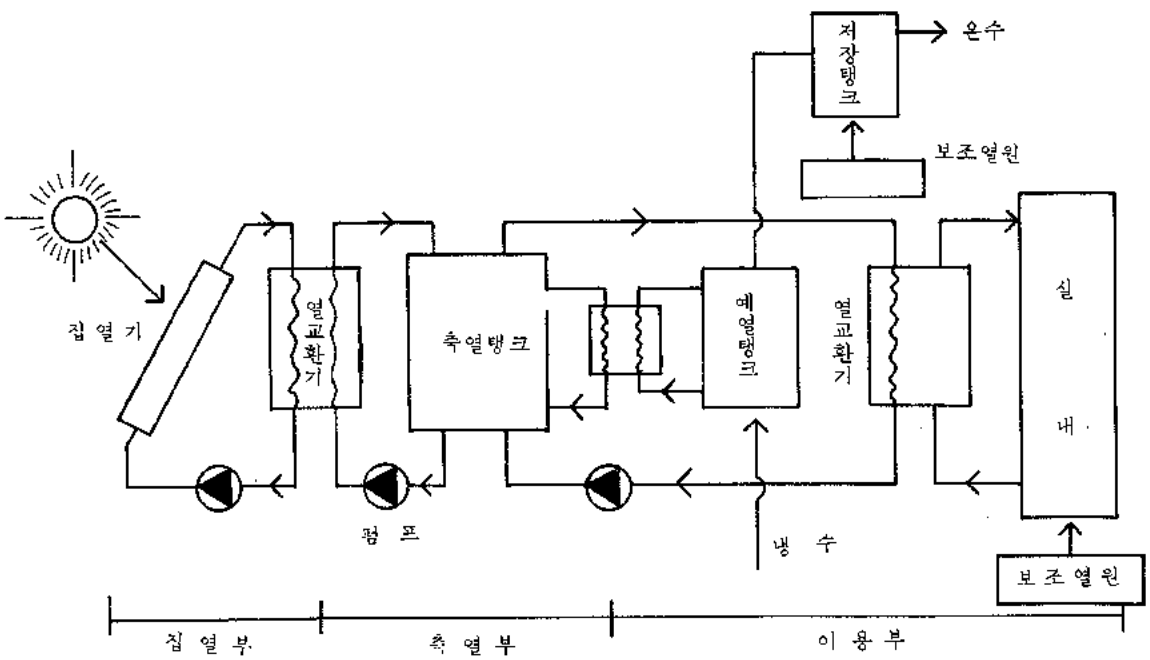

그림 1.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예

(6)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방식

태양열 시스템에 사용되는 열매의 종류, 동파방지, 시스템압의 유지 및 태양열 이용 방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품들의 연결 또는 조합 형태를 말한다.

(1) 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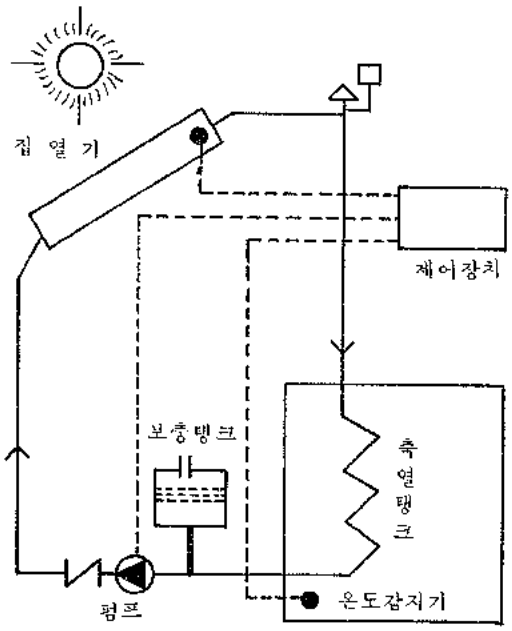

(2) 밀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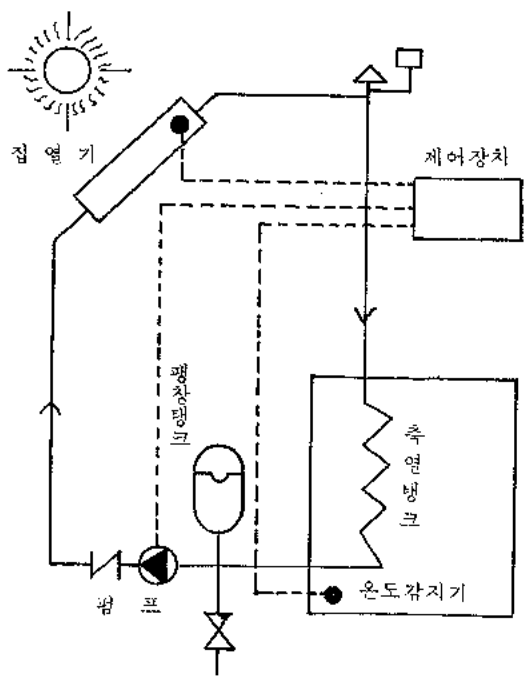

그림 2. 부동액 주입식의 예

② 자동배수식

시스템이 동파될 조건에서 결빙될 열매를 자동배수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직접이용 방식

① 부동액 주입식

태양열 집열회로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열회로의 열전달 매체로 부동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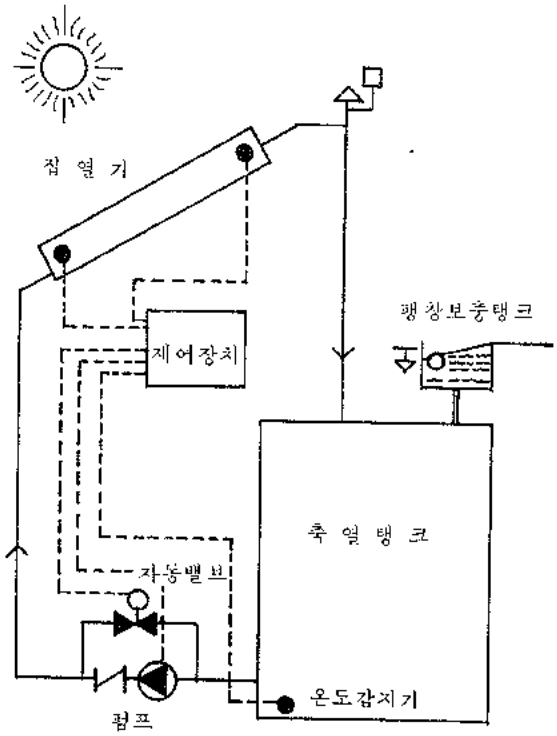

(2) 밀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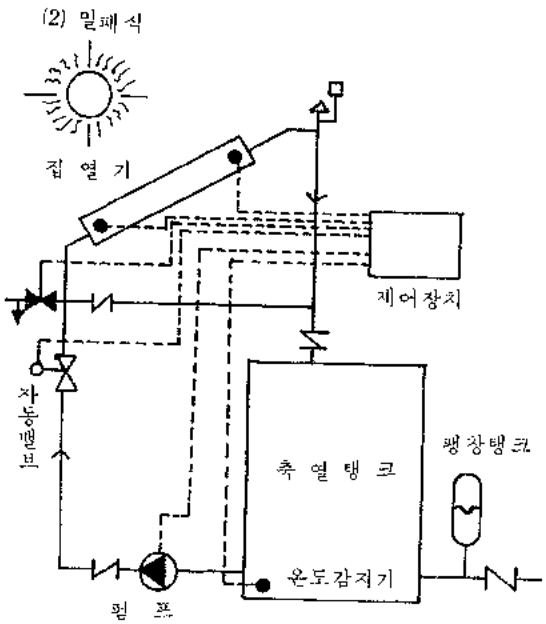

그림 3. 자동배수식의 예

태양열 집열량이 부족할 경우 축열탱크를 보조열원으로 직접 가열하여 축열탱크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이용부에 열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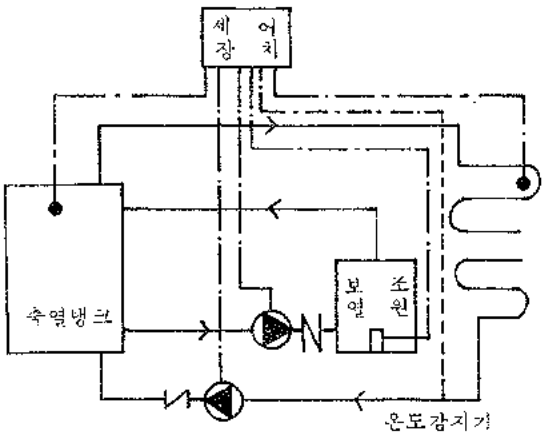

그림 4. 직접이용방식의 예

④ 분리이용 방식

태양열 집열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축열탱크의 열원만으로 공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열원으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자동밸브 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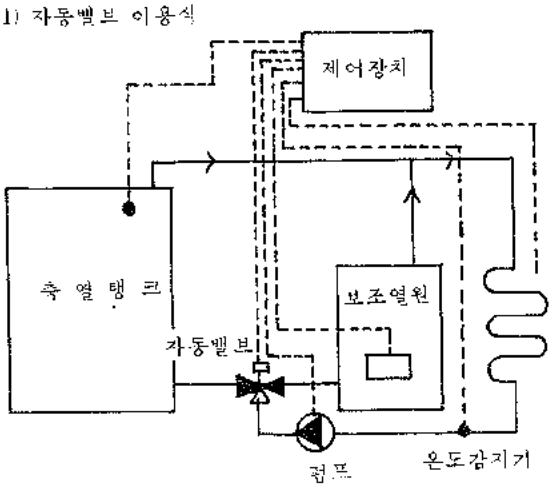

(2) 펌프 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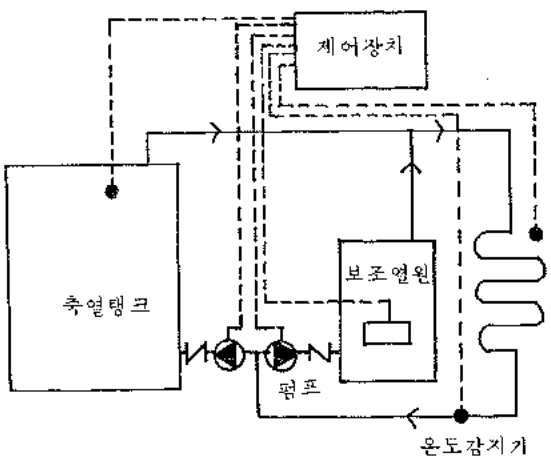

그림 5. 분리이용방식의 예

⑤ 예열이용 방식

태양열 집열량이 부족할 경우 축열탱크의 열매를 보조열원을 통과시켜 승온되도록 하여 열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자동밸브 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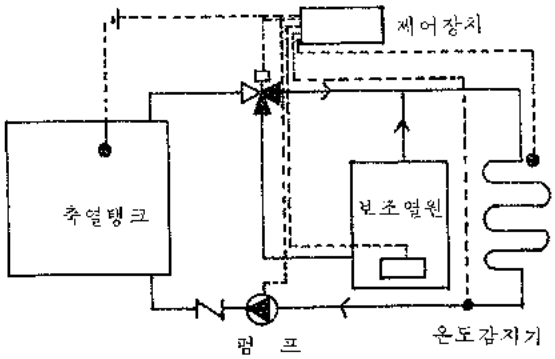

(2) 펌프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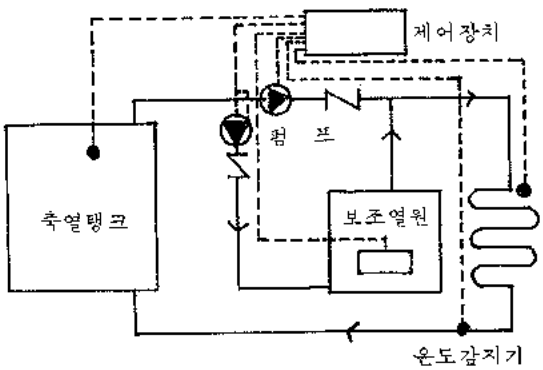

그림 6. 예열이용방식의 예

⑥ 혼합이용 방식(분리이용 방식과 예열이용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1) 자동밸브 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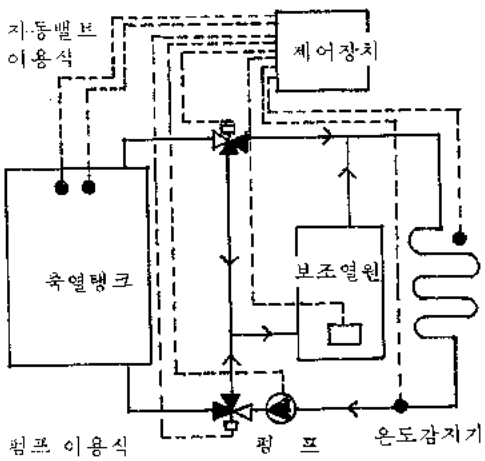

(2) 펌프 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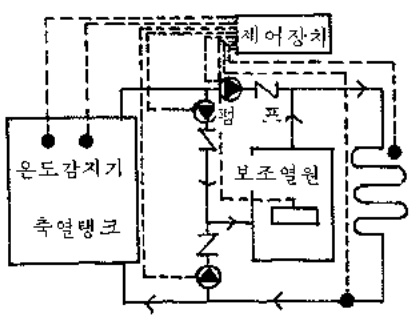

그림 7. 혼합이용방식의 예

2. 재 료

집열기 및 부속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1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 1〉 집열기 및 부속기자재의 재료

기자재명	재 료 명	규 격	비 고
집 열 기	—	형식승인제품	
축열탱크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부식성재료는 내면에 방청도료 또는 세라믹을 도포하여야 한다.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압력용기용 강판	KS D 3521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29	
	냉간압연 스테인레스강판	KS D 3698	○콘크리트는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열간압연 스테인레스강판	KS D 3705	
	내열성 폴리에티렌 염화비닐콘크리트		
열교환기	저온열 교환기용 강관	KS D 3571	○음료수용에는 내식성재료이어야 한다.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열교환기용 이음매 없는 니켈, 크롬, 철 합금판	KS D 3757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복수기용 황동관	KS D 5537	
보조열원 장 치		형식승인제품	열부하의 100%를 충당할 수 있는 장치로 하되, 태양열시스템의 부식 및 불필요한 연료의 소모를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것이 좋다.
파 이 프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수도용 아연도강관	KS D 3537	
	저온 배관용 강관	KS D 3569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내열성 프라스틱관		
관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KS B 1536	
	냉동형 플래어 관이음	KS B 1537	
	배관용 강관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밸 브	청동 5kgf/cm²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03	
	황동단조 5kgf/cm²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20	
	주철 5kgf/cm²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50	
	주강 10kgf/cm²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63	
보 온 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보온용 광석면 제품	KS F 47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1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KS M 3809	
	석면 보온재	KS F 4709	
	질석	KS F 3702	
	규조토 보온재	KS F 3502	

3. 설치 및 시공

3 - 1 집열기

(1) 방 향

정남향을 원칙으로 하되 정남을 기준으로 남동 20도에서 남서 30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2) 경사각

① 난방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위도+10도를 기준으로 하되 이 수치의 ±15도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급탕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위도를 기준으로 하되 이 수치의 ±15도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집열기 설치 경사각의 지역별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집열기 설치경사각의 예

(단위 : 도)

지역명	위 도	집열기의 설치 경사각 난 방	집열기의 설치 경사각 급 탕
춘 천	37.54	32.54~62.54	22.54~52.54
서 울	37.34	32.34~62.34	22.34~52.34
인 천	37.29	32.29~62.29	22.29~52.29
수 원	37.16	32.16~62.16	22.16~52.16
청 주	36.38	31.38~61.38	21.38~51.38
대 전	36.18	31.18~61.18	21.18~51.18
대 구	35.53	30.53~60.53	20.53~50.53
전 주	35.49	30.49~60.69	20.49~50.49
광 주	35.08	30.08~60.08	20.08~50.08
부 산	35.06	30.06~60.06	20.06~50.06
제 주	33.31	28.31~58.31	18.31~48.31

(3) 설 치

① 원칙적으로 건물의 지붕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조건 등에 따라 타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면에 설치되는 집열기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150mm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② 집열기의 청소 및 정비수리에 편리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가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열기 최하단부와 접하는 수평면에서 정남향의 상향 30도 이상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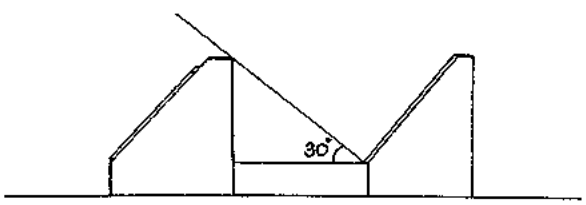

그림 8. 남향면 장애물의 예

④ 집열기를 지붕 일체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집열기와 지붕면의 접촉부위가 빗물이나 눈등에 의해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배수가 잘 되도록 공간을 두는 것이 좋다.

⑤ 지지대는 부식 및 뒤틀림을 예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지대는 풍압 또는 눈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집열기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인접 위치에 두어서는 안된다.

(4) 배 열

① 각 집열기는 통과하는 열매의 유량이 같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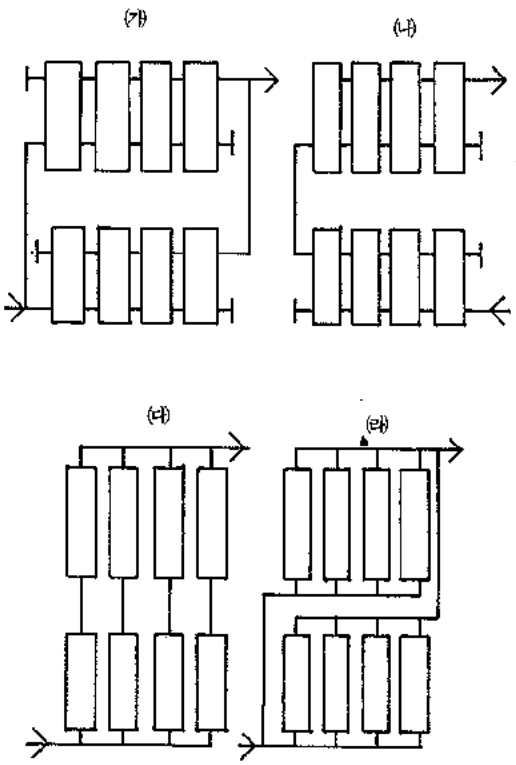

그림 9. 집열기 배열의 예

② 자동 배수식 집열회로는 동파될 조건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전회로내의 열매가 빠질 수 있도록 배관 경사를 주어야 한다.

③ 집열회로내 기공이 차지 않도록 최상단부 까지 공급 배관은 상향, 환수배관은 하향 설치한다.

3 - 2 축열탱크

(1) 용 량

용량은 집열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 m^2당 40리터~100리터로 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제작

① 강판을 사용한 원통형 축열탱크의 용량별 판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강판재 원통형 축열탱크 용량에 따른 판의 두께

용량 (ℓ)	동체안지름 D (mm)	동체길이 L (mm)	경판높이 L_2 (mm)	전장 L_3 (mm)	판두께 (mm) 동판 T_1	판두께 (mm) 경판 T_2	제품중량 (kg)	전용량 (ℓ)
100	400	800	103	1,006	3.2	3.2	50	108
200	500	1,000	122	1,244	3.2	3.2	70	211
300	600	1,050	141	1,332	3.2	4.5	95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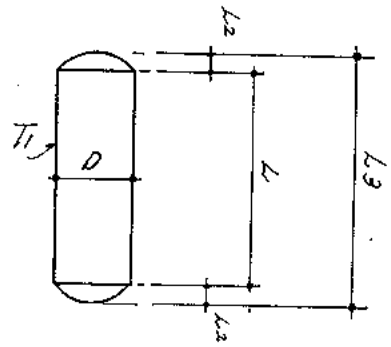

용량 (ℓ)	동체안지름 D (mm)	동체길이 L_1 (mm)	경판높이 L_2 (mm)	전장 L_3 (mm)	판두께 (mm) 동판 T_1	판두께 (mm) 경판 T_2	제품중량 (kg)	전용량(ℓ)
400	650	1,200	151	1,502	3.2	4.5	115	430
500	700	1,300	161	1,622	3.2	4.5	125	540
750	800	1,500	180	1,860	4.5	4.5	215	812
1,000	900	1,550	200	1,950	4.5	4.5	250	1,068
1,500	900	2,400	200	2,800	4.5	4.5	335	1,608
1,900	1,100	2,000	239	2,478	4.5	6.0	420	2,047
2,000	1,100	2,150	239	2,628	4.5	6.0	435	2,189
3,000	1,200	2,650	259	3,168	6.0	6.0	670	3,186
4,000	1,200	3,600	259	4,118	6.0	6.0	840	4,260
5,000	1,400	3,300	298	3,896	6.0	6.0	930	5,376
6,000	1,400	4,000	298	4,596	6.0	6.0	1,080	6,454
7,000	1,500	4,000	320	4,640	6.0	9.0	1,300	7,431
8,000	1,500	4,660	320	5,300	6.0	9.0	1,450	8,597
10,000	1,600	5,230	339	5,908	6.0	9.0	1,670	10,952
12,000	1,700	5,400	359	6,118	6.0	9.0	1,850	12,780
15,000	1,800	6,000	378	6,756	8.0	9.0	2,660	15,886
18,000	2,000	5,800	417	6,634	8.0	9.0	2,930	19,066
20,000	2,000	6,500	417	7,334	8.0	9.0	3,200	21,264
25,000	2,200	6,700	456	7,612	9.0	9.0	4,050	26,588
30,000	2,500	6,200	514	7,228	9.0	9.0	4,400	32,070

(주) : 판두께 (호칭치수) 이외의 치수는 참고 치수임.

② 축열탱크는 자체 하중 및 압력,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견고한 구조위에 놓여져야 한다.

③ 축열탱크는 배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부착된 장치의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본체 상부와 측면에는 30cm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하며 하부는 10cm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⑤ 설치후에 내부의 보수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된 구조의 축열탱크에는 맨홀을 두어야 한다. 다만, 1000리터 미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열교환기의 내면은 열매를 주입하기 전에 세척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⑦ 음료수회로에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독성열매 와 반드시 이중으로 격리된 구조이어야 한다.

⑧ 열교환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급 및 환수관에 온도계를 설치하며 온도계는 KSB 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에 준하는 온도계를 사용하고 온도 측정범위는 0℃~150℃로 눈금량은 2℃로 한다.

⑨ 축열탱크 상부에는 KSB 5320(공업용 바이 메탈식 온도계)에 준하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온도 측정범위는 0℃~100℃로 눈금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3) 보 온

① 축열탱크의 보온은 열손실율이 25.22 Kcal/hr · m²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② 열전도율이 0.036 kcal/mhr℃의 보온재료는 설치장소 또는 설계온도차에 따라 최소한 표 4와 같은 보온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4〉 설치장소에 따른 보온두께

열전도율 : 0.036 kcal/mhr℃

설치장소	보온재두께 (mm)
옥 내	76.2
옥 외	114.3

3 - 3 팽창탱크

(1) 용 적

① 팽창탱크의 용적은 100℃ 미만의 작동온도와 4층건물 이하에 적용된 경우 각 회로 내 물의 총량에 표 4의 팽창용적계수를 곱한 값보다 크게 한다.

〈표 5〉 물의 팽창용적계수

팽창탱크의 종류 및 적용		팽창용적계수
개 방 식		0.07
밀 폐 식	1층	0.10
	2층	0.13
	3층	0.17
	4층	0.23

② 물이 아닌 열매를 사용하거나 100℃ 이상의 작동 온도 및 4층 건물보다 높은 높이로 구성되는 태양열 시스템의 팽창조의 용적은 다음 식을 참고로 한다.

$$V = 1.5 \times \Delta v \quad \text{(개방식)}$$

$$= \Delta v / \left(\frac{P_1}{P_1 + 0.1H} - \frac{P_1}{P_2} \right) \quad \text{(밀폐식)}$$

$$\Delta v = \left(\frac{1}{W_2} - \frac{1}{W_1} \right) \cdot v$$

V : 팽창탱크의 용적 (m³)

W_1 : 팽창전의 열매비중 (kg/m³)

W_2 : 팽창후의 열매비중 (kg/m³)

v : 회로내의 열내용적 (m³)

P_1 : 대기압 (보통 1.0kg/cm²)

H : 팽창탱크에서 시스템 상단부까지의 높이 (m)

P_2 : 시스템의 허용압력 (kg/cm²)

(2) 설 치

① 팽창탱크는 온도변화에 의한 열매의 유출 방지 및 허용압력 유지를 위하여 격리된 회로마다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개방식 팽창탱크

ㄱ. 팽창탱크의 상단부에는 배기구와 배수구를 두어야 한다.

ㄴ. 팽창탱크는 가능한한 회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팽창탱크를 낮게 두고자 한다면 축열탱크내에 공기실을 두어 밀폐식으로 겸용하는 편이 바람직 하다.

③ 밀폐식 팽창탱크

ㄱ.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지지대는 채워진 팽창탱크 무게의 2배를 견딜 수 있도록 한다.

ㄴ. 팽창탱크는 펌프가 작동 시작할 때 음압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흡입구측에 설치되는 편이 좋다.

3 - 4 펌 프

(1) 용 량

집열펌프의 순환유량은 집열기면적 1m²당 0.9리터/min이상으로 정상성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선 정

① 태양열 시스템에 설치되는 펌프는 원심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열매와 접하는 펌프의 모든 구성품은 내식성 재질로 된 것이라야 한다.

(3) 설 치

① 펌프는 집열회로의 공급측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펌프는 언제나 작동이 용이하도록 열매가 차 있어야 한다.

③ 모터 하우징은 절대로 보온되어서는 안된다.

④ 이 물질의 발생이 적은 회로에서는 펌프의 유량 상향부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되는 편이 좋다.

⑤ 개방식 회로에서 적당한 펌프의 작동을 위한 흡입 양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3 - 5 배 관

(1) 태양열 시스템의 운전중에 어떠한 조건에서나 시수주관으로 오염되거나 불결한 시스템의 열매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역류 방지장치 이외의 어떠한 기자재로든지 태양열 시스템과 시수배관을 연결하여 음료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 시수 배관과 하수 배관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직

접 연결해서는 안된다.

(4) 태양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관에 있어서 비음료 수관은 마시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출구에 표시되어야 한다.

(5) 밸브조작등 배관을 구별하기 위하여 보온한 위에 배관의 종류 및 유체의 진행방향을 표시하도록 한다.

(6) 배관중의 물과 보조열원내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하며 배출구 환수주관의 맨 끝부분 가장 낮은 곳에 KS B2331(수도꼭지) 또는 KS B 2303(청동 5 kg/cm²게이트 밸브)에 규정한 수도꼭지나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집열기와 배관의 접속은 관 및 흡수관의 열 신축과 내압성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접속시켜야 한다.

(8) 자동배기 밸브는 시스템 설계에서 불필요하지 않는 한 시스템의 최상단부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9) 공기분리기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어야 한다.

(10) 모든 배관의 열 사용처 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11) 모든 배관은 KS F 2803(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의한 보온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은 배관은 방수, 방습, 동결방지 및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 6 자동제어장치

(1) 기 능

① 집열기와 축열탱크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차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축열탱크내 고온의 열매를 필요시 사용회로에 송수하거나 냉각된 열매를 집열회로에 송수할 수있도록 펌프를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태양열 회로와 보조열원과의 연결을 자동제어장치에 의하여 작동 또는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 및 기체 보일러가 아닐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동파방지를 위한 자동 배수식의 경우에는 정전시에는 집열기가 동파될 조건을 감지하여 자동밸브가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각 계통별로 정상가동을 알려주는 전원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⑥ 고장시 각 계통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소규모 급탕용은 기계적인 제어기능을 갖지 않아도 된다.

(2) 설 치

① 실내온도 조절기는 실내의 평균온도를 감지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집열기 온도감지기 위치는 최고온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축열탱크 온도감지기 위치는 최저온도인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4. 검 사

태양열 이용 시스템의 설비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 1 수압시험

(1) 수압시험은 시스템의 보온시공전에 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하되 그 수치가 2 kg/cm²미만일 때는 2 kg/cm²로 한다.

(3) 수압시험을 하여 시스템의 어떤 구성품에서도 누설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용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밸브 및 기타 기기를 떼어내거나 관을 끼워 조인 다음 공기를 빼고물을 채운 후에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시험수압에 도달된 후 30분 경과한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수압시험 중 또는 시험후에는 물이 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누설 및 변형이 될 경우에는 수리한 다음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7) 수압시험을 가급적 일사량이 적은 때 하도록한다.

4 - 2 운전상태 검사

(1) 집열회로 및 이용회로를 세척하고 난뒤에 열매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열매의 주입은 일사량이 적은 때 주입하도록한다.

(3) 각 회로내에 충분한 열매를 주입한 뒤에 작동을시작하여야 하며 각 회로내에 공기를 제거한 후에 작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4) 정상작동이 될 경우에는 자동제어장치가 원하는 조건대로 정확히 작동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도서 및 시공확인서

태양열 설비를 시공한 자는 설치자에게 시공도서 및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양식 참조)

5 - 1 시공도서

(1) 시공도

① 시공자는 시공도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가 각각 1부씩 소지 함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의 시공 또는 정비수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도의 축척은 1/50 또는 1/25로 하며 용지의 크기는 한국공업규격에 준한 A_0에서 A_4까지로 한다.

③ 제도법은 원칙적으로 KS A 0005(제도통칙)에

따른다. 시공도는 태양열 시스템 "개념설계도"와 "상세시공도"로 구분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KS B 0051(배관도시기호), KS C 0102(전기용기호) 및 KS F 1501(건축제도 통칙)에 따르며 별도의 기호나 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도면에 부기한다.

④ 개념설계도는 "시스템구성도"와 "제어개념도"로 구분하여 태양열 시스템의 기능, 작동 및 제어에 필요한 구성요소만을 표시한다.

⑤ 상세시공도는 시공자 또는 사후관리 기술자가 용이하게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 또는 설비 보수할 수 있도록 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를 구성하는 기자재의 연결, 치수, 용량등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⑥ 시공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ㄱ. 개념설계도

(가) 시스템의 구성도

- ○ 집열기 설치면적
- ○ 축열탱크 용량
- ○ 각 회로의 열매 유량 및 방향
- ○ 펌프의 용량
- ○ 열교환기의 용량
- ○ 기타 주요기기의 용량
- ○ 동파방지 방법

(나) 제어개념도

- ○ 제어기기의 작동기준
- ○ ON/OFF표시
- ○ SWITCH 및 RELAY 수량 및 연결방식

ㄴ. 상세시공도

- ○ 각 회로의 열매방향
- ○ 집열기의 규격, 수량, 배열, 연결배관 및 구조물 치수
- ○ 축열탱크의 규격, 재질, 연결배관 및 보온재와 보온두께
- ○ 배관의 규격, 길이, 재질, 이음방식 및 보일러와 보온두께
- ○ 팽창탱크의 규격, 재질, 연결배관
- ○ 관이음쇠 규격 및 이음방식
- ○ 밸브류의 규격 및 이음방식
- ○ 제어기기의 규격 및 설치방식
-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2) 운전지침서

① 시공자는 운전지침서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함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운전할 경우에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열 시스템의 운전자가 태양열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전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 ○ 시공자 시운전 절차방법
- ○ 시스템 기능, 작동 및 제어에 관한 설명
- ○ 운전중 정비에 관한 사항
- ○ 고장점검 절차
- ○ 안전에 관한 사항
- ○ 정비 및 수리·예비 품목 목록
-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 2 시공 확인서

(1) 시공자는 시공도서와 같이 별지 서식에 의한 시공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함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의 사후관리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도서와 함께 시공확인서를 태양열 시스템의 준공과 동시에 시공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기 타(예외)

집열기의 설치 및 시공이 연구시험 또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제외) 이 고시 시행당시 태양열 집열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1982년 3월31일까지 이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1]

시 공 확 인 서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시공자	업체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정 번 호	
시공내용	시공기간			난 방 면 적	m²
	시 스 템	동파방지대책		태양열이용방법	
	집 열 기	규 격		형식승인번호	
		면 적	매 m²	제조회사 명	
		방 위 각		경 사 각	
		열매의종류		집열펌프용량	ℓ/min
	축열탱크	용 적	m²	재 료	
		보온재종류		보 온 재 두 께	mm
	보조열원	형 식		형식승인번호	
		용 량	Kcal/Hr	제 조 회 사 명	
시공보증기간	19 . . 부터 19 . . . 까지				
특 기 사 항					
첨 부 서 류	시공도 1부 운전지침서 1부				

위와 같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업 체 명:

대 표 자:

新入会員

□ 郭成才 / 전남 / 50. 8. 19일생 / 조선공대 / 가야, 삼미건축연구소 / 광주시북구유동40 / 면허 2242 / 합동 42 / T. 55-8055

□ 崔聖一 / 서울 / 50. 2. 18일생 / 서울공대 / 한국환경설계연구소 / 영등포구여의도동 1-696 / 면허 2228 / 영등포합동 1 / T. 782-4625

□ 金盛鐸 / 부산 / 45. 11. 11일생 / 홍익공대 / 건축연구소한건/종로구당주동167-1 / 면허1546 / 종로합동 1 / T. 723-6073

□ 李吉雨 / 부산 / 38. 11. 10일생 / 서울공대 / 이길우건축설계 사무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2-15 / 면허2275 / 단독80 / T45-2957

□ 林吉成 / 전남 / 47. 6. 16일생 / 한양공대 / 경동건축연구소 / 강동구성내동 108-11 / 면허2234/단독252 / T. 476-9836

□ 李漢植 / 부산 / 52. 12. 20일생 / 성지공고 / 구상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 486-20/면허 2291 / 합동 70 / T. 89-5502

□ 鄭德薰 / 충남 / 49. 3. 9일생/ 중남공대 / (주) 엄·이건축연구소/ 종로구평창동 66-4 / 면허2030 / 합동 35 / T 723-4410

□ 尹壽根 / 경남 / 51. 11. 29일생 / 경남공전 / 구상건축설계사무소/ 부산진구부전동 486-20/면허 2229 / 합동 80 / T 89-5502

□ 金仁喆 / 서울 / 47. 4. 1일생/ 국민대학원 / (주) 엄·이 건축연구소 / 종로구평창동 66-4/면허2295 / 합동 35 / T. 723-4410

□ 池 澤 / 부산 / 44. 6. 10일생 / 한양공고 / 지택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중구광복동 1가 5 / 면허 2255 / 단독 81

会員動靜

□ **서울지부** : 조종관/예일건축 / 강남구청담동67-2 / 합동 152 / △이병현 / 건축연구소한건 / 종로구당주동167-1 / 합동종로 /

□ **강원지부** : 오세영 / 동아건축연구소 / 동해시천곡동 9-1 / T. 2-2334.

□ **서울지부** : 유 승근 / 삼신합동건축 / 용산구한강로 3가 40-151 / 합동295

□ **서울지부** : 조 영무 / (주) 공간연구소 / 11. 16 / △최의준 / 신아건축연구소 / 11. 25 / △방창섭 / 일신건축 / 12. 11 / △김진식 / 동성건설 / 12. 11 / △김경환 / 아림건축 / 12. 14 / △임광백 / 우일종합 / 12. 14 / △강문식 / 현대설계용역 / 12. 16 / △조풍연 / 동인건축그룹 / 1.6 / △엄덕문 / (주) 엄·이건축 / 12. 30

□ **경북지부** : 이상익 / 공평연구소 / 12. 1

"오래사세요." □ **서울지부** : 김철환회원 12. 19

□ **부산지부** : 김경수회원부친 11. 12

□ **충남지부** : 김윤환회원 12. 7

□ **경북지부** : 홍호룡회원부친 12. 13 / △장호회원모친 12. 20

□ **본부** : 이해운 총무부장이 1월 1일자로 새로 설립된 인천직할시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

"축하합니다" □ **서울지부** : 김기두회원차남 12월 2일 / 양효철회원차남 12월 3일/ △이준용회원 3녀 12월 5일 / △김종식회원 12월 13일 / △안충희회원장남 12월 13일

□ **충남지부** : 이재영회원녀 12월 13일

□ **충북지부** : 김태철회원장녀 11월 21일

"애유를 빕니다." □ **경북지부** : 우종수회원교통사고 / △이태수회원교통사고

"삼가명복을 빕니다" □ **서울지부** : 이장복회원부친별세 12. 19 / △오세충회원모친별세 12. 5

□ **부산지부** : 김호원회원모친별세 11. 15 / △배기수회원부친별세 11. 20

□ **충북지부** : 이종만회원모친별세 11. 17

□ **경남지부** : 염효윤회원 12. 5 급성위암

□ **경북지부** : 김두영회원부친별세 12. 3